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세계인권선언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세계인권선언



이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세계인권선언>의 학습내용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저작권은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원고 집필자인 오창익(인권연대) 저자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사이버인권교육을 수강할 때 보조교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humanrights.go.kr>

목차



제1강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1
1.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국가의 약속 - UN(국제연합)의 태동	5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UN)의 성립	11
3.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약속 - 「세계인권선언」	12
4.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13
공유하기	16
문제 풀기	17
제2강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21
1. 인권 말살의 위기와 「세계인권선언」의 시작	25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27
3. 인류 공통의 인권기준 「세계인권선언」을 만들다	29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31
공유하기	33
문제 풀기	34
제3강 「세계인권선언」의 제정과정	39
1. 「세계인권선언」을 위한 첫걸음 - UN인권위원회의 설립	43
2. UN인권위원회의 등장과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결성	45
3.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부터 제정·채택까지	46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	51
공유하기	52
문제 풀기	53

제4강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57

- 1. 사람(Human)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호소문 61
- 2. 권리(Rights) -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구성요소 63
- 3. 인권(Human Rights)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선포 69
- 공유하기 71
- 문제 풀기 72

제5강 「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조 75

-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 79
- 2.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차별 금지 83
- 공유하기 89
- 문제 풀기 90

제6강 제3조~제5조 :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생명·자유·안전 93

- 1. 제3조 : 생명을 가질 권리 98
- 2. 제4조 : 타인에게 예측되지 않을 권리 103
- 3. 제5조 :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107
- 공유하기 110
- 문제 풀기 111

제7강 제7조~제11조 : 사법적 권리 115

- 1. 제7조 :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119
- 2. 제8조 :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121
- 3. 제9조 : 자의적으로 체포·구금되지 않을 권리 123
- 4. 제10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4
- 5. 제11조 :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127
- 공유하기 130
- 문제 풀기 132

제8강 제12조~제17조 : 시민적 권리 137

1. 제12조, 제13조 : 사생활 보호와 이동·거주의 자유	142
2. 제14조, 제15조 : 망명의 권리와 국적을 가질 권리	147
3. 제16조, 제17조 : 결혼·가정의 권리와 재산 소유권	150
공유하기	155
문제 풀기	156

제9강 제18조~제21조 : 정치적 권리 161

1.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165
2. 제19조 :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168
3. 제20조 :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171
4. 제21조 : 국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주권·민주주의 원칙	173
공유하기	175
문제 풀기	176

제10강 제22조, 제23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노동할 권리 181

1. 제22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185
2. 제23조 : 노동할 권리	189
공유하기	196
문제 풀기	197

제11강 제24조~제27조 : 휴식·여가·교육·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203

1. 제24조 : 휴식과 여가의 권리	207
2. 제25조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10
3.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213
4. 제27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217
공유하기	220
문제 풀기	221

제12강 제28조~제30조 : 체제·의무·제한의 메시지 225

- 1. 제28조 :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230
- 2. 제29조 : 의무와 제한 234
- 3. 제30조 : 해석상의 악용 금지 237
- 공유하기 242
- 문제 풀기 243

제13강 「세계인권선언」의 영향 249

- 1.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53
- 2.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회의와 테헤란 선언 254
- 3.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장전 256
- 4.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대한민국 헌법 262
- 공유하기 271
- 문제 풀기 272

제14강 「세계인권선언」의 한계 277

- 1.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성 문제 282
- 2. 「세계인권선언」 속 ‘차별’의 한계 288
- 공유하기 296
- 문제 풀기 298

제15강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303

- 1.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빛 307
- 2.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그림자 312
- 3.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그리고... 313
- 공유하기 315
- 문제 풀기 317

제1강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1.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국가의 약속
 - 국제연합(UN)의 태동
2. 세계평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UN)의 성립
3.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약속
 - 「세계인권선언」
4.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제1강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문자 그대로 세계를 전장(戰場)으로 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끌어들이는 전쟁으로, 동원병력만 1억 1천여만명, 희생자는 5,200만여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나타났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넘는 인원이 민간인 희생자였다. 또한, 이 참혹한 전쟁은 나 자신이 아니면 내 가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었고, 이유도 모른 채 수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리고 몸이 짓이겨진 채 죽어갔다.

이렇게 끔찍한 전쟁 직후, 이 끔찍한 참화를 되새기며,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당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1945년 탄생된 UN(국제연합)은 더 이상의 전쟁의 참화를 막고자, 모든 모든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그리고 사람의 존엄을 위해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최고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로 채택되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협약이 아니며 UN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법률가는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인용되는 기준이 되는 등의 세계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UN 안보리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UN총회에서 의결되었다.

3. 「세계인권선언」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UN총회문건이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350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UN 총회 문건이다.

■ 학습목표

- UN의 성립과정과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보편적 수준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국가의 약속 - UN(국제연합)의 태동
- 세계평화를 위하여 - UN의 성립
-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약속 -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1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국가의 약속 - UN(국제연합)의 태동

가. 제1차 세계대전

1) 제국주의의 확장과 식민지 쟁탈전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바람이 불던 20세기로 들어섬과 동시에 전 세계는 전쟁과 엄청난 환멸의 시대로 전락했다.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식민지를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 어지자 눈을 돌려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넘보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갈라져 있던 독일은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독일제국으로 통일됐 고, 이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었다.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의 팽창에 위기를 느낀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 아와 함께 **삼국협상**을 맺었다. 이렇게 유럽 지역은 삼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과 삼국협상(프랑스·영국·러시아)을 중심으로 두 세력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2)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전쟁의 잔혹함

1914년 7월, 세르비아를 향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기까지, 4년간의 긴 시간동안 유럽대륙 전 지역을 쑥 대밭으로 만든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면서, 각 국가들은 ‘국가 의 번영과 영광’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특히, 전쟁 반대의 입장을 고 수하던 사회주의 정당들조차 ‘애국애족’의 구호를 외치며 전쟁에 참여하면서 ‘위대한 조 국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식민지 쟁탈전’이라는 전쟁의 본질을 가려져 버렸다.

전쟁은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곳이 폭격의 대상이었고, 여 성을 군수품 생산을 위하여 강제로 공장에 동원하는 상황까지 이른다. 그리고 전쟁 물자 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자를 통제하고, 식량조차 끊겨 배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야말로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이었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이 차지한 식민지는 이 제국주의 전쟁에 필요한 군인과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수탈당했으며, 조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전장에 나 선 병사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에 경악했다.

그야말로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개발한 신무기들의 ‘각축장’이라 할 수 있었다. 기관총, 대포, 전차, 폭격기 같은 현대식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을 과시했다. 군인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대치했다. 땅을 파서 만든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서로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빠져들었고, 엄청난 수의 인명피해가 생겨났다.

다시 말해, 제1차 세계대전은 애국애족의 이념으로 국가를 위해 ‘식민지 쟁탈’을 합리화시키며 진행한 전쟁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 끔찍한 전쟁이었다.

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출현

1)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국제연맹의 탄생

유혈전쟁의 참상을 겪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은 패전국뿐만 아니라 승전국에도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중심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대두됐다.

설립 구상은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진행됐고, 미국의 토머스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이 1918년 1월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제창하면서 표명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9년 1월 개최된 파리강화회의(파리평화회의)에서 집단 안보와 국제분쟁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를 원칙으로 하는 연맹 규약을 정했다. 이렇게 1920년 정식으로 출범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및 경제·사회적 국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평화기구로,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일본제국, 이탈리아 왕국을 포함한 총 42개국이 최초 가입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었다.

이렇게 출범한 국제연맹은 1920년대 소규모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성립 후 10년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운영됐고, 국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당초 42개의 가입국으로 출발한 국제연맹은 소련 등이 가입하여 가입국의 수가 63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국제 활동과 연대에 활발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가입했던 국가들이 탈퇴하거나 제명당하여 회원국이 줄기 시작했고, 미국 등 주요 강대국의 불참으로 193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

2) 국제연맹 약화의 원인과 결과

국제연맹이 약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제창국인 미국이 패전국인 독일 군부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던 베르사유 조약에 대하여 유럽에 속한 국가의 문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먼로주의에 따라 미국 의회가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해 집단적인 제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창립 초기부터 이후까지 국제 분쟁을 바라보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익에 따른 시각의 차이도 국제연맹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연맹 탈퇴이다. 앞서 1926년 브라질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 진출실패를 이유로 탈퇴한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탈퇴가 급증했고, 신흥 군국주의 세력인 일본 제국과 히틀러를 앞세운 나치 독일은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으며, 이탈리아 왕국도 1937년 탈퇴했다. 즉, 국제연맹의 영국과 프랑스,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의 4개 상임이사국 중 절반인 일본 제국과 이탈리아 왕국이 탈퇴한 것이다. 또 1939년 2월, 핀란드 침략을 이유로 소련이 제명되면서 국제연맹은 가입국의 대량 탈퇴로 집단 제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녔다.

이처럼 국제연맹은 군사력 등 전쟁억제 기능이 약화되어 집단안보체제 구축이라는 당초 창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다. 제2차 세계대전

1) 일본·독일·이탈리아의 반소주의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단계에 직면했다. 자본주의 제국의 불균등한 발전이 두드러졌고, 1929부터 1933년까지 이어진 세계공황은 이와 같은 불균등에 근거하는 국제대립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자본주의 열강의 블록화와 폐쇄성 짙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기초가 약한 독일과 이탈리아 및 일본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일본은 당시 국내 정치 및 경제의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31년 9월 중국 동북에서 침략행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중국 동북지역에 일본의 꼭두각시인 만주국을 만들고, 이 지역에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을 꾀하려 했지만, 1933년 3월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자 곧바로 국제 연맹을 탈퇴했다. 이를 지켜 본 이탈리아는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침략하여 1936년 5월, 아디스아바바를 정복했다.

1936년 11월 독일과 일본은 방공협정(防共協定)을 체결했고,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이에 가입했다. 이렇게 독일·이탈리아·일본 3국은 반소(反蘇)주의를 구상하여 소련에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이를 구실로 하여 국내에서의 파시즘화와 대외침략을 추진했고, 나아가 공산주의를 겁내는 미국·영국·프랑스의 지배층으로부터 각자의 침략을 용인받으려 했다. 미·영·프의 지배층은 한편으로 독일·이탈리아·일본에 맞서 식민지 확장을 견제하려는 제국주의적인 대립을 나타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이탈리아·일본 세 나라의 창끝이 소련이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으로 향한다면 타협한다는 유화정책(宥和政策)을 추진했다.

2) 나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이 자본주의의 적인 소련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치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구실을 들어 나치가 주변국을 침략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히틀러는 1938년 2월에는 대규모 인사 조치로 나치 체제를 강화하고, 같은 해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방을 점령하고, 그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하며 전쟁의 위기를 조성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요구에 굴복하여 뮌헨 협정을 체결했다. 뮌헨 협정에 따라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1938년 9월,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주데텐란트 지방을 할양케 했고, 이리하여 독일은 동·중부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연맹 및 집단안전보장 체제를 붕괴의 국면을 맞았다.

반면, 1939년 3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하고 이어 폴란드에서 발트해까지 이어진 긴 영토인 폴란드회랑과 항구도시인 단치히(그단스크)를 요구했다. 끝없는 히틀러의 요구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커졌으며, 양국은 폴란드에 원조를 약속했다.

독일과 폴란드 간의 긴장상태가 심해지자, 영국은 독일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소련과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비리에 독일과도 교섭했다. 뮌헨 회담 이래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소련의 불신을 감추기 어려워지자, 1939년 8월에는 영·소 교섭이 정체되면서 독·소 교섭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왜냐하면 이미 폴란드 공격을 결의하고 있던 히틀러의 입장으로는, 동서에 걸쳐 두 명의 적을 상대하는 전쟁을 피해야 했고, 소련은 독일-폴란드 전쟁이 반소(反蘇)전쟁으로 변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국가는

1939년 8월 23일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3) 동맹국의 침략과 미국의 참전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가며 소련과의 중립까지 확보한 독일은 예정대로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고 점령했다. 그 때까지 설마 설마하며 독일을 주시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해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세계는 다시 한 번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승승장구하며 진격을 거듭했고, 단숨에 프랑스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하늘은 폭격을 위하여 출격한 독일 전투기로 뒤덮였으며, 유럽 전역이 파시즘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1941년 여름,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자, 전쟁은 갑자기 확산됐다. 독일의 기습으로 소련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 진영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사회주의 진영인 소련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 동맹의 파시즘에 대해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소련은 결사적으로 나치의 독일군에 맞서 모스크바를 방어했으며,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스탈린그라드(현재 볼고그라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한편, 일본은 1941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곧바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를 포함한 연합국 49개국, 독일·일본·이탈리아를 필두로 한 동맹국 측 8개국, 스위스 등의 중립국 6개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5대양 6대주, 태평양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세계 구석구석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라.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 - 인류의 비극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신무기의 실험장이 됐다. 식민지 쟁탈이라는 목적 아래 다른 나라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잔인하게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은 끔찍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동원병력만 1억 1천만여 명, 희생자는 5,200만여 명으로, 이중 독일과 소련 양국의 희생이 가장 많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련의 전사자는 1,360만여 명,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2,000여만 명에 달했고, 독일의 경우 전사자는 500만여 명, 민간인을 포함

한 사망자는 550만여 명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전사자는 185만여 명,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는 250만여 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했을 때, 동원병력 수는 약 2배, 전사자는 약 5배, 민간인 희생자는 약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현상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 민간인 희생자가 현저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나치스의 유대인 절멸(絶滅)정책 때문이다. 당시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약 5백만여 명은 유대인인데, 나치스 지배하의 유대인 총수의 약 70%에 달했다. 또 하나는 현대의 전쟁이 민간인을 제외하지 않은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전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전비(戰費) 및 파괴된 재산을 오늘날의 물가에 맞추어 재평가 한다면 그것 역시 너무나 방대해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듯 제2차 세계대전은 인명과 물질적 피해가 넘쳐났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다.

또한, 광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펼치던 나치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빠르고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유대인을 절멸시키기 위해서 1940년부터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에 의해 해방될 때까지 유대인과 폴란드 공산주의자 약 130만여 명을 구금했고, 이 중 110만여 명을 살해했다. 특히, 이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네 곳에 정치범과 유대인, 집시들을 가둘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고, 매일 처형자를 골라 가스실에서 학살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독가스로 죽여 화장(火葬)했다. 그로 인해 강제 수용소의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시체를 태우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아우슈비츠에는 집시·소련군 포로·동성애자·정치범 등도 수용되었지만, 희생자의 90%는 유대인이었다.

당시 나치 친위대(SS) 장교이자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Auschwitz-Birkenau) 나치 강제 수용소의 내과 의사였던 요제프 멩겔레는 수용소로 온 수감자들 중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강제노역에 동원할지를 결정했으며, 각종 반인륜적인 생체실험을 했다. 그 예로 어린이 수감자를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 속에 맨발로 내몰아 동상에 걸리게 한다든가, 남녀 성기를 절단하거나, 특별 작업을 할 사람을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여자 수감자들을 선택했다. 이를 중노동에서 해방될 기회로 생각한 여자 수감자는 멩겔레에게 끌려가 불임 수술과 충격 요법 등을 받았고, 대부분 실험 또는 사후 감염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는 등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6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 학살 이외에도, 히틀러 치하에서 이루어진 인명 살해 통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첫째로 나치는 1941년 6월, 소련을 침공한 이래 벌어진 일이다. 1,000만여 명의 슬라브인들을 학살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 포로의 60% 이상(적어도 20만여 명으로 추산)이 죽었는데, 대부분 굶어 죽었다. 그리고 이때 최소 50만

여 명의 집시들이 살해됐으며, 6,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안락사 처리되었고, 7만여 명의 장애인 및 노인들이 살해됐다.

둘째로, 독일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내내 곳곳에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실제 30만여 명의 희생자를 남긴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일본군의 중국인 학살, 연합군의 드레스덴 폭격과 소련군의 독일인 학살 등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UN)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연합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했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중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통감했다.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1940년대 초반에 들어서 미국과 영국은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1차적 성과로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세계 국민복지와 평화 등에 대한 공통원칙을 정했고, 이 원칙이 바로 국제연합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 이어서 1942년 1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미국, 영국,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 공동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을 발표하며 대서양 헌장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각국 대표는 전범국가인 독일, 일본 및 이탈리아에 항전하며 단독강화를 맺지 않기로 하는 단독불강화선언(單獨 不講和宣言)을 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최초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유지기구 설립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모든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따른 세계적 국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944년 워싱턴에서 열린 덤바턴 오크스 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구성을 담은 오늘날 「UN헌장」의 초안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했다. 1945년 2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 등 3개국 정상은 얄타회담을 갖고,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법

및 신탁통치제도 등에 대해 합의했다. 같은 해 4월, 50개국 대표들이 이 제안을 수정 및 추가하여 「UN헌장」을 완성했고, 10월 24일 국제연합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3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각국은 전쟁으로 일어난 참혹한 피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들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참상을 되돌아보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의 원인이 인권 경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공동의 노력 부재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로 인해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UN헌장」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권의 유린, 인권 존중과 평화의 깊은 관계를 비추어 기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당시 58개국이었던 UN의 회원국이 2년여 간의 기간에 걸쳐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했다. 이는 전쟁 직후 전 세계에 만연했었던 인권침해 사태에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UN의 「UN헌장」의 취지를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럼 세계인권선언의 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먼저 「세계인권선언」의 작성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학계들과 국제 NGO 단체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연구와 회의를 거듭하는 등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UN과 UN 인권위원회,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 등은 「세계인권선언」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85차례의 회의를 했다. 또한 20차례의 하부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으며, 1400여회에 거친 의결이 오간 끝에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했다. 이는 총58개의 참가국 중 48개국의 찬성과 8개국의 기권을 통해 만장일치의 결과였다.

그럼, 기권국가는 어느 나라들이었을까? 기권국가는 소련, 벨로루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사회주의국가로, 「세계인권선언」이 자유주의 이념을 너무 강하게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기권했으며, 백인우월 정책을 펼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해 차별 없는 사람 권리를 옹호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을, 사우디아라비

아는 「세계인권선언」이 남녀평등 등 서구적 가치만을 너무 강조하고 이슬람 문화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기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의 국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이렇듯, 「세계인권선언」은 각기 다른 정치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 간의 수없이 많은 논쟁과 협의와 2년이라는 기나긴 진통시간의 산고를 거쳐 탄생한 “세계적인 인권문서”가 됐다.

4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세계인권선언」은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각성한 인류가,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며, 인간의 존엄과 소중함을 되새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단 1개국의 반대도 없이, 모두가 찬성한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를 살펴보면,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즉 모든 사람과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인류의 열망과 목표를 담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최초의 합의문이자 현재까지도 대체 불가능한 세계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 인권의 금자탑이며, 국제인권발전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산물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된 “Universal(세계)”라는 단어는 국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보편적 인권’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했으며, “Human rights(인권)”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국적을 전제로 한 시민권(Civil-rights)이나 한 국가체제 내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구별되며, 권리들의 총합으로서 각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 개별권과 분리되는 개념으로, ‘인권’을 전면으로 내세운 인류의 권리장전이라는데 역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구화에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로써 우리나라는 분명한 다문화 사회이다.

[표 1]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내용

구조	주요내용
전문과 일반원칙(제1~2조)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국제적 보장 및 회원국의 의무, 자유·평등·박애, 반(反)차별 등
시민·정치적 권리(제3~21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제22조~27조)	
체제·의무·제한의 메시지(제27조~30조)	인권 제한 조건, 국제구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천명했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역사상 현저하게 두드러진 성취였던 것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권 운동의 전개를 고취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세계 전 지역이 선언을 수락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350개에 달하는 국가적·지역적 언어로 번역됐고, 가장 널리 알려져 인용되는 세계적인 인권 문서이자 국제 인권법의 뿌리로, 각종 국제 협약과 선언의 모범이며 많은 나라의 법과 헌법에서 수용했다

그럼,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자.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인권의 일반원칙,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체제·의무·제한의 메시지 등 총 4가지의 영역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UN인권고등판무관실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은 30개의 명확하고 간결한 조항을 통해 넓은 범위의 인권을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전문과 인권의 일반원칙, 시민·정치적 권리 조항은 세계적 인권의 토대를 이룬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권리이며,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아니고, 주어지는 혹은 거절되는 특권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오늘날 이 선언은 앞에서 말했듯이 세계적으로 약 35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협약

과 국제선언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60여 개가 넘는 국제인권규범이 제정되기도 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세계화와 제도화를 이루어낸 명실상부한 인류의 발명이자 역사적 산실이다.



공유하기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 예시 >

◎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인권의 기준' 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중략)...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회원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회원국 관할 하의 지역에 있는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국제적인 점진적 조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의 '모든'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는 바(헌법 전문, 제6조 제1항),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인권규약들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이자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과 권고들을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입법권자가 근로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헌재 2005.10.27. 2003헌바50 결정 등]



문제 풀기

1. 다음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완성해 보세요.

「세계인권선언」은 총 ____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건이다

- ① 20 ② 30 ③ 35 ④ 40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전문 및 인권의 일반원칙,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체제·의무·제한의 메시지 등 총 4가지의 영역에 30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세계인권선언」이 제정·채택된 연도는?

- ① 1939년 ② 1927년 ③ 1943년 ④ 1948년

○ 정답 : ④

○ 해설 :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3.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의 '의의'가 아닌 것은?

- ① 보편적 인권을 세계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 ②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선언이다.
- ③ 현재까지 대체 불가한 세계적인 문건이자, 인권의 기념비적 교과서라 할 수 있다.
- ④ 강력한 규범성을 지녀, 모든 인권침해 사건은 「세계인권선언」의 적용과 처벌을 받는다.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이기 때문에 강력한 구속력이나 규범성은 없다.
그러나 이 선언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협약이 나온다.



정리하기

1.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국가들의 약속 - 국제연합(UN)의 태동

- ◆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바람이 불던 20세기, 전 세계는 전쟁과 환멸의 시대로 전락하며, 식민지 쟁탈전으로 비롯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
- ◆ 유혈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 승전국인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출현함
- ◆ 전쟁 억제 기능이 약하고, 가입국의 집단 탈퇴 등으로 인해 국제 안보체제 구축이 어려워진 탓에 국제연맹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졌고, 자본주의 제국의 불균등한 발전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2.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UN)의 성립

- ◆ 제2차 세계대전은 신무기의 각축장이 되었고, 홀로코스트 등 전쟁 기간 내내 곳곳에서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민간인 학살이 벌어짐
- ◆ 이처럼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엄청난 인명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지켜본 세계 각국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짐
- ◆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역량을 가진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통감했고, 국제연맹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구상을 함
- ◆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 미국·소련·영국 3개국 정상은 안정보장이사회 표결방법 및 신탁통치제도 등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4월, 50개국 대표들이 이 제안을 수정 및 추가하여 「UN헌장」을 완성했으며, 10월에 국제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함

3.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류의 약속 - 「세계인권선언」

- ◆ 세계 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의 원인이 인권경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공동의 노력 부재에 있었음을 깨닫고, 「UN헌장」 등을 발표하고, 국제연합이 출범했지만, 구체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실체를 밝히지 못함

- ◆ 이에 인권 존중과 평화의 깊은 관계를 비추어 기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함
- ◆ 더 나아가, 전쟁직후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존중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58개 회원국이 2년에 걸쳐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했으며, 1948년 12월 10일 제3차 UN 총회에서 48개국의 찬성과 8개국의 기권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함

4.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 ◆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임
- ◆ 오늘날 이 선언은 세계적으로 약 3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UN헌장」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 인정되고 있음
- ◆ 또한 국제 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협약과 국제선언의 전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60여 개가 넘는 국제 인권 규범이 제정되었을 만큼, 인권의 기념비적 교과서라 할 수 있음

제2강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1. 인권 말살의 위기와 「세계인권선언」의 시작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3. 인류 공통의 인권기준 「세계인권선언」을 만들다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제2강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1948년 12월 10일은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로, 채택한 장소는 바로 프랑스 파리의 샤흐 궁(Palais de Chailot)이었다. 샤흐 궁은 에펠탑과 바로 붙어 있는 건물로, 쌍둥이처럼 서로 마주한 두 건물 사이 공간에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새겨져 있다.

샤흐 궁은 1937년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은 건물이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침공했던 히틀러가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이기도 했다. 종전 후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총회 개최지를 옮겨야 했던 UN은 상징성을 지닌 다른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샤흐 궁이었다. 그 당시 나치와 파시즘이 불러온 참화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고자 했던 인류에게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선포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선택됐다. 지금도 이곳은 약 70년이 지난 「세계인권선언」의 선포지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로 남아있다.

2강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사전지식 알아보기

1. 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은 1947년 12월 20일이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일은 1948년 12월 10일이다.

2. 「세계인권선언」은 강대국의 강요로 만들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담아낸 것이다. 이는 선언 작성에 참여한 모두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3. UN의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엘리너 루스벨트이다.

○ 정답 : ○

○ 해설 : 1947년, 최초의 UN인권위원회를 열어 「세계인권선언」 작성을 위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초안위원회를 만들고, 초대위원장으로 엘리너 루스벨트를 임명했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 수 있다.
- 인권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의 선포과정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인권 말살의 위기와 「세계인권선언」의 시작
-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인류 공통의 인권기준 「세계인권선언」을 만들다
-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1

인권 말살의 위기와 「세계인권선언」의 시작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이전의 전쟁과 놀랍도록 많이 달라진다. 물론 이전에도 전쟁은 잔인했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인류에게 크나 큰 고통을 주었지만,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은 그 규모가 커지고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동원되는 군대의 숫자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류에게는 더욱 더 처참한 환경을 남겼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욱 더 야만성이 강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과 민간인 사망비율이 10대 1정도였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사망자 가운데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이 4:6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전쟁을 해도 우선 군사시설과 군대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기와 한계를 정하여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의 금기를 깨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이러한 대량 학살의 결과였다.

이때의 전쟁을 전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도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유대인은 수용소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간혀 있다가 대규모로 학살당했다. 이런 대규모 전쟁과 인권침해를 겪은 뒤, 국제사회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와 빛을 본 지 약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역사적 문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인권선언」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당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까지 6년이란 긴 세월동안 지속됐다. 이 때, 나치는 독일인 유전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유대인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집시,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알코올중독자, 장애인 등을 단지 '열등하다'는 이유로 없애려 했다. 제2차 대전의 결과,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약 50만 명의 집시들이 학살당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전쟁이 불러온 너무나 끔찍한 결과였다.

이렇게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민족, 사상, 국적, 장애 등 차별에 근거하여 저지른 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을 '홀로코스트'라고 한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을 파괴하고 세계를 지배하며, 독일을 공산화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유대인이 인류의 최하층에 있는 기생충인 동시에 유전병 보균자이므로, 독일 국민이 그런 유대인과 혈통이 섞인다면 타락하고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히틀러의 망상이 시발점이 되어,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다가 결국 무차별적인 학살에 이르게 된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였던 독일은 끔찍했던 학살의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우리 민족이 살아 숨 쉬는 한 이 사건을 잊어서 안 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비로소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종전 후 대다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이 어찌다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어찌다가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짓밟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괴감과 이 짧은 기간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최악의 전쟁을 두 번이나 겪은 허탈한 감정을 느끼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의미한 살육과 증오의 시대를 겪어야 했으며, 사람 내면의 어떤 측면이 인류 전체를 광기와 폭력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에 몰두하지만, 지식인들의 연구에만 맡겨 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국가들과 약소국들이 입었던 피해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하는가에 대한 답도 필요했기에, 전쟁은 끝났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든 해답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던 중, 과거사 청산이라는 방법이 한 가지 해법으로 떠올랐다. 이는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국가들의 심장인 독일의 뉘른베르트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재판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재판의 결과는 거대한 범죄에 관해 아주 미미한 상징적인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했지만, 이 재판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거대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전 세계의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 두 재판을 계기로 사람들은 그동안 전쟁과 독재에 억눌려왔던 자유와 생명, 평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독일과 일본에서 열린 전범재판 외에 국제적으로 등장한 해법, 그 두 번째는 UN(국제 연합)의 결성이었다. 이전에 한 번 국제연맹 조직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국제사회였지만, 전보다 더 확실한 장치를 갖추어 이번에는 반드시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전을 도모 하자는 강력한 결심으로 실시한 방법이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1944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영국·소련·중국의 대표가 워싱턴에서 열린 덤버턴오크스회의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첫 합의를 시작했다. 그 후 1945년 4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그를 추도 하기 위해 미국에 모였다. 이때 홀로코스트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독재와 차별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알리고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 성을 절감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은 국제기구가 있어야 '나치'나 '히틀러'가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인류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국의 참여로 출발한 UN은 샌프란시스코 에서 인권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강대국을 중심 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와 모든 회원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총회, 마지막으로 집행부 로서 사무총장 휘하의 사무국을 갖추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UN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할 「UN헌장」에 인권을 포함시킬지 말지가 논쟁 대상이었다. 일부 강대국들이 소극 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약소국들과 NGO들의 노력으로 UN 내에 인권위원 회를 설치하여 인권헌장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4일, 서명국 과반 수가 넘는 46개국의 비준으로 UN을 창설하면서, 인권 항목이 삽입된 「UN헌장」을 승인 했다.

이렇게 승인된 「UN헌장」에서는 UN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평화와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권'이며, UN의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는 데 있음을 천 명했다.

UN에서 「UN헌장」을 만들고, UN인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후에도 여전히 현실 세계 의 정치는 흑독했고, 세계 곳곳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영국 치하에 있던 인도에서는 수백만 명이 의회의 독립을 요구했으며,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독재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인들은 인류 공통의 인권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UN

헌장」에서는 인권을 존중할 할 것을 UN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여러 가지 인권유린 사례들을 되짚어보며, 인권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필요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기에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했던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 불리는 간디는 1919년에 사티아그라하 투쟁 선언과 인동국민회의파 연차대회 비폭력 저항을, 1942년에는 반영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인도의 독립을 약속한 사실을 어기고 강경책으로 진압하자 이에 맞서 저항 운동을 했다. 이처럼 간디는 영국에 대한 저항을 납세거부, 상품 불매 운동 등의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했고, 간디의 평화사상과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흑인인권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넬슨 만델라이다. 만델라는 1940년 친구가 백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종차별적 대우의 부당함을 자각했다. 1943년, 비트바테르스란트(Wit Watersrand) 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하고, 이듬해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산하 청년연맹을 창설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951년에는 간디가 했던 비폭력운동을 전개했고, 1952년 백인이 아닌 사람들 중 처음으로 요하네스버그에 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이후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흑인인권운동에 참가했다. 하지만, 1955년에 남아프리카는 인종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헌장」을 선포했는데, 만델라는 이와 관련되어 국가반역죄로 수감된다. 이후 만델라가 속한 또 다른 단체인 범아프리카회의(PAC)가 출범했는데, 이들은 강경한 투쟁을 전개했다. 1960년 3월 요하네스버그 남쪽에 있는 샤프빌(Sharpeville) 마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경찰은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한 만델라는 '국민의 창(Umkhonto we Sizwe)'이라는 비밀군대를 조직했다. 이에 1962년에 체포된 만델라는 1964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복역하게 되면서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3

인류 공통의 인권기준 「세계인권선언」을 만든다

1946년,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UN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했다. 이듬해인 1947년, 최초의 UN인권위원회를 열고 「세계인권선언」 작성을 위한 8명 초안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때, 초대위원장으로 엘리너 루스벨트를 임명했고, 부의장은 중국의 장팡춘(중국)이 맡았다. 이들을 필두로 르네 카생(프랑스), 찰스 말릭(레바논), 윌리엄 로이 호슨(호주), 에르난 산타크루즈(칠레), 제프리 월슨(영국), 블라디미르 코레츠키(소련)등 8명이 모였다. 이후 초대위원장인 루스벨트의 주도하에 UN 내 인권현장 제정 소위원회를 만들고, 거의 2년 걸쳐 수많은 회의와 치열한 토론, 그리고 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현장의 초안을 완성했다.

초안 작성 초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을 「국제인권헌장」으로 하여 법적 강제력을 지닌 문서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의 작성 과정에서 우선 일반적 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을 만들고 그에 근거하여 국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여기서 범조문이 아니라 인권의 의미와 취지, 원칙을 큰 틀에서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사실과 인권이 궁극적으로 실생활과 인간 사회의 역학관계 내에서 이해되고 실천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작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초안을 차례로 만들었다. UN 사무국 산하의 인권국, 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6개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험프리가 작성한 ‘험프리 초안’과 인권선언작성 소위원회의 카생이 정리한 ‘카생 초안’이다. 먼저, 험프리 초안은 당시 존재하던 전 세계 인권관련 문헌들과 세계 각국의 헌법에 명시된 인권 관련 조항을 집대성해서 모두 48가지의 항목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카생 초안은 그 험프리 초안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권리에 대한 일정한 순서를 정리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수많은 수정을 거치면서도 카생의 분류 방식은 거의 수정되지 않고 최종본에도 남아 있다.

이렇게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은 당시 학계나 많은 국제 NGO의 자문의견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담아낸 결과이다. 선언 작성에 참여한 모두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권리장전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큰 틀에 관해 모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 과정이 흘러가면서 크고 작

은 의견충돌도 있었다. 가령, 「세계인권선언」에 ‘일반적인 원칙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 범위를 명시할 것인지’는 무려 1400번 정도 투표하면서까지 고민한 사항이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작성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을까요? 먼저 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으로, 백악관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전부터 꾸준하게 여성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던 사회운동가였다. 또한,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에는 국제적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창설을 주도하고 공동명예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1948년에는 UN총회에서 미국대표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곳의 모든 인류를 위한 마그나카르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인물은 존 험프리이다. 존 험프리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독학으로 법학교수가 된 사람이다. 그는 종전 후 UN사무국 인권국장을 지내면서 UN의 인권담당 책임자로서 「세계인권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교로 돌아가 평생을 인권교육에 전념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물은 르네 카생이다. 르네 카생은 유대계 프랑스 지식인으로, 험프리의 초안을 다듬어 두 번째 초안을 만든 사람이다.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전쟁 때 한 쪽 다리를 잃었고, 친인척 중 29명은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큰 비극을 겪으며 살아남은 카생은 「세계인권선언」 작성에 큰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나 고아, 그리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다.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는가?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영어 원문으로는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즉 ‘All human beings’는 처음에는 ‘Men’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men)은 평등한 것인가? men은 남성만을 뜻하지 모든 사람이란 말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All human being’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인권 존중에 대해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졌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각 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서로 대립하던 두 시각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카생에 주장을 필두로 ‘두 권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투표하러 가기도 쉽지 않고, 사회 경제적 권리가 실현되어야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그렇게 제1조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1948년 12월 10일 저녁. 모든 인류에게 너무도 감동적인 날이 찾아왔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세계인권선언」을 UN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사요 공에는 불참한 두 나라를 제외하고 총 56개국의 대표가 모여 투표했는데, 그 중에 「세계인권선언」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었고 총 48개국 찬성, 8개국 기권으로 채택했다. 불참한 나라는 온두라스와 예멘이며, 기권한 나라는 소련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체코, 유고슬라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8개국이었다.

그럼, 왜 여러 나라는 기권했을까? 그것은 다음 아닌 백인우월정책을 펴던 남아프리카 외에 소련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서구적 가치와 정치적·시민적 권리 강조에 대한 반발로 기권했다. 당시 기준에서 「세계인권선언」은 근본적으로는 서구적 근대성과 휴머니즘이 결합된 구조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서임에는 틀림없지만 ‘서구 대 비서구’의 구분이 생겨났으며, 국정에 참여할 권리 등은 국가를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대 국가와 비국가 집단’의 분리가 생겨났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선언이 아니라 강제력을 가지는 ‘법’이 되려면 국제협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으로는 많이 약했던 것이다. 그래서 UN과 여러 국가는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들을 따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인권은 점차 생명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식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과 같은 전통적 권리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확장되고, 집단의 자기결정권을 뜻하는 연대권도 등장했다. 「세계인권선언」의 한계가 인권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바이블과 같은 문헌이자, 현대 인권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공유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차별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 예시 >

◎ 학력·외모 지상주의 ‘한국’ -차별과 인권

2011년, 우리나라는 차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이 뽑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 1위는 학력 및 학벌, 2위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3위는 외모에 의한 차별이었다.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력과 학벌이 가장 심각한 차별 사유로 거론되는 나라는 아마 한국 밖에 없다.

외모도 마찬가지이다. 성형수술 세계1위라는 불명예와 동안 피부 만들기와 같은 열풍은 한국 특유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차별은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게다가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같이 차별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체제는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양산한다는 역사적 증거도 남아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차별. 나는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외모로만, 피부 색으로만 평가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문제 풀기

1. 다음 중 UN인권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은?

- ① 르네 카생
- ② 엘리너 루스벨트
- ③ 존 험프리
- ④ 찰스 말릭

○ 정답 : ②

○ 해설 : 위원장 엘리너 루스벨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으로, 백악관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전부터 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빈곤층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활동가였다. 1941년에는 국제적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창설을 주도하고 공동 명예회장을 맡기도 했고 1948년 8월에는 UN 총회에서 미국 대표로서 연설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2.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인권선언」 탄생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 ②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 ③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기권한 나라는 8개국이다.
- ④ 「세계인권선언」은 강대국의 강요로 작성했다.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강대국들의 주도 하에 작성되긴 했지만, 강요가 아닌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수많은 논쟁과 협의 끝에 완성한 선언이다.

3.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 ①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①은 제3조, ②는 제9조 ③은 제21조이다. ④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으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평등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정리하기

1. 인권 말살의 위기와 「세계인권선언」의 시작

-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름
- 독일의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임
- 대규모 전쟁과 인권침해를 겪은 뒤에 국제사회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그 결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1945년, 46개국의 비준으로 UN을 창설하면서 인권 항목을 삽입한 「UN헌장」을 승인하여 전 세계 공통의 인권기준을 만들고자 함.

3. 인류 공통의 인권기준 「세계인권선언」을 만들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권이 유린당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인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국제사회가 합의할 필요가 있었음
-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UN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UN 내 다양한 지역과 문화적 안배를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함
- 1947년, 최초의 UN인권위원회를 열고 「세계인권선언」 작성을 위한 8명 초안위원회를 만들고, 초대위원장으로 엘리너 루스벨트를 임명함
-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6가지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 중 ‘험프리 초안’과 ‘카생 초안’이 대표적임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 1948년 12월 10일에 UN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은 그 동안의 범세계적인 논의들을 집대성한 것임

- 각기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수많은
 논쟁과 협의 끝에 완성한 문헌임
- 「세계인권선언」의 등장 이후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짐

2강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제3강

「세계인권선언」의 제정과정



1. 「세계인권선언」을 위한 첫걸음
 - UN인권위원회의 설립
2. UN인권위원회의 등장과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결성
3.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부터 재정·채택까지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제3강

「세계인권선언」의 제정과정

인류의 혁신적인 발명이자, 인권의 금자탑이라고 불리는 「세계인권선언」. 1947년, UN인권위원회에서 초안위원회를 구성한 후,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 되기까지 약 2년간의 세월 동안 8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초안위원회를 필두로 한 UN인권위원회와 세계 각국의 국제 NGO, 그리고 학계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인류 모두를 위한 공통의 인권기준, 곧 인권 선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채택 당시 총 58개의 회원국 중 48개국의 찬성, 8개국의 기권(6개의 공산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단 1표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인류 최초의 인권 합의문인 「세계인권선언」의 제정과정을 통해, 인류를 위해 인권의 선구자들이 기울인 노력과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은 미국이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UN인권위원회 설립 후, 1947년 「세계인권선언」 초안 위원회를 구성, 미국뿐만 아니라 레바논, 프랑스,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적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여 수 차례의 논의 끝에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 총회에서 채택했다.

2. UN인권위원회는 「UN헌장」에 기초하여 설립했다.

○ 정답 : ○

○ 해설 : UN인권위원회는 「UN헌장」제68조에 의거, UN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 기구로 설립되어 1947년 1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3. 「세계인권선언」을 UN인권위원회가 작성하여 제3차 UN총회 때 최종 채택했다.

○ 정답 : ○

○ 해설 : UN인권위원회 설립 직후, 「세계인권선언」초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초안을 작성하고,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총회 때 최종 채택했다.

■ 학습목표

- UN의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초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의 제정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세계인권선언」을 위한 첫걸음 - UN인권위원회의 설립
- UN인권위원회의 등장과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결성
-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부터 제정·채택까지
-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1

「세계인권선언을 위한 첫걸음 - UN인권위원회의 설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UN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때와 달리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시 국제연맹은 종교의 자유와 인류평등의 보호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 대표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들어 국제연맹은 국제적인 인권협약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 나치군의 잔인한 대량학살의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충격에 빠진 인류는 이제껏 탁상공론으로 그쳤던 인권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UN 회원국은 “평화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UN헌장」을 채택하기 위해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는 50개의 가입국 대표들뿐만 아니라 주최국이었던 미국의 초대로, 미국 국내 42개의 비정부기구(NGO)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회의를 통해 이전까지는 단순한 민간단체였던 이들은 UN 헌장 규정에 따라 UN경제사회협력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정식으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로 불리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he Labor, AFL), 전국제조업자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에서부터 전미평화회의(National Peace Conference), 국제라이온스(Lions International)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미국 대표단의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구성된 자문단은 UN이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했다. 세계교회평의회(World Council for Churches, WCC)의 자문위원 프레릭 놀드는 인권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종교 및 평화단체는 즉각 연합국 대표단에게 UN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UN헌장」에 인권조항을 넣는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노력에 의해, 국제연맹의 헌장과는 달리, 「UN헌장」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들의 요구보다 약하게 표현했지만, “인권”이라는 용어는 「UN헌장」에 일곱 번이나 언급될 만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UN헌장」 제1장(목적과 원칙) 중 제1조 제3항을 살펴보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성별·언어 또

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라고 되어 있다. 이는 UN은 「UN헌장」에서 이 외에도 6번이나 더 인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UN헌장」과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계인권선언」이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자행됐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됐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자, 인권과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공식적인 문서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UN헌장」의 해석에서 가장 권위적인 길잡이이다.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합의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UN헌장」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국제정치라는 테이블의 중심에 올려놓았으며, 인권을 인류사회 공통의 핵심가치로 인정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 데에는 물론 연합국, 즉 UN회원국의 지지와 찬성이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선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UN인권위원회와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UN헌장」 전문을 보면, “우리 연합국 국민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것”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 제55조에서는 UN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뒤이어 나오는 제56조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연합과 협력하고 공동의 조처 및 개별적 조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68조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설립한 것이 바로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다. (※ 53개 위원국으

로 구성된 UN인권위원회는 UN의 인권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정치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2006년 6월 폐지되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승격됐다.)

2

UN인권위원회의 등장과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결성

UN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열린 제60차 UN 총회에서 결의 제 A/RES/60/251호에 의해 UN 인권이사회로 승격·설치되기 전까지, 세계 각지의 인권 및 취약 계층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검토하고,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성·종교로 인한 차별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등의 역할을 맡으며, 인류의 존엄과 평화·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UN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낸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기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야만 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끝난 후, 최종 채택된 「UN헌장」의 제55조, 제56조, 제58조의 결정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UN은 인권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초기 준비회의는 냉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UN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헌을 했던 남편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前)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전(前) 영부인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가 UN대사로 국제 인권문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이제 막 첫걸음마를 떤 인권위원회 준비회의는 미국 뉴욕의 헨터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열리고, 참관인과 보좌관들도 도서관 벤치에 앉았을 만큼 초라하고, 심지어 위원회 정원의 3분의 1은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모인 준비위원회 대표들이 미국의 UN대표 엘리너 루스벨트를 준비회의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인권위원회 준비회의는 국제권리장전의 초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권리장전의 탄생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의 준비회의를 열었고, 18개국으로 구성된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인권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1947년 1월, UN이 처음으로 등지를 틀었던 뉴욕에서 열렸다. 정식으로 출범한 UN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준비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엘리너 루스벨트를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표였던 장평춘(Dr. Peng-chun Chang)과 레바논 대표 찰스 말리크(Dr. Charles Malik)를 각기 부의장과 총회 서기로 내정했다.

UN인권위원회는 국제권리장전의 초안 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권리장전은 강제력이 없는 인권선언(추후 「세계인권선언」으로 공표됨),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약, 법적 강제수단(1966년 국제인권규약으로 완성됨)으로 이루어졌다. 권리장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UN인권위원회는 레바논의 찰스 말리크(Dr. Charles Malik), 소련의 알렉산더 보고모로브(Alexandre Bogomolov), 중국의 장평춘(Dr. Peng-chun Chang), 프랑스의 르네 카생(René Cassin), 미국의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영국의 찰스 듀크스(Charles Dukes), 오스트레일리아의 윌리엄 호지슨(William Hodgson), 칠레의 헤르난 산타 크루즈(Hernan Santa Cruz), 캐나다의 존 험프리(John P. Humphrey)으로 초안 위원회를 조직하여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3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부터 제정·채택까지

인권선언의 형식이 결정되자, 곧바로 인권선언의 내용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바로 “인권의 범주”를 정의하는 일이었다. 그는 인권이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류가 열망하는 환상과 추상적인 개념인지, 개인의 일인지 아니면 집단의 일인지, 또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아니면 인간 세계에 속한 개념인지, 정부가 부여하는지 정부가 보증하는지 등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논의했다. 이러한 고민은 끝없이 계속했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선언의 제1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세계인권선언」이 탄생이 얼마나 슬한 굴곡과 난항을 겪을지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프랑스 대표인 르네 카생이 제1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내놓았다.

“모든 사람은 형제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는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카생의 초안에 초안위원회의 위원은 즉각 불만을 터뜨렸다. 바로 첫 두 단어, ‘모든 사람’(all men)이라는 용어 때문이었다. 그중 소련 대표인 블라디미르 코레츠키가 모든 사람(all men)이 모든 사람(all people)을 의미한다고 보는 르네 카생의 견해에 이의를 제

기했다. 그는 “모든 사람(all men)이라는 단어는 이제껏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인류의 역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 대표이자 여성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위원인 한사메타 역시 ‘모든 사람’(all men)이라는 표현에 반대하면서, ‘모든 사람’(all people) 또는 ‘모든 인류’(all human beings)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런 의견에 대해 “미국의 여성은 독립선언에 나오는 ‘모든 사람’(all men)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렇게 시작된 갑론을박 속에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인간가족의 모든 구성원’(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라는 문구를 제시했고, 영국과 인도에서는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all people, men and women)이라는 문구를 내놓았다. 이때 러시아 대표인 알렉세이 파블로프는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이라는 표현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기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러시아어에서 여성(women)은 자동적으로 사람(people)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벨기에 대표 로날드 레보도 프랑스어 역시 그대로 번역했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작성은 제1조에서부터 순탄치 않은 역경을 맞아야 했다. 갖은 진통 끝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아래와 같이 고쳐졌다.

모든 인류(all human being)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by nature)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all men)이 ‘모든 인류’(human beings)로 바뀌었고, ‘형제처럼’(like brothers)이라는 문구는 이후에 여성위원회의 요청으로 ‘형제애의 정신으로’(in a spirit of brotherhood)라고 바꾸었다.

그러나 다시 논란의 여지가 피어올랐다. 바로 ‘이성과 양심’이라는 대목 때문이었는데,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신이 주었는지, 자연이 주었는지를 가지고 격하게 논쟁했다. 이에 레바논의 대표 찰스 말리크는 ‘창조자(the Creator)’라는 문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소련 대표 알렉산더 보고모로브는 이에 대해 “이 선언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인류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해 안건을 부결시켰다. 인권이 신(God)에게서 부여받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다. 브라질의 대표는 “사람은 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바, 이로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영국의 어니스트 데이비스는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공산권의

대표단을 소외시키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벨기에 대표 앙리 카르통 드 위아르가 신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자연도 언급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자연에 의해(by the nature)’ 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세계인권선언」 초안은 초안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솔한 논쟁과 논의 끝에 전문(前文)과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당시 선언의 초안은 초안위원들의 논의와 함께, 캐나다의 법학자 존 험프리(John P. Humphrey)가 여러 국가의 헌법을 비교·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초안을 놓고 약 2년간 8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마지막 수정을 끝으로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은 UN총회의 사회, 인도 및 문화적 사안에 관한 제3위원회(Third Committee on Social, Humanitarian, and Cultural Affairs)로 넘어갔다. 제3위원회는 1948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치며 검토하고 다듬었다. 몇몇 조항은 몇 주씩 토론하기도 했다. 제1조와 제2조의 경우, 토론에만 17일을 끌었고, 초안위원회에서는 별 논쟁거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토론하는데 1주일이나 걸렸다.

「세계인권선언」 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솔한 수정과 보완작업을 반복하며 모양새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선언 어디에도 ‘이념’과 관련되는 ‘민주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같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한 압제와 인류의 갈등의 부활을 막자는 인류의 공통적인 염원을 실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내용을 통해, 인류가 모든 인류 구성원의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기초한 자유, 정의, 평화를 선언함으로써 평화의 시대를 갈구한다. 나아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제공자였던 나치 정권 등 전범국에 대한 분노를 환기시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함께 포함한다. 복지를 강조했던 당시의 기초를 반영했다. 초안 작성 시기 동안 소련과 남아메리카 등지의 사회주의자로부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자까지 모두 「세계인권선언」이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명확히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선언의 개념 정의를 내리며 다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라는 대목에서 다시금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사회보장’ 이라는 단어에 대해 거듭 토론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영국 측은 ‘사회보장’ 이라는 단어를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의 의미로 좁게 해석했고, 다른 대표는 ‘사회 안에서 안전한 장소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a secure place within society)’ 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다. 남아메리카의 파나마 대표는 이러한 ‘사회보장’ 의 범위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주장했고, 베네수엘라는 ‘임신부터 사망까지’ 로 수정하고자 했으며, 시리아는 베네수엘라 측의 수정안을 ‘임신에서 파멸까지’ 로 고치는 등 숱한 논쟁이 오갔다.

기각된 제안들도 있었다. 소련이 ‘평시 사형제 폐지안’을 수정안으로 들고 나오자 서구 열강은 일제히 반대했다. 벨기에는 평시 총살 권리를 원했고, 영국은 교수형의 권리를, 미국은 전기의자 처형을 원했다. 프랑스는 소련을 향해 ‘소련이 죄수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일이 사형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러한 격론 끝에 소련의 수정안은 기각되었고, 그 후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UN에서 한동안 언급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세계인권선언」은 노동조합과 결혼의 자유를 보장했고, 가족의 범위를 '사회의 자연적이고도 기본적인 단위'로 재확인했다. 조심스럽게나마 '사유재산의 권리'를 재천명하고자 하는 등 많은 영역에서 사람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했다.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는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를 그칠 수 없었다. 초안위원회는 제29조 제1항에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사람이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함께 부여 받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제2항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하여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때도 도덕과 공공질서와 민주사회의 보편적 복지가 요구하는 바에 정당하게 부합해야 한다는 제한적 조건을 두어 이를 상기시켰다. 이토록 극도의 신중함과 겹겹이 쌓아둔 안전책과 같은 구조는 이후 인권협약들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인권선언」이 국제권리장전을 비롯한 여러 인권협약 제정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도록 일조했다.

이렇게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 기간 동안 통틀어 1,233여회의 투표가 있었다. 결국 제3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찬성 21, 반대0, 기권7로 선언을 통과시켰고, 「세계인권선언」은 다시 제3차 UN총회로 넘어와 1948년 12월 10일, 파리 에펠탑이 내다보이는 샤토 궁에서 최종 채택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58개국의 회원국 중 예멘과 온두라스 등 불참국을 제외하고, 48개국 찬성, 8개국 기권으로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들 중 일부는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였다. 당시 세계 인구 중 다수가 식민지배하에 살았다. 선언 채택 이후 UN회원국은 193개국이다. UN설립 당시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새롭게 가입한 회원국은 대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이들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됐다.

「세계인권선언」이 서구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 중 하나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작성을 담당했던 초안위원회 역시 서방 출신 혹은 서방 유학파들이 주류이다. 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의무보다는 권리를, 집단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더 앞 조항에 두어 강조했다. 제국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명시적 우려 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설립 당시 UN의 회원국 중에는 자본주의 국가를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와 선진국·개발도상국이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크리스티교, 이슬람교, 불교 및 힌두교 국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었던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염원을 담은 세계 최초의 인권합의문’이자 ‘인권의 금자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세계인권선언」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구속력을 가진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국가들이 실현하기 위해 함께 애써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여, 인류애와 평화의 이념을 공동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점에서 역사적인 문서이며, 더 나아가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하기

왜 「세계인권선언」을 세계최초의 인권합의문이자, 인권의 금자탑이라고 하는지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국제연합(U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참상의 원인이 인권경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공동의 노력 부재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UN헌장」 등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UN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UN인권위원회는 국제권리장전의 초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를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 「세계인권선언」 초안은 작성과정에서 약 2년간 8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작업을 반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권선언」 초안이 제3위원회로 넘어온 후, 다시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기간 동안 1,233회의 투표가 이뤄졌다. 이렇게 완성된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당시 58개 회원국 중, 2개국의 불참을 제외하고, 48개국 찬성, 8개국 기권으로 단 한표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UN회원국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공감(共感)’ 할 수 있는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세계인권선언」은 명실공히 세계최초의 인권합의문이자, 인권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풀기

1.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성된 조직은?

- ① UN총회
- ② UN경제사회이사회
- ③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
- ④ UN여성지위위원회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성된 조직은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이다.

2.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의장이자, UN인권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인물은?

- ① 장평춘
- ② 블라디미르 코레츠키
- ③ 찰스 말리크
- ④ 엘리너 루스벨트

○ 정답 : ④

○ 해설 : 엘리너 루스벨트는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의장이자, UN인권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나오는 첫 단어로, 수많은 논의 끝에 최종 채택된 ‘모든 인류’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① all kinds of people

② all men

③ all human beings

④ all people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all human being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수많은 논의 끝에 최종 채택된 말로 ‘모든 인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정리하기

1. 「세계인권선언」을 위한 첫걸음 - UN인권위원회의 설립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난 후, 나치의 대량학살의 잔학한 면모를 확인한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
- UN 설립 후, 1946년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UN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

2. UN인권위원회의 등장과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결성

-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끝난 후, 최종 채택된 「UN헌장」의 제55조, 제56조, 제58조의 결정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 1947년 1월, UN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엘리너 루스벨트를 선출,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 구성
- 이후, 18개국으로 구성된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 인권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1947년 1월, UN이 처음으로 등지를 틀었던 뉴욕에서 열림

3.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부터 제정·채택까지

- 1947년 6월~1948년 6월 초안위원회 초안 작성기: 초안 작성, 정부의 논평 검토 및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
- 1948년 9월~12월 UN 제3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수정 및 검토
- 1948년 12월 10일 UN 제3차 총회(프랑스 파리), 총 58개 회원국 중, 찬성 48, 반대 0, 기권 8, 불참 2로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세계인권선언」 만장일치 채택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그리고...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염원을 담은 세계 최초의 인권합의문’이자 ‘인권의 금자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짐
- 국가들이 실현하기 위해 함께 애써야 하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인류애와 평화의 이념을 공동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서

제4강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1. 사람(Human)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호소문
2. 권리(Rights)
 -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구성요소
3. 인권(Human Rights)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선포

제4강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파격적인 움직임이 등장한다. 바로 북촌에 살던 이소사, 김소사가 300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했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의 교육권과 노동권, 더불어 참정권을 주장한 선언이다.

1898년 9월 8일 <황성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등의 구절을 통하여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당시는 대한제국으로, 선언의 내용을 보고 온 나라가 크게 놀랐다.

여권통문을 발표한 여성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선언 발표 후 여성교육운동모임 ‘찬양회’를 만들었다. 나아가 고종에 상소문을 올려 남녀평등을 요구했다. 여권통문 발표에 참여했던 여성은 대부분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었다.

발표 이후 서민층 여성과 기생들, 지방의 부인들도 동조해 9월 12일 최초의 근대적 여성 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했다. 이는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여학교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증진을 촉구하는 원동력이 됐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영국이다.

○ 정답 : ×

○ 해설 : 1893년에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는 뉴질랜드다.

2.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강조한 선언의 목적은 ‘인권교육’과 ‘지속적인 조치’를 통한 인권 향상에 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작성에 동의한 전 세계 국가는, 교육을 통해 권리에 대해 의식한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 기준을 요구하여, 인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통하여’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더 나은 조치를 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3. 「세계인권선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의 ‘자유’와 ‘정의’ 및 ‘평화’이다.

○ 정답: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단락1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세계의 ‘자유’와 ‘정의’ 및 ‘평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 일곱 개 단락을 통해 인권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과 ‘지속적인 조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Human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호소문
- Rights -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구성요소
- Human Rights -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선포

1 사람(Human)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호소문

1)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인격권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해서 공포한 제6공화국 「헌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0조는 민주공화국이 명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보여준다. 특히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이 권리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며,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몫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앞부분을 살펴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개념이라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여러 권리들의 기본적인 의미를 함축한 표현이면서, 그 자체가 독립된 권리이다. 또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 나열된 모든 권리에 빠짐없이 스며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항목들에도 녹아 있다. 선언에 나열된 각각의 권리가 담지 못한 권리의 개념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 혹은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으로는 열거되지 않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권리가 있다면, 모두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로 옹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옹호·보장해야 할 권리를 정리하자면 ‘인격권’이다. 이것은 주거권, 초상권, 생명권, 일조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격권’은 가장 무거운 이름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2) 다양한 차별의 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은 인권침해의 한 예시이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신이나 출산 등에 의한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3년에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6집에서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월에 결정된 ‘항공사 여성 승무원에 대한 복장 등 제한(‘2013.1.16. 자 12-진정-0415100 결정)’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이다. 국내 모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 착용하도록 다른 항공사에 비하여 강화된 복장 기준을 적용한 일에 대해 해당 항공사 노동조합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조와 「항공법」제2조 제5호를 참조하여 피진정인인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여성 승무원의 외적 이미지를 대고객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여성 승무원이 수행하는 전체적 업무에 대해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한 개인의 사례도 있다. 2013년에 결정한 “피의자 호송 중 폭행행위에 의한 인권침해(13-진정-0052600)”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진정인이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 진정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당한 뒤, 안경을 벗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은 그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사건 이후 진정인은 석방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알렸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가족이 항의하자, 경찰은 언론에 보도되어서야 관심을 가졌고, 관련 경찰 간부들이 나서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건의 사후처리 역시 부당하게 진행했다. 게다가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작동을 의무화한 경찰청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량 내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이 피해를 당한 지역의 모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를 권고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차별이나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는 인권을 지켜내는 목적도 결국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에 있다. 사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이다. 「헌법」에서, 그것도 비교적 앞에서 다루고 있음은 적어도 우리사회가 그 가치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3) 「세계인권선언」에서 나타난 존엄성의 가치

「세계인권선언」 역시 이러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한 사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그러한 특징은 특히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첫 문단부터 확인할 수 있다.

원문	한국어 공식 번역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Preamble	전문
①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①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첫 문단을 확인해보자. ‘①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존엄성(dignity)’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전문 첫 문단을 통해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인권이 단순히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만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2 권리(Rights) -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구성요소

「세계인권선언」의 한국어 번역문의 경우, 공식 번역문 이외에도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한 번역문이 존재한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원문의 단어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적인 문서와 국제협약 등은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번역이 다르고, 원문의 단어에 내포된 의미 중에서 어떤 한글 단어와 가장 가까운지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번역가가 번역했다 하더라도 확실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원문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원문	한국어 공식 번역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Preamble	전문
①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①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②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②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③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③ 사람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④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④ 국가 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⑤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⑤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했고,

원문	한국어 공식 번역문
<p>⑥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p>	<p>⑥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했으며,</p>
<p>⑦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p>	<p>⑦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p>
<p>⑧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p>	<p>⑧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p>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길다고 보면 길수도, 짧다고 보면 짧을 수도 있는 1,748개의 단어로 작성되어 있다. 전문은 총 여덟 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앞으로 나올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전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선언을 작성한 목적, 이유 등을 설명한 일곱 개 단락이 있다. 그 뒤에 ‘이에(Now, therefore)’ 로 시작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단락으로 구성됐다.

1) 존엄성과 자유, 법에 의한 통치와 저항권

전문은 선언 제1조, 제2조와 함께 구체적인 조항을 다루기 전에 전체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 조항(general part)이라고 부른다. 일반 조항에서는 인권 중에서도 휴머니즘적인 요소와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며, 뒤에 본문 부분은 각각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법적인 엄밀성으로 뒷받침한다. 전문에서는 특히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 등을 강조한다.

전문이 여덟 개의 단락을 다시 나눠보면, 앞부분 단락 ①~③은 인권 개념의 기본을 대략 설명한다. 이어지는 단락 ④~⑦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 단락 ⑧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을 신장시키며 달성할 지 서약하면서 선포하는 형식으로 나뉘어 있다.

단락 ①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인류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세계의 ‘자유’와 ‘정의’ 및 ‘평화’ 임을 나타낸다. 자유와 정의,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 우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 존엄성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나라마다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 단어를 통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한 사상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존엄성이란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 같이 사용된 ‘인정(recognition)’이란 단어와 함께 인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는 단순히 법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권리’는 국가가 부여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 즉 인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전까지의 인권이라는 단어에는 자연권의 색채가 강했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이론적 요소를 지우고,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진 권리이며 불가양도성 권리라는 것을 알렸다.

이어지는 단락 ②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라는 다소 감정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이 부분은 카생 초안의 전문 제1조를 그대로 따왔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29명의 친인척을 잃었기 때문에, 카생은 전쟁에 의한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생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네 가지 자유,’ 즉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직접 인용하여 서술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위에 세워진 세계를 꿈꿨다. 이런 면에

서 본다면 단락 ②도 단락 ①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로운 세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단락 ③의 핵심은 ‘대항(rebellion)’과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에 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저서 『통치론(Two Treatise of Government)』에서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는 민중에게 허용된 유일한 최후의 수단을 rebellion, 즉 대항·저항으로 그렸다. 통치자가 민중의 안전이나 행복,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통해 정부를 해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어떤 정부든 민중의 생명·자유·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민중의 권리라 서술한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할 당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대항할 권리에 대해 논하는 일이 상식이었다. 카생과 험프리도 각자 초안을 만들 때 이 대항할 권리를 조항에 넣어 두었다. 만약 통치자나 정부가 민중의 대항·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에 의한 통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단락③의 핵심 취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에 의한 통치’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통치자나 국가 권력보다 법이 더 높이 위치한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 마지막으로 법에 나오는 규정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할 때 그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2) 국가 간의 소통과 사람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자유

단락 ④는 전 세계의 국가 사이의 관계와 인권이라는 논쟁을 암시하는 단락이다. 국가 사이의 관계, 즉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 권력 정치로 파악한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자는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은 실제로 있지 않는 이상향을 생각하는데 불과하다고 믿었다. 또한 국제기구나 국제법, 국제규범은 실제로 국제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옹호하는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횡행했던 권력정치를 지적하면서 힘에 의한 국제질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세계인권선언」은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앞장선 문서로, 국가의 주권 원칙을 문제 삼은 최초의 국제적 합의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한 것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내정을 자국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막아내지 못한 인류가 겪은 전쟁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가지는 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고 있었다. 굳이 공개적으

로 인권에 반대하는 인상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므로 대세에 따라 선언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따라서 전문의 단락 ④는 이런 배경을 두루뭉술한 언어로 표현한 부분이며, 당시 각 국가별로 달혀있던 문을 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세계인권선언」을 표현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이후 「UN헌장」에 이르는 서양의 권리 사상의 계보를 잇는 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단락 ⑤부터 단락 ⑦까지를 보면 「세계인권선언」과 「UN헌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락 ⑤의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사람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으며(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부분은 「UN헌장」 전문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녀(men and women)’ 라는 말인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사용했다.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할 때는 유럽 각국에도 아직까지 성차별적인 시각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1893년에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외에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주는 과정에 있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할 때도 처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everyone)’ 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도미니크공화국 대표들이 이것으로는 성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모든 사람’ 을 표현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변경했다.

단락 ⑦을 보면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라는 문장이 나온다. 인권을 잘 지켜내려면 인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단락은 얼핏 보기에는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인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관’이란 더더욱 확실하지 않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선언 작성에 참여했던 각국의 대표단은 학자보다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사가 많아 인권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피하고자 했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쟁하게 된다면, 선언 작성이 기약 없이 연기될 것을 걱정한 탓도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단락 ⑦을 보면, 인권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이해하려면 「세계인권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은 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한 전 세계인이, 전문 다음에 나오는 조항들,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주며 살자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세계인권선언의 저변에 깔려있다. 결국 전문의 단락 ⑦은 인류가 서로를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서로와 공존하려 할 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출발선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3 인권(Human Rights)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선포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마지막 단락 ⑧에는 선언 작성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by teaching and education)’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즉 전 인류로 하여금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데 있다. 권리에 아무런 의식이 없던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권리에 대해 각성하고 권리 의식을 가지게 된다. 권리에 대해 의식한 사람들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 기준을 요구하며, 인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점진적(혹은 지속적인) 조치를 통하여(by progressive measures,)’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치에 있다. 속도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더 나은 조치를 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선포 단락에서 강조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즉 ‘교육’과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인권운동의 두 가지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인권운동가와 단체는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썼고, 관련 저술서도 많이 등장한다. UN에서는 1995년부터 2004까지 10년을 ‘UN이 정한 인권교육 10년’으로 설정했다.

인권교육은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나 언론인, 종교인, 경제인, 노동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에 대해 눈을 뜰수록 그 사회의 인권은 증진된다.

2014년 9월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한 재판에서 “재판이 장난인줄 아냐”고 한 전직 판사의 막말이 인권침해이며, 해당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의 뉴스가 화제가 됐다. 해당 판사는 “사법권 독립 저해하는 행위 자제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외에도 2009~2013년 사이 법정에서 이뤄진 법관의 막말을 진정된 건만 67건에 달한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특히 법조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더 넓은 분야에서 시행돼야 한다.

한편, 인권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조치’를 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관련 NGO단체 활동이나 인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70년대는 한국과 필리핀 등의 아시아권에서도 민주화·인권운동이 태동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인권침해에 맞선 인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리고 점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인권운동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인권운동, 즉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의 토대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깔려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유하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예시>

현재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기표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의하여, 시각 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와 더불어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표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 판의 넓이를 제외한 기표대의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투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게 현행 기표대의 규격을 조정해야 한다.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기표방식으로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다. 본인이 선택하고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투표의 필수 과정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선거인과 동등한 정도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문제 풀기

1.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할 때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성별을 초월한 모든 사람, 즉 '남녀(men and women)'란 표현을 주장한 나라는?

- ① 영국 ② 도미니크공화국 ③ 미국 ④ 프랑스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할 때는 유럽 각국에 성차별적인 시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1893년에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외에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작성할 때도 원래는 '모든 사람(everyone)'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도미니크공화국 대표들이 이것으로는 성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모든 사람'을 표현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변경했다.

2.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을 통해 인권과 사회를 위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 ③ 「세계인권선언」 전문 단락 ④를 통해 국가의 주권원칙을 문제 삼은 최초의 국제적 합의문서이다.
- ④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총 여덟 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전문 단락 ③의 핵심은 ‘대항(rebellion)’과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에 있다. 만약 통치자나 정부가 민중의 대항·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에 의한 통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문 단락 ③의 핵심 취지이다.

3. 다음 설명에 알맞은 인물은?

- ◎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전문의 단락 ②는 이 사람의 초안 전문 제1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 ◎ 유럽인권재판소 장관과 UN인권위원회 총재직을 거쳤으며,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 ◎ 여동생을 비롯한 29명의 친인척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학살로 잃은 후, 전쟁에 참혹함을 알리면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 ① 찰스 말릭 ② 엘리너 루스벨트 ③ 존 험프리 ④ 르네 카생

- 정답 : ④
- 해설 : 르네 카생은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살아있는 동안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금도 인권연구나 인권활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다.



정리하기

1. 사람(Human)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호소문

-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신전’으로 오르는 계단과 같음
- 신전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목적과 배경을 이야기 하는데, 특히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 등을 강조

2. 권리(Rights) -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구성요소

- 전문의 여덟 개의 단락을 다시 나눠보면, 앞부분 세 단락은 인권 개념의 기본을 대략적으로 설명
- 이어지는 네 단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힘
- 마지막 단락 ⑧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인권을 신장시키고 달성할 것인지 서약하면서 선포함

3. 인권(Human Rights) - 사람의 존엄성을 위한 선포

-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밝히는 선포 목적은 ‘인권교육’과 ‘지속적인 조치’를 통한 인권 향상에 있음
- 교육을 통해 권리에 대해 의식한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인권 기준을 요구하여, 인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효과를 기대했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통하여’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제5강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제2조

1. 제1조 :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
2. 제2조 : 모든 차별 금지

제5강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제2조

인류의 혁신적인 발명이라 불리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인류 보편의 원칙과 관점으로 정리한 「세계인권선언」. 전쟁과 끔찍한 자기파멸 행위로 점철된 국제질서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냉전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의 봄처럼 아주 짧은 공간이 열렸다. 이 공간에서 인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염원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은 UN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안 작업부터 최종 채택까지 2년이란 긴 산고의 시간 끝에 탄생한, 당시로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문서였다. 인권이 법조문으로 보장될 성질의 것이 아닌,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 그리고 정치적 결정 속에서 힘겹게 쟁취되었던 것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문서이며 동시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강조하고 싶어 했던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의 존엄과 자유, 평등,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형제자매애의 개념을 되새겨 본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에서 제1조와 제2조는 사람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한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포함한 제1조와 제2조는 구체적인 권리 보다는, 인권의 근본적인 개념, 즉 보편적 인권에 대해 설명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를 강조한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다.

3.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를 강조한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강조한다.

학습목표

- 〈제1조 :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 조항 이해하기
- 〈제2조 : 모든 차별 금지〉 조항 이해하기

학습내용

-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
-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차별 금지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제1조는 흔히 세계인권선언의 초석(cornerstone)이라 불린다. 제정 당시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에서 제1조와 제2조를 가다듬는 데에만 17일이 걸렸다고 한다. 그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조항이다. 이들 조항은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으로서, 전문에서도 언급되었던 ‘보편적 인권’을 다시금 강조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이토록 많은 시간이 든 이유는 초안 제정 단계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격한 논쟁이 오갔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제에는 언제나 근본적이고 심오한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다. 또한 그에 대한 응답은 거의 언제나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쟁의 참상을 온 몸으로 느꼈던 그 시대에 그보다 더한 격론이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보면, 전문의 첫 단락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세계인권선언 전문 첫 단락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두 가지 내용을 놓고 보면,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1789년에 탄생한 「사람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가장 간결하고 명확해야 할 인권선언에서 비슷한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전문과 제1조에 걸쳐 두 번이나 언급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제1조에서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이후 제정된 여타 많은 국제인권법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인권의 도덕적 근거를 힘주어 외친 ‘문헌’이라면, 그 이후 생겨난 국제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도덕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인권을 법적인 형태로 정교하게 성문화(成文化, codification)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1조의 내용 중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라는 말과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는 문항에도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정말로 사람이 자유롭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엄하고 평등한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초안위원회의 위원은 감론을박을 펼쳤다. 정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유롭게 태어났다면, 누구는 힘들게 고통 받으며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호사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태어나다”라는 말조차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것이 사람의 생물학적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은유로 쓰인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논쟁적인 쟁점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자면, 임신중절, 소위 말하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람의 탄생을 생물학적인 영역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문제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을 갈라놓는 기준이자 분기점이다.

사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라는 문구에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다는 이상을 서술했다. 하나의 규범적 이상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류의 지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1762년에 나온 루소의 〈사회계약론〉에도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Man is born free; and everywhere he is in chains)”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표현은 일정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차

원에서의 “수사적 장치”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조를 살펴보자면, 이 조항은 앞문장의 주장을 뒤의 문장이 뒷받침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따라서 이성과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하다는 앞문장의 규범적 내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된 답이라는 이야기다. 이성(理性, reason)이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즉 사람의 행위를 인도해주는 지성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심(良心, conscience)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의미한다.

특히, ‘양심’이라는 용어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용어였다.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의 중국 대표였던 장평춘은 ‘이성’과 짝을 이루는 단어로 ‘인(仁)’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어(論語)』의 「안연(顔淵)」 편에, 공자(孔子)의 제자 번지(樊遲)가 스승인 공자에게 ‘인(仁)’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있다. 이때 공자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고 대답한다. 장평춘은 이 대목에 따라 ‘인(仁)’이란 공감 능력 또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람은 홀로 선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마음(two-man mindedness)을 가진 관계론적 존재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인(仁)이란, 사람(人)이 둘(二) 있을 때 서로 사이에서 생겨나는 의식, 즉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동정할 줄 아는 의식을 의미한다.

그 이후 술한 토론을 거쳐, 장평춘이 말한 인(仁)의 개념은 conscience 라는, 즉 ‘양심’이라는 용어로 재탄생했지만, 원래 제안자였던 장평춘의 의도에 부합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현재 「세계인권선언」 제1조 중에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라는 대목이 장평춘의 취지대로 “사람은 이성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어진 마음을 타고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또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에서는 사람이 이러한 이성과 양심의 자질을 천부적으로 부여받았다, 즉 ‘타고났다’(endowed)라고 표현해서, 이성과 양심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는지의 여부가 사람과 비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

준이다. 이 기준은 사람만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성과 양심’은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다. 이성과 양심은 뒤 문장에 나오는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고 ‘형제애’를 발휘하는데 가교역할을 한다.

‘형제애(brotherhood)’라는 용어 역시도 제정 당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별, 즉 젠더(gender)를 의식한 용어 선택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초안에서는 “All men are born free”로 작성되었지만, 이후 여성 대표들의 주장에 따라 ‘men’이 ‘human being’으로 바뀌었다. 형제애에 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자매애(sisterhood)’라는 용어를 나란히 적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토론을 거쳐 결국 간단하게 ‘형제애’만 넣었다. ‘형제애’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즉, ‘형제애’는 곧 ‘형제자매애’를 모두 포함하는, ‘인류의 협동’을 강조한다. 서로 존중하고(respect),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며(tolerance), 서로 협력해야(cooperation)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물질만능 주위에 휩싸인 현대에서, 이런 관점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새뮤얼 볼스(Samuel Bowles)는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해 온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개인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경제학자 집단이 유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제학계에서 펼쳐진 여러 실험을 통해 그런 신화는 깨졌다. 이를테면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갖나 살펴보는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공평하게 돈을 나눴다. 기존 경제학이 설정했던 ‘사람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설이 뒤집혀진 것이다. 그 뒤 다른 실험들에서도 이런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고, 결국 사람은 ‘호혜적 이타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라는 대목을 뒷받침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사람의 개념이 아니다. 현실세계의 다양한 분과학문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상’이 되며,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차별 금지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와,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인권문헌으로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최초의 문헌은 「UN헌장」이다.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의 창설 이후 제정된 국제연맹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에서는 차별에 관한 규정을 넣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국제연맹에서 차별을 강하게 금지하지 못한 것이 그 후의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등장에 도움이 되었다 믿고 있다. 국제연맹의 실패를 보완하고 국제 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등장한 국제연합(UN)이 국제연합의 설립과 중요원칙을 천명한 「UN헌장」을 제정하고 나서 차별에 관한 국제적 문헌이 등장했다. 물론, 「UN헌장」에서도 ‘차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평등권’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반차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한다.

「UN헌장」 전문 中
우리 연합국 국민은
…기본적 인권, 사람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하며, …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and…

「UN헌장」 이후 작성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말을 네 번, ‘구분(distinction)’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했는데, 이는 사람의 평등과 차별의 금지가 인권의 기본 전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제2조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는 사례로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모두 12가지를 꼽았다. 「UN헌장」에서 ‘인종, 성, 언어, 종교’ 등 4가지를 열거한 것에 비하면 훨씬 많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 예는 차별 근거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예시일 뿐이다. 뒤이어 나오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차별과 그 전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새롭게 ‘발견’된 차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차별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내용이 이 문구의 핵심이다.

사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에 당시 언급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차별 사례로 등장한 추가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성적 지향, 장애 여부, 학력과 학벌, 육아, 결혼 여부, 연령, 군 복무 여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차별 사례가 세계적으로 속출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 금지 항목에 관해서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에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한 국

제인권법들도 많이 생겨났다.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장애인 권리협약(2006)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평등 및 반차별 조항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공식화된 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정권은 대표적인 극단적 차별 권력이다. 그는 종교, 문화 그리고 민족(유대인, 집시족), 국적(폴란드), 정치적 견해(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노동운동), 신체적 능력(장애인, 노령자), 성적 지향(성소수자) 등을 기준으로 차별해 역사 이래 전례 없는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독일의 반인류·반인권적 학살과 차별의 후폭풍은 독일을 넘어 전 세계에 미쳤다. 당시 온 세계가 전쟁과 학살의 폐해로 몸살을 앓았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차별과 잔인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이를 겪었던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면서 평등과 차별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조항이 30개의 조항을 이루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두 번째로 언급해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즉 고루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 평등권 사상이 차이를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차이(difference)’와 ‘차별(discrimination)’이 다르다. 남과 다른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금지한다.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고용주는 직급과 업무적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고용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지원자들 중 차이점을 갖고 있는 그 직함에 어울리는 누군가를 뽑을 수 있다. ‘그 직함에 어울리는 합당한 업무능력’이라는 조건 이외에 성별이나 외모, 학벌 등의 다른 이유들을 들어 고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뒤 단락에서는,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한다. 이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장이 제2조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의 ‘공’이 컸다. 러시아 혁명을 이끌고 주도한 레닌이 1917년 발표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논문에서 <강대국들의 식민지 영토>라는 도표를 볼 수 있다. 그 때 당시 식민지를 보유한 규모 순으로 나열하자면,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제국의 순이었다. 이 강대국들의 영토를 합하면 총 8,15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는 전 세계 대륙의

61%에 해당한다. 이 영토에 거주하던 인구만 총 9억 6,060만 명으로, 당시 세계인구의 58%에 해당 한 수치다. 여기에다 소규모 식민지 보유국인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까지 합한다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간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토록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식민지 지배와 본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보호령이나 식민지의 주민의 경우, 식민 본국의 국민과 비교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차별을 받기 일쑤였다. 또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렇게 시작된 식민지 쟁탈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으며, 참혹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인류는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지 알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의 등장과 함께 아래와 같은 「UN헌장」이 나오면서부터 '민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항들이 들어섰다.

「UN헌장」 제1장 제1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후반부는 「UN헌장」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이어받아 탄생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Article 2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자기결정권’ 조항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1966년에 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제1조 제1항에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라는 내용으로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UN헌장」부터 각종 세계권리장전들까지 모두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강대국의 보호령이나 식민지 지역의 주민은 식민 본국이나 강대국들의 그럴싸한 미사여구에도 식민 본국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방면에 있어 본질적인 차별을 받았다. UN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를 통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속한 구성원이냐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확정지었다. 자주독립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메시지이며, 제국주의 세력에게는 제국주의의 종식을 알리는 참담한 메시지였다.

물론, 「UN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은 민족자결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완전한 독립’ 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규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식적으로 세계민족

들의 독립을 전제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항이었다.

개인의 권리와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는 신탁통치나 비자치지역 등의 용어와 인민, 자기결정권 같은 단어는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이 남북한이라는 이름으로 갈려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남의 이야기도 아닐 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과 희생을 강요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개인 권리의 인정과 옹호, 그리고 ‘보편적’ 민족자결권의 인정과 옹호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의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유하기

일상생활에서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나 실질적 차별의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해보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해 보세요.

< 예시 >

평등은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평등해야 의미가 있다. 즉, 평등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권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100M 달리기 ○○초 이내 합격' 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도망가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는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달리기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100M 달리기 15초 이내 합격'이라고 그 기준을 절대적인 수치로만 정한다면, 일반 건장한 남성보다 빨리 뛰기 어려운 여성과 장애인은 대부분 불합격한다.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합격선으로 정해놓고 누구나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합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고, 실질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이처럼, 평등은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평등해야 의미가 있다. 즉, 평등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권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문제 풀기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사람은 천부적으로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_____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에서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정의 ② 평등 ③ 평화 ④ 형제애 ⑤ 존엄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사람은 천부적으로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은?

- ① 전쟁 방지 ② 세계 평화
③ 사람의 존엄과 평등 ④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은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2조 중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것은?

- ① 모든 차별 금지
- ② 식민지의 독립
- ③ 신탁통치 금지
- ④ 자기결정권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중 주권에 대한 제약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이다.



정리하기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 사람의 존엄·평등·자유·형제자매애

- 「세계인권선언」이 전문과 제1조에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이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 제정된 여타 많은 국제인권법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대목임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라는 문구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이상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류의 지향을 보다 명확히 함
- ‘형제애’는 곧 ‘형제자매애’를 모두 포함하는, ‘인류의 협동’을 강조한 것인데, 서로 존중하고(respect),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며(tolerance), 서로 협력해야(cooperation)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함.

2. 「세계인권선언」 제2조 : 모든 차별 금지

- 「UN헌장」 이후 작성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말을 네 번, ‘구분(distinction)’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했는데, 이는 사람의 평등과 차별의 금지가 인권의 기본 전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
- 평등권 사상이 차이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며,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즉 고루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남과 다른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차별’은 금지하고 있음
- ‘보편적’ 개인 권리의 인정과 옹호, 그리고 ‘보편적’ 민족자결권의 인정과 옹호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의 원칙임

제6강



제3조~제5조 : 사람의 가장 기본적 권리, 생명·자유·안전

1. 제3조 : 생명을 가질 권리
2. 제4조 :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
3. 제5조 :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제6강

제3조~제5조 :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생명·자유·안전

6강

제 3 조 ~ 제 5 조
세 계 인 권 선 언

한국 역사상 가장 먼저 노비제도를 폐지한 왕은 조선의 제23대 왕 ‘순조(재위 1800~1834)’이다. 순조는 “ ‘남자종(奴),’ ‘여자종(婢)’이라는 구분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라고 하며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노비들을 해방하고 노비문서를 소각했다. 사람을 신분으로 천하게 여기지 않으며, 동등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인권친화적인 사상을 확인 가능하다. 물론 단순히 인권을 위해 노비제도를 폐지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조선 후기는 양반 수가 증가하고, 세금을 내야할 양인의 수가 줄어들어 세수가 줄어들자 이를 노비의 신분을 없애 부족한 세금의 양을 메우려고 했던 사회·경제적 배경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선의 전체 인구의 30~40%가 노비였다는 점이다. 특히 노비제도가 발달한 남부지방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비가 생겨난 원인은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리, 부모 가운데 한명만 천민이어도 노비가 되는 원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노비가 절반”이라는 성현(成俔, 1439~1504)의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17세기의 호적을 봐도 1609년 울산은 47%가 노비였으며, 1606년의 단성(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은 무려 64%가 노비였다 한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가 아니라 ‘양반과 노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 같다.

노비가 증가하고 그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인신 구속 상태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노비 역시 증가했다. 추노(推奴)와 같은 일들이 왕왕 벌어졌다. 추노는 조선 시대에 주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려나가던 외거노비(外居奴婢)에게 그 주인이 몸값을 징수하던 일을 말하는데, 도망간 노비를 수색하여 잡아오는 일을 뜻한다. 노비와 같이 타인에게 강제로 예속되고, 강제로 노동하는 상태를 상상해본다면 그들의 도망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예속 받지 않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반과 노비’의 나라 조선을 이야기해 보면서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사람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을 가질 권리’이다.

○ 정답 : ○

○ 해설 :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도, 투표에 참여할 권리도,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도, 그 외에 다른 권리도 모두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제3조는 이런 ‘생존권’이 인권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2.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채택할 때 고문 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 정답 : ×

○ 해설 : 고문 방지 조항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UN총회에서 선언의 최종문을 채택하기 위해 각 조항별로 투표를 했을 때 제3조에서 제11조의 권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3. 한국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짧은 편에 속해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있다.

○ 정답 : ×

○ 해설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한 명당 노동시간이 2013년 1인당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5조를 살펴보며 생존할 권리와 자유로울 권리, 안전할 권리에 의미와 소중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제3조 생명을 가질 권리
- 제4조 타인에게 예측되지 않을 권리
- 제5조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일까?

‘생존권,’ 즉 ‘생명을 가질 권리’ 이다.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도, 투표에 참여할 권리도,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모두 성립할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은 한국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 탑승객 등 모두 3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였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는 인권의 기본 중의 기본, 「헌법」에서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는 ‘생존권’, 생명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에 살펴볼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5조는 이 ‘생존권’ 을 다루는 장이다. 생명(life)을 비롯하여 자유(liberty), 안전(security) 등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장 적었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장 짧았다. UN총회에서 선언의 최종문을 채택하기 위해 각 조항별로 투표를 했다. 이 때 제3조에서 제11조의 권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아주 세밀하게 작성되어 각 국가나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적다. 그만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더불어 이 부분은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될 당시 이미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었던 권리가기도 하다. 오늘날 전 세계의 헌법 조항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국가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바로 이 권리이다. 이 부분은 아래에 나오는 「헌법」 제12조의 내용과도 비슷하다.

헌법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11조의 내용들처럼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고문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다음에 나오는 관련 조항을 먼저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제3조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4조부터 제11조의 권리로 조금씩 확대되고, 구체화된 구조를 가진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3조부터 제5조, 생존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권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에서 제5조의 내용을 보면 매우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 가운데 제3조는 ‘생존권·생명을 가질 권리(right to life)’ 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상으로 더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이 있을까? 아마도 이것 이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제3조는 이런 ‘생존권’이 인권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앞부분에 생존권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권이 모든 권리 중에서도 가장 앞에 놓여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가질 권리를 논하기에 앞서, 사람의 생명, 그 시작과 끝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부터 생명인지, 아니면 아기가 탄생하는 시점이 생명의 시작인지, 심장이 완전 정지되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인지, 뇌사 상태는 살아 있는 것으로 봐야 할 지, 그리고 기계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살아 있는 것인지 등등 생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낙태나 안락사 등 윤리적인 물음을 야기한다. 1948년 당시에도 이 문제가 우려의 대상이 된다. 이 논의에 대한 확실한 답은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 제1장 제4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격, 권리,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부정하는 셈”이란 루소의 말을 통해 우리 사람은 ‘예속상태’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인권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사람 생명’의 정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 등을 기반으로 하여 그 논리를 펼치고,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은 제12조,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인용하여 논리를 확고히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조차 보편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생존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실한 내용은 ‘국가는 반드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생존권과 관련하여 낙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논란의 문제는 사형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생명 존중’과 ‘흉악범은 사형’이라는 두 입장으로 갈린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관한 인권론은 소극적 접근과 적극적 접근으로 나뉜다. 소극적 접근은 아주 심각하고 예외적인 경우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며 법정에서 정식 판결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감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임신부와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노약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접근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형이 생명권을 위반하므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인권선언」을 계승한 국제인권법의 전통은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 쪽

에 가깝다. 1989년에 나온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목적)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전문에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언급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생명권 향유에 앞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고 서술한다.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실상의 폐지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상태가 아닌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적극적 접근'의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형제도, 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 주실 것" 을 공개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목적)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도 2005년부터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헌법재판소나 정부에 거듭 표명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5조에 나오는 생존권과 자유권에는 라틴어 '도미니움 레룸(Dominium Rerum)' 이라는 개념이 깔려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라고 번역되지만, 단순히 재산에 대한 권리만 뜻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자신의 '몸,' '행위,' '사물' 세 가지에 관한 소유권을 뜻하는 것이다. 몸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권, 행위에 대한 소유권은 자유권, 사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산권으로 해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3조에서 말하는 생존권(right to life)과 자유권(right to liberty)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의 행위를 본인 마음대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회구조가 사람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인의 자유의지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014년 1월에 크게 화제가 된 ‘염전 노예 사건’은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약 5년간 혹사당하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한 사건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장애인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겨 수년간 폭행하며 노예처럼 부린 상황을 가해자인 염전 주인은 물론, 그 동네의 주민, 그리고 지역의 경찰까지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장애인의 인권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한탄 섞인 물음이 생겨나는 사건이다.

같은 해 8월에 염전 주인을 비롯하여 일자리를 알선해준 브로커 등 사건의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월에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UN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낸 1차 국가 보고서를 심사했다.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고 일을 시킨 염전 노예 사건은 UN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서 인권을 유린당했다. 또한 장기간 강제 노역하며 착취를 당한 점, 편지를 써 구출을 요청한 점 등은 영화 ‘노예 12년(12 Years a Slave)’에서 주인공이 겪은 내용과 흡사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에 발생한 사건과 흡사한 일이 21세기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1840년대 미국에서는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흑인 납치 사건이 만연했다. 미국 내 노예 제도가 폐지된 주(州)의 흑인을 납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주(州)로 팔아넘기는 반인권적인 일들이 횡행했다. ‘노예 12년’은 이 시기, 정확히 1841년에 워싱턴 D.C.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린 솔로몬 노섭이 1853년에 쓴 동명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이다. 본인이 12년간 노예로서 살아 온 삶에 대해 기록한 실화이다. 한 가정의 아버지 혹은 남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타인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예속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인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어떠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노예 12년’은 미국의 노예제도를 다룬 영화이지만, 사람이 타인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물건 취급한 상황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성의 잔혹한 측면에 대해서 빠져런 반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도 ‘염전노예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엽전노예사건’은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서 말하는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slavery or servitude)’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예 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노예(slavery)’는 넓은 의미의 노예상태나 예속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제도화’된 노예를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노예제도는 존재했다. 근대로 이행하는 16세기부터 약 400년간 지속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거대한 규모와 반인륜적 행위로 인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권침해의 한 형태로 기록했다.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라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때 노예제도 금지 관련 국제법이나 선언이 나왔다. 나치의 구금, 폭력, 강제 노동에서 이어지는 집단학살을 당하거나 목격한 전 세계의 국가는 노예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친인척들의 희생을 직접 경험한 르네 카생(Rene Samuel Cassin, 1887~1976)과 같은 초안 작성자는,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비롯한 외국 노동자들을 독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 “저강도의 노예제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노예제”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흔히 ‘노예’하면 저 먼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곳에서 흑인 또는 원주민들이 당했던 가혹 행위나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 사회에 있던 노비들을 떠올린다. 즉 우리의 일상이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극단적인 예속상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예제도는 극단적인 형태부터 비교적 ‘온건한’ 형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카생이 말한 ‘저강도’도 ‘온건한’ 형태의 노예제도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서는 노예상태뿐만 아니라 ‘예속상태(servitude)’란 말도 추가했다. 노예제도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저강도’ 노예도 노예제도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제4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형태의(in all their forms)’란 말이다. 노예제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예제도를 판단하는 일은 자유권을 상실한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그런데 제4조를 처음 작성할 때는 비자발적으로 예속되거나 노예가 된 경우에만 노예제도에 범주에 넣자는 의견이 나와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은 ‘비자발적(involuntary)’ 이란 표현을 넣으면 자발적으로 예측되거나 노예가 되길 선택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궤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우려대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나 성매매 종사자 일부가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여성이 노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을 착취당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빈번히 발생했다. 나치가 독일군 성노예제도를 운영한 것처럼 일본군 또한 성노예제도를 실시했다. 한국 여성 역시 큰 피해를 받았고, 아직도 사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9년에 UN에서는 나치와 일본군의 성노예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을 체결했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현 협약의 체결국은 타인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래 적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합의한다.

1.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행위를 착취하는 자.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rticle 1

Th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gree to punish any person who, to gratify the passions of another:

1. Procures, entices or leads away, for purposes of prostitution, another person, even with the consent of that person;
2. Exploits the prostitution of another person, even with the consent of that person.

이 협약에서는 제1조를 통해 ‘합의를 했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와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예속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한국은 ‘자발적인 선택,’ 즉 선택권을 거론하며 ‘자발적’ 예속상태를 정당화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발적’ 예속상태를 선택했을 때, 밑바탕에는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원천 박탈, 상업주의와 배금사상에 물든 가치관, 빈곤의 대물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적인 권리로 표현하는 잘못된 인식 등이 깔려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히 노예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다른 사람이 법적이나 육체적, 금전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상태,’ 즉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특히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노동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정식 직업인지 반강제적 착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조건들도 많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한 명당 노동시간이 2013년 1인당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 국가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1980 ~ 2007년까지 27년간 1위에 자리에 있다가 2008년에 멕시코에 넘겨줬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고 독일은 최저 1388시간을, 노르웨이는 1408시간, 러시아도 1980시간 일할 뿐이다. 미국은 1788시간, 일본도 1735시간이다. 또 OECD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보다 2013년에 3시간이 줄었다. 한 국가의 높은 생산성이 노동시간에 달려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감소가 세계적 추세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그 추세에 역행한다. 비록 본인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가진다면, 당연히 행복을 추구할 시간이 없어짐은 물론 휴식·여가·교육·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등을 침해받는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더 좋은 직장만을 원하고, 경쟁 교육에 떠밀려 지나치게 긴 학습노동을 하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문제이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의 한국이란 불명예는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질에 의해 사람이 타인을 얼마나 교묘하게 예속하는지와 이런 상황의 빈곤과 교육의 기회 결여, 산업화 등과 연결되어 어떤 인권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주목해야 한다.

3 제5조 :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고문이다. 고문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나 국가권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서 말하는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공권력, 국가권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가리킨다.

선언 제5조에서는 고문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고문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1984년에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고문의 정의가 나온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2.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egislation which does or may contain provisions of wider application.

고문이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하에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서 말하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은 유사 고문 행위를 뜻하는데,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굴욕, 두려움 등을 초래하는 행위이지만 고문의 정의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서양에서는 중세까지만 해도 고문을 당연하게 여겼다. 특히 종교재판에서 ‘이단자’와 무신론자를 고문하고 화형하는 일이 흔했다. 흔히 얘기하는 ‘마녀사냥’도 그 예이다. 범죄자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는 이런 형벌 체계를 바꾸고 고문과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타파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1764)』를 통해 고문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베카리아의 사형과 고문 등의 폐지를 위한 운동 이후 고문은 서서히 근절됐다.

20세기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고문은 본격적으로 부활했고, 나치의 등장으로 고문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며 다시 15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이런 경험을 반성하며 작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문 관련 문제는 공개적으로 많이 거론되지 않으면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1961년 창설된 국제엠네

스티가 펼친 캠페인을 시작으로, 반인권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고문이 밝혀진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위해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국제엠네스티가 제정한 '고문 방지를 위한 12단계 조치'를 보면, 고문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비밀 구속을 금지하며, 고문 하에 이뤄진 자백의 무효화, 고문 혐의자 처벌 등 각 단계에서 고문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고문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국경을 초월한 가치이며 규범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칠레의 전직 대통령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1915~2006)의 구속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칠레의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피노체트는 1973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반대파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공식적인 기록만 1973년부터 1990년 사이에 3,197명을 살해할 정도로 끔직한 독재를 펼쳤다.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신 상원의원으로 있다가, 1998년 런던에서 체포됐다. 스페인 사법 당국이 과거 칠레에서 고문을 당한 자국민의 사건을 조사하다 '보편적 관할권'에 의거하여 그를 스페인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직 군가원수가 고문 혐의로 외국에서 체포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피노체트 사건'은 인권이 국경을 초월하는 사상임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 누구도 고문과 같은 인권 침해 범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 역시 고문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노태우 군정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고문, 구금,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 등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행위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서울시 용산구 남영역 근처 자리 잡은 '남영동 인권기념관'은 원래 역설적이게도 대학생 박종철이 1987년 1월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물고문 끝에 숨을 거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1986년, 국회에서 개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두환 군정의 독재와 탄압은 한층 강화됐으며,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야기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7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연대의 꾸준한 노력으로 폐쇄됐고, 현재의 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했다. 인권을 유린하던 고문기관이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친인권기관으로 태어났다. 대공분실 건물은 국민의 인권교육의 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 내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남영동의 예처럼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공유하기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적어 보세요.

< 예시 >

그룹과 기업 사이에 계약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기획사·연예인(지망생)·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연예 산업계의 잘못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노예 계약' 청산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예인들의 계약 문제와 비슷한 문제는 출판 업계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작가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매절계약으로 훨씬 적은 보상을 받은 사례이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업계의 4대 불공정 약관조항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 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목사의 자동갱신으로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출판계의 '을', 작가들을 보호했다.

'노예 계약' 상태인 연예계의 문제도 지금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예계의 '을'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저작권은 물론, 불공평한 수입 분배 구조 등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문제 풀기

1.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5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명(life)을 비롯하여 자유(liberty), 안전(security) 등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다.
- ②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장 적었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장 짧았다.
- ③ UN총회에서 선언의 최종문을 채택하기 위해 각 조항별로 투표를 했을 때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
- ④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 노예제도 금지 관련 국제법이나 선언이 나와 있지 않았다.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는 이미 노예제도 금지 관련 국제법이나 선언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나치의 구금과 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에서 이어지는 집단학살을 당하거나 목격한 전 세계의 국가는 노예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

2.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3조는 '생존권·생명을 가질 권리(right to life)'을 직접 언급한 대목이다.
- ② 낙태나 안락사 등 윤리적인 물음에 해답을 제시한다.
- ③ 전 세계적으로 사형에 관한 인권론은 소극적 접근과 적극적 접근으로 나뉜다.
- ④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적극적 접근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서든 사형이란 것은 생명권에 위반하므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 정답 : ②

○ 해설 : 인권도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람 생명'의 정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뿐이다. 예를 들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 등을 기반으로 하여 그 논리를 펼치고,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은 제12조,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인용하여 논리를 확고히 한다.

3.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4조를 처음 작성할 때는 비자발적으로 예속되거나 노예가 된 경우에만 노예제도에 범주에 넣자는 의견이 나와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 ② '비자발적(involuntary)' 이란 표현을 넣으면 자발적으로 예속되거나 노예가 되길 선택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궤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③ 여성이 노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을 착취당한 대표적인 사례는 나치의 독일군 성노예제도와 일본군 성노예제도이다.
- ④ '자발적인 선택' 즉 선택권을 인정하여 '자발적' 예속상태를 정당화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사람들이 '자발적' 예속상태를 선택하는 경우,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원천 박탈, 상업주의와 배금사상에 물든 가치관, 빈곤의 대물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적인 권리로 표현하는 잘못된 인식 등이 깔려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예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타인에게 법적이거나 육체적, 금전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모든 것을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 즉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 받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정리하기

1. 제3조 : 생명을 가질 권리

- 「세계인권선언」제3조는 생명(life)을 비롯하여 자유(liberty), 안전(security) 등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생존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형제도이며 사형에 관한 인권에 대한 접근은 소극적 접근과 적극적 접근으로 구분함
- 소극적 접근에서는 아주 심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으며, 법정에서 정식 판결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감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적극적 접근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서든 사형이란 것은 생명권에 위반하므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함

2. 제4조 :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는 이미 노예제도 금지 관련 국제법이나 선언이 나와 있었지만, 나치의 구금과 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에서 이어지는 집단학살을 당하거나 목격한 전 세계의 국가는 노예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음
- 노예제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카생이 말하는 ‘저강도’ 노예도 노예제도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태임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보통 ‘자발적’ 예속상태를 선택하는 경우,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원천 박탈, 상업주의와 배금사상에 물든 가치관, 빈곤의 대물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적인 권리로 표현하는 잘못된 인식 등이 깔려있음을 기억해야 함
- 단순히 노예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타인에게 법적이거나 육체적, 금전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모든 것을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

3. 제5조 :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칠레 대통령 '피노체트 사건' 은 인권이 국경을 초월하는 사상임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 누구도 고문과 같은 인권 침해 범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임

제7강



제7조~제11조 : 사법적 권리

1. 제7조 :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2. 제8조 :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3. 제9조 : 자의적으로 체포·구금되지 않을 권리
4. 제10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제11조 :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제7강

제7조~제11조 : 사법적 권리

아라비아 문학의 결정판이라 불리며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 등으로 널리 알려진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아는가? 뭐든지 다 이뤄줄 수 있는 신비한 마력과, 램프의 주인보다도 몇 배는 더 큰 힘과 덩치를 가지고도 램프에 갇혀 지낸다. 만약 알라딘이 “지니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라 빌지 않았다면, 지니는 그렇게 영영 램프에 갇혀 지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정당한 법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가두거나 추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통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법 앞의 평등”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

7강

제 7 조 ~ 제 11 조
사법적 권리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은 지배층이나 특권층을 제외한 사람들의 평등권을 더욱 강조한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지배층이나 특권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동시에 강조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람의 사법적 권리를 강조한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이르는 조항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자의적으로 체포·구금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의 사법적 권리를 언급한다.

■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 제7조-제1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이 언급하는 “사법적 권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제7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 제8조: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 제9조: 자의적으로 체포·구금되지 않을 권리
- 제1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11조: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1 제7조 :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7강
 제 7 조 ~ 제 11 조
 사법적 권리

제7조는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를 이야기한다. 「세계인권선언」 전체를 통틀어 ‘차별’ 이라는 단어는 네 번 등장 한다. 이 가운데 제7조에서만 무려 세 번이나 등장한다. 모두 차별을 경계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군주나 특권층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공동체를 다스리는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 없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완전한 평등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에, 특히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차선책으로 형식적·절차적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그런 경향의 선두에 서 있는 개념이 바로 ‘법 앞의 평등’ 이다.

성별 · 연령 · 빈부 · 장애 여부 · 피부색 · 교육 · 종교 · 언어 등 여러 방면에서 각 사회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진다. 이때 ‘평등’은 구성원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이다. 평등의 목표는 구성원의 차이점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고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데 있다.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개개인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또한 차이점에 맞추어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것은 불평등이다. 어른과 어린이에게 똑같은 식사량을 제공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차이점을 무시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면,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

평등원칙에 따르면,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모두 금지해야 한다. 직접 차별(direct discrimination)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함이 마땅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유로 서로 다르게 대우해 불리하게 하는 일이다. 피부색, 종교, 언어 등의 차이를 근거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차별을 말한다.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해당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즉 배경이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대우하여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간접차별 조항을 첫 적용한 사례를 보자. 2010년 모 기업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응시자의 지원 자격 중 공인영어 성적 기준을 요구했다. 이때 듣기 평가의 비중이 시험의 40~50%를 차지하는 공인영어 시험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이 독해 부분의 점수의 만점을 맞는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점수를 합격선으로 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채용 분야의 핵심 업무에서 영어 의사소통은 부가적인 업무로서 장애가 입사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인영어 성적 합격 점수를 비장애인과 같은 점수로 정한 것은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청각장애인에게 다른 시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간접차별을 인정했다.

여기서 제7조의 조항 가운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는 심각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경우이라도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현재 한국이 낯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여론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점차 번져나가고 있다. 멀리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지역에서도 종교나 인종, 국적을 놓고 차별을 넘어서 무차별하게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극단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런 집단에게는 「세계인권선언」 제7조를 인용하여 차별을 선동한 것에 걸맞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평등은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까지 평등해야 한다. 평등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권의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무라는 군 입대 문제부터 비리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문제로부터 ‘국가는 누구를 위

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소외계층들의 울부짖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여전히 많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현실이 모두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2 제8조 :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는 두 가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한다. 먼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1차적 인권침해라면, 그것에 관한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을 2차적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8조는 이러한 2차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했다. 제8조는 인권 영역 전체를 아우른다. 국제법이나 헌법, 일반 법률 등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전쟁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나 제주4·3사건 또는 인혁당 사건 등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바로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가 되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또는 투옥 등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런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인권유린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심, 피해보상, 복권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수십 년씩 고통 받는 2

차적 인권침해가 비밀비재했다.

이처럼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사례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심지어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도 알고 보면 2차적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비리 또는 부당행위를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 사건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개인 정보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지 못하고 가해자가 쉽게 알아내 복수나 협박을 한 것,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 도중 2차적 피해를 입는 일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의 침해 사례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수치심을 느끼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함께 대질심문을 받으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은 인권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여성이나 아동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관해서도 적절한 구제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력 행사 또는 폭력 사용에 대해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로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권력이 개인의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시간 주 경찰청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경찰관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운동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에 입각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제소하거나 국제기구나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전쟁 성노예 및 히로시마·나가사키 지역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처럼,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는 피해자의 편에서, 또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대단히 포괄적이고도 효과적인 권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제9조 : 자의적으로 체포·구금되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자의적(arbitrary)이라는 말에는 ‘제멋대로, 독단적인’ 이라는 뜻이 있다.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법도 규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타인을 잡아가두는 것이다. 즉, 국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권력’이다. 자유의 박탈은 오직 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의적 체포’ 는 두 가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했다는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잡아가두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죄나 위법의 혐의는 있는데,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재국가일수록 이러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먼저 체포와 구금을 당할 때 합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다. 또 체포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절차인 ‘미란다 원칙’ 이 종종 생략된다. 이런 ‘자의적 체포’일수록 가족이나 지인 등을 포함한 외부와 일절 연락이 끊기거나, 심지어는 본인이 체포·구금 되어 있음을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갇혀 있기 쉽다. 이런 상황일수록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며, 변호사 선임은커녕,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의적 체포·구금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가두시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몇 시간 정도만 체포·구금해도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대두되곤 한다. 무고한 시민을 다만 몇 시간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가두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인신 보호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여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의적 체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세계인권선언」 제10조는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모든 사회에서 인정되는 중요한 인권사안이자 법적 권리가 법정에서 실현되는 상징이다. 비록 당연하게 생각되는 권리이지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률을 넘어선 윤리적·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재판장소의 독립 원칙이 무너진 사례가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는 정치 조작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대학교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와 함께 민청학련 1천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53명을 구속·송치했다. 이 중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을 포함한 1백80여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75년 2월 이철, 김지하 등 민

청학련 관계자는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했지만, 결국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끝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00년 들어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활동으로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복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며,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말 그대로, 「세계인권선언」 제10조의 정신 따위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식의 영터리 재판과 사법살인들이 독재시절 내내 수도 없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예들이다.

“공정한 재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정의 절차적 규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의 절차적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법률가가 편향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을 강조하는 까닭은, 재판이 정치나 자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초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며, 해당 사건에 판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도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많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재판 전, 도중, 재판 후의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재판 전 절차로는,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체포의 이유를 제대로 알 권리,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을 권리,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 외부 단절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재판 도중의 권리로는,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받을 권리,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 자신을 변호할 권리, 증인을 심문할 권리,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부과하게 하는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를 하지 않을 권리,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받지 않을 권리(일사부재리) 등이 있다. 재판 후의 권리로는, 항고할 권리와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보상받을 권리 등이 있다.¹⁾

「세계인권선언」의 조문들을 읽어보면, 법률가들이 시민의 인권보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반대로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가’이다.

1) 〈인권을 찾아서〉 조효계 지음, 125쪽 전체 인용.

5 제11조 :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세계인권선언」 제11조는 두 가지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와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영어에서 무죄추정을 ‘presumption of innocence’라고 표현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innocent until proved guilty’라고 구어체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윌리엄 개로(William Garrow)의 표현을 인용한 말이다. 근대 법에서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무죄로 본다.’라는 원칙은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원칙은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과 「유럽인권협정」 등에 모두 나와 있는 권리이며, 근대 뿐 아니라 현대 형사사법절차에도 매우 중시되고 있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원고(국가) 측에게는 피고(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죄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라틴어 해석본을 보면 “입증의 의무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있지, 고발당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Ei

incumbit probatio qui dicit, non qui negat)” 라고 써져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은 왜 이 원칙을 언급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군주를 비롯한 권력자가 어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지목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아리카(Cesare Bonesana Marchese di Beccaria)가 1764년에 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고발 측(고발인과 경찰·검찰 측 포함)에게 범죄의 입증 의무를 부과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타났다. 이 사건이 형사법 사상 가장 획기적인 기록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

무죄추정 원칙은 16~18세기 고문을 반대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했다. 유럽의 공동법(jus commune) 전통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부터 여러 나라의 법 전통이 섞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온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죄추정 원칙은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원칙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인권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정·재계의 비리 혐의나 스캔들과 같은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과 대중은 보다 자극적인 쪽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여론을 몰고 가는 경향이 종종 있다.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깊게 생각하여 여론 몰이에 동조하지 않는 냉철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 점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판결 전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다. 피의자가 유리하도록 면죄부를 주거나 아예 쫓값도 치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버린 듯한 언론 공포를 통해 당사자의 신원과 개인 정보가 사회에 유포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 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또한 내더라도 이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 이미 넓게 퍼져버린 여론과 인식을 수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2항은 소급입법 문제를 이야기한다. 라틴 법언에, “법에 규

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법을 만들어 이전의 발생한 행위를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사후에 범죄성을 구성하는 일과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일 모두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위반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무게를 지닌 인권 원칙이다.

7강

제 7 조 ~ 제 11 조 사법적 권리



공유하기

미란다 원칙을 알고 계시나요? 미란다 원칙의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 참고 :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市)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 인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州)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州)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이유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는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한국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의무 여부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그 근본정신은 같다.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 풀기

1. 낯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여론과 온-오프라인 집단이 있다.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 제 몇 조에서 근거해 차별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 ① 제7조 ② 제8조 ③ 제9조 ④ 제10조

○ 정답 : ①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일본군 전쟁 성노예 및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 몇 조와 관련되는가?

- ① 제7조 ② 제8조 ③ 제9조 ④ 제10조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구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램프의 요정 '지니'는 램프에 갇혀 지내야 했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의 제 몇 조를 위반한 일인가?

- ① 제7조 ② 제8조 ③ 제9조 ④ 제10조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정리하기

1. 제7조 :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 모든 사람은 존엄하기에, 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는 행위는 온당치 못함
- 평등은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까지 평등해야 의미가 있음. 즉, 평등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권의 실현이 가능함.

2. 제8조 :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는 피해자의 편에서, 또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대단히 포괄적이고도 효과적인 권리임.

3. 제9조 :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되지 않을 권리

- 자유의 박탈은 오직 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의적 체포'가 있어서는 안 됨

4. 제10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은 첫째 피고인에게 공정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정의 절차적 규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뉘는데, 특히, 법정의 절차적 규칙이 제대로 지키며, 판사와 법률가가 편향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함.
-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을 강조하는 까닭은, 재판이 정치나 자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초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임.

5. 제11조 :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소급입법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원고(국가) 측에게는 피고(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전 무죄 추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무혐의 추정이 아님

- 무죄추정 원칙은 설령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99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적 사상이 담겨있음
-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위반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무게를 지닌 인권 원칙임

7강

제 7 조 ~ 제 11 조 사법적 권리

제8강

제12조~제17조 : 시민적 권리

1. 제12조, 제13조
: 사생활 보호와 이동·거주의 자유
2. 제14조, 제15조
: 망명의 권리와 국적을 가질 권리
3. 제16조, 제17조
: 결혼·가정의 권리와 재산 소유권

제8강

제12조~제17조 : 시민적 권리

코트디부아르의 축구선수 드록바가 ‘검은 예수’라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드록바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코트디부아르를 본선에 오른 뒤, TV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주일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멈춰주세요”

코트디부아르는 2002년부터 장기 이주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결과로 남부 기독교계와 북부 이슬람계간의 내전과 쿠데타 등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국적을 가질 권리’가 내전의 큰 원인이었다.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으로 아이들이 전쟁 속에 꿈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드록바는 수단과의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경기 직후 인터뷰를 요청하던 취재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쟁 종단을 호소했다. 드록바의 호소 이후 정부군과 반군들이 실제로 전쟁을 멈추었다. 이후 코트디부아르는 2007년 국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5년간의 내전을 종결했다.

8강

제12조 ~ 제17조 시민적 권리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오늘날, 국적은 인권과 거리가 먼 개념이다.

- 정답 : ×
- 해설 : 인권을 말할 때 국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람이 가지는 귀속성이다. 사람은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있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국적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하나는 국가의 현실적 영향력이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영토 중 국민국가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이다.

2. 전 세계 각국의 헌법은 재산권을 조건부로 규정한 것이 많으며, '절대적' 권리로 다루지 않는다.

○ 정답 : ○

○ 해설 : 재산권은 개인의 절대권이라기보다 국가가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제하는 제한적 권리이다. 바로 이 점이 절대권으로서의 인권과 조건부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경계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점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팽배해지고, 가장 고귀한 권리인 인권과 재산권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절대권'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 '사생활(privacy)'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된 영역'이라는 뜻을 가진다. 사적인 영역에 머무를 권리, 자신의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할 권리, 익명으로 남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에 관한 권리가 모두 프라이버시에 포함된다.

학습목표

- 사생활 보호, 이동권과 거주자의 자유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오늘날 국제질서 속에서 국적과 인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혼·가정의 권리와 재산 소유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제12조 사생활 보호와 제13조 이동 · 거주자의 자유
- 제14조 망명의 권리와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제16조 결혼·가정의 권리와 제17조 재산 소유권

1. 제12조 : 사생활 보호

「세계인권선언」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은 시민사회에서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다룬다. 18세기에 발전된 시민적 권리부터 19세기의 발전된 정치적 권리와 20세기에 발전된 사회적 권리를 각각 표현한다. 토머스 H. 마셜(Thomas H. Marshall, 1873 ~ 1982)이 그의 저서 『시티즌십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제시한 ‘시티즌십의 세 가지 차원’이 표현되어 있다.

‘시티즌십’을 보통 ‘시민권’이라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은 정확하지 않다. 시티즌십에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져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시티즌십은 마셜이 말한 시티즌십보다 더 큰 초국적 시티즌십을 말한다. 선언에서 나오는 이동과 거주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 취득의 자유는 한 국가 안에서만 통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런 견해는 「세계인권선언」의 작성 당시 보편적인 시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전향적이다. 모든 사람을 ‘남녀’로 표현하여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기록한 시각 같이 당시로서는 놀라운 시각이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제12조에서 가장 눈길을 이끄는 용어는 ‘사생활(privacy)’이다. 이 용어는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쓰인다. 그만큼 많이 중요해진 권리이다.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된 영역’이라는 뜻이다. 사적인 영역에 머무를 권리, 자신의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할 권리, 익명으로 남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에 관한 권리가 모두 프라이버시에 포함한다.

「헌법」 역시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다. 이 조항을 통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침해구제 사례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안내문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이다. 사건의 진정인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여 과태료 삼만 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그런데 부과처분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 ○○구청에서 진정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을 보낼 때, 진정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현관에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과 함께 공개적으로 부착했다. 3일간 부착된 안내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진정인은 그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고, 다수의 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 진정인과 이웃 간 면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생활의 노출은 물론이고 이웃들 앞에 자신의 잘못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사건 당시의 ○○○동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와 향후 이 사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제10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위의 사례처럼 꼭 남에게 숨겨야 할 일을 전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항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면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우리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고 하면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만 생각한다. 나아가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도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보 인권 분야가 복잡해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인권 문제는 역시 CCTV나 다양한 형태의 ID카드가 가지는 사생활 침해이다. CCTV나 일상적인 ID확인 절차 등은 일터나 대중 공간에서 개

인이 지녀야 할 사적 영역, 즉 ‘영역 관련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할 잠재적 요인이 많이 때문이다.

CCTV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도 있다. 2013년 5월에 일어난 ‘화장실 칸막이 부재’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건 진정인은 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가 2013년 5월 극도의 흥분 상태라 판단되어 CCTV가 설치된 진정실에 수용됐다. 진정실에 있는 화장실은 가림시설이 없어 진정인은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진정실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자해·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내부는 CCTV로 24시간 촬영 및 녹화되어 중앙통제실 근무자가 관찰한다. 다 큰 어른이 타인들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일은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잃게 되는 너무도 큰일이다. 이런 일을 진정인은 직접 겪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진정실 구조 및 CCTV 촬영 현황은 교정시설 6 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했다.

CCTV가 내부가 촬영하고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가림시설이 없는 상태를 안다면, 진정실의 CCTV 각도를 조절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용자의 신체 부분을 촬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 가림막을 지급하는 등 신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 또는 자해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질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그대로 촬영·녹화한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존엄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우리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CCTV와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한 순간에 전락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 해야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욱 복잡해지는 정보 인권 분야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으려면 국민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세계인권선언」제12조를 기억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2. 제13조 : 이동·거주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13 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세계인권선언」 제13조의 제1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다. 특이하게도 ‘자국 내에서(within the borders)’라는 제한이 있다. 국경을 초월한 개념을 다루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권리이다. 게다가 제13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느낌도 있다. 이주민이 점점 증가하는 오늘날 그 개념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느껴지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미등록이주민’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요즘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합법적으로 이주했다고 해도 시민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동의 자유를 누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경제적·사회적 자유가 없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외출을 하고 싶어도 나가서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의 제2항은 현실과 철학적 차원의 괴리가 존재하는 조항이다. 먼저 철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행성은 살아있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곳이다.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웠다. 세계주의적 윤리는 완전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떠날 권리(the right to leave)와 귀국(return to his country)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여행과 이민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한다. 비교적 단기의 여행이나 유학 등은 허용이 쉽지만 자유로운 이주를 완전히 허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적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비율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서로 여행 비자를 없애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6개국 나라를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영국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여행에 관한 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151개국으로 13위고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이다.

일정한 국가를 떠날 권리와 돌아올 권리는 이민이 활발해진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은 국제법 역사상 최초로 이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역사적 조항이다. 국제법 학자 가운데 누구도 사람의 이동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국제적 이동을 가로막는 국가의 행정조치, 여권 발급 관행, 비자 통제 등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권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는 출국비자제도까지 만들어서 국민의 외국 여행을 철저히 통제했다.

오늘날 국제질서에서 누구도 사람의 이동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급진적인 관점에 속한다. 그러나 국제적 이동 및 여행의 자유가 그 나라의 민주화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도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 외국 여행은 너무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였다. 여권을 얻기 위한 신원조회, 신원보증, 출국 전 의무교육부터 비행기에 타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국력과 민주화 정도에 따라 생긴 현실의 차등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14조, 제15조 : 망명의 권리와 국적을 가질 권리

1. 제14조 : 망명의 권리

「세계인권선언」의 제14조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조항이다. 강제 추방되어 고통 받은 유대인이나 국경선의 재조정으로 정착하지 못한 수백명의 난민들이 임시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들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치사상가이자 활동가인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10.14~1975.12.4)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나아가 나치 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유대인들의 후예들이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을 학살하고 다수의 난민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겪은 상황을 반영한 주장으로, 강제로 추방하여 자신을 보호해 줄 국가가 없는 사람에 대해 인류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선언 작성 당시 피난처를 찾을 권리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였다. 그런데, 제14조 제1항에는 바로 뒤 제2항에 나오는 조건이 숨겨져 있다. 망명의 권리가 중요한 권리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제14조의 제1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박해(persecution)’를 피해 비호를 구하거나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즉, 피난처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2항에는 비정치적 범죄(non-political crimes)에 적용하지 않는 권리, 즉 정치적 성격의 박해일 경우 다른 나라에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1951년 체결한 난민지위협정에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집단 소속, 사회적 활동의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 성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심도 점차 확대했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같은 성소수자를 박해한다는 일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이유의 망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의 네덜란드 망명이나 홉스의 프랑스 망명, 마르크스의 영국 망명 등 유명 인사들도 해외에서 피난처를 구하고는 했다.

제14조에 언급한 ‘비정치적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을 지칭한다. 하지만 정의가 불분명하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범’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미국 내 테러분자로 지명된 정치범 약 100여 명에게 망명처를 제공한 사례이다. 이 사건을 대한 미국은 바로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으며, 쿠바를 테러지원국 목록에도 올렸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역시 쿠바에서 반체제인사로 지목한 사람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다. 각 나라에서 ‘비정치범’인 형사범이 타국에서는 비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여 망명의 권리를 준 현상이다. 망명과 난민, 비정치적 범죄에 대한 해석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다.

위의 사례처럼 난민 지위의 획득과 망명할 권리의 행사는 당사자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난민 자격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난민 신청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UN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권고한다.

각 국가의 정부나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등은 난민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등의 시선을 줄이도록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대처해야 한다. 비국적자의 권리 역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난민과 망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며, 특히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2. 제15조 : 국적을 가질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이 인권의 중요한 일부임을 간파하고 만든 조항이다. 인권 역사상 최초로 국적을 인권의 중요 부분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근거해 광범위한 국제인권법 영역이 발전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권 이론과 실천에 공헌한 부분이다.

인권을 말할 때 국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람이 가지는 귀속성이다. 사람은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국적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모국에 대한 본인의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의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다른 한 가지는 국가의 현실적 영향력이다. 1800년 이전에도 근대적 의미의 국가는 전 세계에 10여 개에서 현재 약 200개의 국가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UN 가입국은 193개 국가이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영토 가운데 국민국가가 다스리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이다. 이런 뜻에서 국적의 유무는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람대우를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일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의 정식 국민이 된다. 국민이 되면 국가로부터 참정권을 받고 의무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권리가 생긴다. 국적 취득의 권리는 한 개인이 어떤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정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 침해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국적의 부여는 개인을 위하는 일만은 아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수

백만 명에 달하는 장기 이주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결과 오랫동안 내전과 쿠데타 등을 겪기도 했다.

3

제16조, 제17조 : 결혼·가정의 권리와 재산 소유권

1. 제16조 : 결혼·가정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는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성인이 된 남녀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와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그 결혼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이렇게 성립된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16조의 제3항은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이다. 당시 많은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관행과 법률의 표현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규정한 제1항과 제2항은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조항이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가 나온 이후 신생독립국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혼인의 평등 조항은 꼭 들어갔다.

제16조에서 '자유롭고'라는 말은 중요하다. 누구의 간섭이나 강압, 지시를 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결혼하는 일이 인권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때 간섭하는 주체는 부모나 친지, 결혼 상대방, 공권력 등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성인 간의 자유로운 결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전통과 관습을 이유로 결혼에서 평등·자유 조항이 서구의 문명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위한 표결 과정에서 기권했다. 이는 정치적 견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통 역시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오늘날에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판에 직면했다.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변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결혼 자체가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지속시키는 제도이며, 심한 경우 여성이 거의 노예에 가까운 종속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맥락이다.

다른 의견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적 결혼관이라는 비판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시민적 결합의 형태로 인정하는 추세가 증가한다. 시민적 결합이란 정식으로 법적 혼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것과 비슷한 권리, 예를 들어 상속과 보험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10개 정도이며, 미국 내에서는 7개 주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늘어날 것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정상적인 가족관계인 것처럼 여기는 것에 반대하는 비판도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가 가정 중심의 혈연관계를 우위에 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결혼제도를 통해서만 법적 혈연관계를 유지하고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차별적이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둔 비혼 부나 모는 이런 제도 하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 관해 비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동성에 차별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처럼, 대부분 종교는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신성하다고 보고, 사회적 결속의 토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한다. 결

혼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선언 제16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평등과 자유라는 인권 원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펼쳐진다. 동성혼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두고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2. 제17조 : 재산을 소유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세계인권선언」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항은 제17조 재산을 소유할 권리이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재산(property)’이며, 이 용어 사용에 논란이 있었다. 미국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라는 말을 넣자고 주장했다. 반면 소련은 사유재산에 근거한 경제체제는 정당한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다양한 경제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도 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더 좋은 환경을 꿈꾸며 ‘충분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라 명시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어 쉽게 만들 수 없었다. 결국 장기간의 회의 끝에 사유재산이라는 말 대신 최종적으로 재산이라고 표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in association with others)’라는 말을 넣어 사회주의적 집단 소유 형태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결국 제17조는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 즉 일반적인 선언의 의미만 가지는 조항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가진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권리는 인권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온 사상이다. 근대 초 신흥 부르주아는 절대국가에 반발하여 소유권, 즉 재산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를 바랐는데 17세기에 말에 들어오면서 이런 주장이

자연권 이론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한다. 소유권을 생명이나 자유와 동일하게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한 것이다. 마그나카르타에 재산권 개념이 등장한 이후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사람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제17조에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고 명시했다. 이어 1791년 「미국 수정 헌법」제5조는 ‘누구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미국 및 유럽권에서는 19세기 전 반까지 소유권은 확고한 보호를 받았는데, 19세기 후반부터 약 백 년간 인권 담론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시장경제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해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통해 보완돼야 할 권리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종속되는 2차적 권리로 바뀌었다. 그 후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재산권 규정을 아예 배제했다. 재산권의 적절한 정의와 합법적 한계, 그리고 국가가 사유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규약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국제인권법에는 개인의 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조건을 넣어 재산권을 인권으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인권협정 제1의정서」 제1조인데 여기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법으로 정한 조건 하에서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도 조건부로 재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1987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헌법」제 23조도 그렇다.

「헌법」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규정한다.

오늘날의 인권 담론에서 재산권은 개인의 절대권이라기보다, 국가가 재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통제하는 제한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절대권으로서의 인권과 조건부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경계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점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한다.

가장 고귀한 권리인 인권과 재산권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가 넘쳐나면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절대권'적인 권리로 인식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 먼저인 인권은 결코 사람의 소유물과 돈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유하기

정보화 기술이 발달 된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술해 보세요.

< 예시 >

기술을 가진 정보기관들이 감청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내·외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률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개별 이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암호화, 프록시 서버 등 기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방어해야 한다.

오늘날은 이미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국정원이 개인 인터넷 회선에 접속해 패킷 감청한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국민 혈세를 이용해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우편 등의 정보 보안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그런 기술을 가진 정보기관들이 감청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풀기

1.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된 영역’이라는 뜻을 가진다.
- ② 보편적인, 평범한 사항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면 이 역시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 ③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통신 관련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 ④ 정보 인권 분야의 가장 큰 인권 문제는 CCTV나 다양한 형태의 ID카드가 가지는 사생활 침해이다.

○ 정답 : ③

○ 해설 :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보 인권 분야가 복잡해지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인권 문제는 역시 CCTV나 다양한 형태의 ID카드가 가지는 사생활 침해이다. CCTV나 일상적인 ID확인 절차 등은 일터나 대중 공간에서 개인이 지녀야 할 사적 영역, ‘영역 관련 프라이버시(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할 잠재적 요인이 많이 때문이다.

2.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인권선언」 제13조의 1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다.
- ② 자국 내에서(within the borders)라는 제한이 붙어 있는 개념으로 국경을 초월한 개념을 다루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권리이다.
- ③ 이주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개념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욱 느껴지는 조항이다.
- ④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이다.

○ 정답 : ④

○ 해설 : 이 권리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미등록이주민’은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와 현실을 고려해보면 그 개념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권리이다.

3. 다음 중 ()안에 알맞은 말은?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망명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은/는 나치를 피해 망명하면서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① 찰스 말릭
- ② 체사레 베카리아
- ③ 존 험프리
- ④ 한나 아렌트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유대인이 강제 추방되고 고통 받고, 국경선의 재조정으로 졸지에 난민이 된 수백만 명이 정착하지 못하고, 임시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들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치사상가이자 활동가인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10.14~1975.12.4)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리하기

1. 제12조 사생활 보호와 제13조 이동·거주의 자유

- 제12조에서 말하는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된 영역’이라는 뜻을 가짐
- 보편적인, 평범한 사항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면 이 역시 프라이버시에 해당함
- 제13조 이동·거주의 자유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 이동거주의 자유가 국력에 의해, 민주화 정도에 의해 각국 별로 차등이 있는 현실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2. 제14조 망명의 권리와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제14조 망명의 권리와 관련하여 각국의 정부나 정부 간 기부, 비정부기구 등은 난민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의 시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비국적자의 권리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난민과 망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민주화임. 이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고, 특히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함
-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는, 인권 역사상 최초로 국적을 인권의 중요 부분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의거해 광범위한 국제인권법 영역이 발전함. 국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가지는 귀속성과 국가의 현실적 영향력임.
- 현실적으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적의 유무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람대우를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킴

3. 제16조 결혼·가정의 권리와 제17조 재산소유권

- 제16조는 결혼과 가정을 꾸릴 때 당사자 간의 완전한 평등을 규정함
- 오늘날의 인권 담론에서 재산권은 개인의 절대권이라기보다 이렇게 국가가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제하는 제한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음. 바로 이 점이 절대권으로서의 인권과 조건부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경계임
-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는 인권은 결코 사람의 소유물과 돈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개념임을 명심해야 함

제9강

제18조~제21조 : 정치적 권리

1.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2. 제19조 :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제20조 :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4. 제21조 : 국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주권·민주주의 원칙

제9강

제18조~제21조 : 정치적 권리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의 뉴욕 항구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횃불을 치켜든 거대한 여인상이다.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뉴욕의 ‘자유 여신상’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이역만리를 넘어 온 사람들의 눈앞에 우뚝 솟아 있는 위풍당당하고 단호한 여인의 모습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징표처럼 느껴질 것이다.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여신상은 자유의 나라, 이민의 나라 미국을 상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와 압제로부터의 해방 자체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된다. 미국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 강 입구의 리버티 섬(Liberty Island)에 서 있는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이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국가는 국민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에 대해 검열할 의무가 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 제18조~제21조의 ‘정치적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제19조 :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제20조 :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제21조 : 국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주권·민주주의 원칙〉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 제19조 :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 제20조 :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 제21조 : 국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주권·민주주의 원칙

1 제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설명한다. 사상의 자유는 ‘생각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는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뜻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는지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서로 종교나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 또 신앙이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큰 죄악이라 생각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억지로 개종시키거나, 이에 불복할 경우 그냥 죽이는 것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의지와 자유의 관계는 무계가 물체의 기본적 규정인 이치와 같다고 이야기 했다. 무계는 물체의 우연적인 성질이 아니라 무계 그 자체이듯, 자유로운 것이 의지이라는 것이다. 자유 없는 의지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던 헤겔의 통찰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조항이다. 안타깝게도 제18조에 나오는 사상·내면·믿음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사회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다. 인류의 역사에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정의 바탕 위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마련은 수천년의 시간이 걸렸다. UN이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면서 제18조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

9강
 제 18 조 ~ 제 21 조
 정 치 적 권 리

은 사회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음을 반증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수도 없이 줄을 잇는 사건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 2013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을 생각해보자. 고졸 출신의 한 세무변호사가 탁월한 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대기업의 고문변호사로 스카우트까지 받는 등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둔다. 그러나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 앞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곳에서 마주한 국밥집 아들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아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영화의 내용에서 부당한 고문과 강제진술의 강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모습이 가감 없이 그려진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바로 부산에서 일어난 학림사건, 일명 '부림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부림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1981년 9월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가 단순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고문을 가했다.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는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몰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구형했다. 역시 법원도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옥고를 치르던 이는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몇 번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끝에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입장에 서서 그 이념을 동조해서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는 사람의 기본적 존엄성이므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보가 필요할 때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까지 빼앗고 통제하면서 지켜야 할 국가 안보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이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 온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가치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종교의 자유를 생각해 보자. 세속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이에 대한 대중의 동정은 줄어들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종종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종교박해는 엄청난 인권침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시큰둥한 ‘나와는 상관없는’ 이슈로 생각하기 쉽다. 종교박해는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는 신앙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부터 강제 개종·학살까지 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시대 같이 종교로 인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신념이 강하거나, 종교를 위해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종교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종교 박해가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종교적 박해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박해의 주체가 국가 권력인 경우 경찰·검찰 권력, 군대에 의한 종교박해도 일어난다. 경찰이나 군에 의한 박해의 경우 국교라는 이유로 강제 개종 또는 종교의 문화를 강요하는 종교박해와 종교 탄압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그리스정교회 이외 개종 활동을 헌법에서 금지한다. 중국에서는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종교활동은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은 직접적 탄압의 대상이 되는 등 아직도 세계에는 ‘종교의 자유’가 절실한 곳이 많이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 선택·변경의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 종교적 사상 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를 이유로 하는 법적 차별대우도 당연히 부정한다.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자유권의 하나이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국제적 공동체에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모든 사람의 “거룩한 자유”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사람의 기본적 존엄성에 해당하므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캐서린 패터슨의 책 『빵과 장미』처럼, 사람에게게는 생존을 위한 권리(빵)뿐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장미)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의사 표현은 개성신장의 수단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사람의 존엄성 실현에 기여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 또는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표현의 자유 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대표적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사상과 양심에 의한 자유를 보장받았다면, 이것을 표현할 자유의 보장을 강조한다. 특히, 언론이나 출판을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고 표현할 자유조차 저지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기본권을 뺏는 크나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언론은 그 전파력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보인다. 그래서 소수 세력과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더욱 쉽다. 이때 표현의 자유 외에도 필요한 조항이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현대 민주국

가 내에서 정치·사회 질서의 증추 신경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제18조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뒤이어 나올 제20조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18조는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은 이처럼 긴밀하게 내재적으로, 그리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 사전 검열이나 폭압적 보도 통제가 탄압의 대표적 수단이다. 한국의 군부 독재 시절의 정부는 매일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 보냈다. 국민은 언론의 통제 속에서 편향된 언론 보도만을 접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 뿐 아니라 사건의 객관성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 사회지만 지금도 언론통제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마치 ‘자본가들의 놀이터’가 된 언론은 왜곡된 진실의 보도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종종 보도한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가질 권리는 반드시 박학다식하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 아기도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자기 고집과 의견을 표현한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런던의 부유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쾌활한 사람』, 『사색하는 사람』 등의 풍자시를 비롯한 가면극을 발표했다. 그러던 중, 그는 “이혼의 자유”에 대해 쓴 글을 출판·발표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검열에 걸려 출판할 수 없었다. 그는 1644년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라는 겨우 60여 쪽에 불과한 원고를 소책자로 출간했다. 이 책의 부제는 “검열 받지 않을 자유를 위하여”였다. 그는 책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정한 자유의 애호가, 진정한 자유의 설립자가 아닌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은 우리를 진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존재, 진리를 찾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 …… 그 어떤 자유보다도, 알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17세기부터 자유롭게 말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자유가 중요한 인권이라는 근대적인 생각은 밀턴이 『자유론』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688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 장전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발표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도 이 권

리를 조항에 넣어 발표했다. 「사람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사람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글을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11조).”

이런 표현의 자유를 ‘말할 자유(freedom of speech)’라고 하기도 했다. 뒤이어 출판에 적용하면서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printing)’로 불렸다. 19세기 후반부터 말할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합쳐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영국을 필두로 서구의 대다수 국가들을 이 언론의 자유를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했다. 사회주의 사상가인 마르크스도 언론 검열을 노예제에 비유했다. 언론 자유만큼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지지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 언론의 자유는 다시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로 불렸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라는 개념으로 뻗어나갔다. 민주사회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입수하고, 정부 또는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국민이 파악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해졌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만 중요하지 않다. 각종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제대로 된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3 제20조 :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규정했다. UN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는 저항권이 비폭력·평화적 저항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20조의 영어 원문에는 ‘association’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한다. 제 1항에서는 ‘결사(結社),’ 즉 어떤 모임을 결성하는 행위를, 제2항에서는 ‘결사체’, 즉 그러한 모임이나 단체 자체를 가리킨다. 제1항에서 언급되는 ‘평화적’이라는 말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직접 계승했다.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자유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정치적 의견을 주고받거나 누군가 또는 그의 의견을 지지할 수 없다. 모임을 조직하거나 어떤 목적을 지닌 단체나 기구를 만들 수 없다면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취미 정치 등의 모임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 국가가 중간 매개 조직을 제거하고 시민을 직접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는 사람의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없다.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되었던 냉전시대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동유럽권의 국가의 전체주의적 통제에 염증을 느끼던 사람은 국가의 서슬 퍼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갈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시민사회’라 상상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사의 자유,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목표였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특정한 목표를 위한 도구적 개념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념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적절한 표현 수단과 매체를 갖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게 절실한 표현 방법이다. 집회와 결사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표명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이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7년 6월 9일은 군사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한 국민평화대행진(6·10대회) 전날이었다.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집회와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학생은 7월 5일 뇌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바로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이다.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받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불과 20여 년 전의 한국 사회의 어두운 과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2항은 모임이나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이다. 중요한 점은 결사체의 성격이 자발적인 결사체일 때만 인권보호의 대상이다. 가입을 강요하거나 없는 사실을 꺾어 가입하게 한 모임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일본군 전쟁 성노예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들어보면 다수의 피해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강제로 끌려갔다. 다른 피해자는 일본의 “안락한 생활과 좋은 보수를 받게 해주겠다.” 또는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전쟁터에서 성노예의 생활을 했다. 최근에는 집을 나온 미성년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꺾어 가둬놓고 성매매 행위를 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는 노예 상태를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와 비자발적인 단체나 조직에 가입을 금지하는 제20조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다.

4 제21조 : 국정에 참여할 권리, 국민주권·민주주의 원칙

「세계인권선언」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인권학자들도 ‘혁명 속의 작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혁신적인 내용이다. 모든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정부의 권위를 형성한다는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원칙과 참정권을 인권으로서 천명했기 때문이다.

또, 제21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라는 직접적인 단어의 표현 없이 민주주의를 규정한 점이다. 제21조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에게 해당하는 집단적인 권리이다. 민주주의의 집합적 성격을 드러내는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를 언급한다. 즉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체제인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모두 언급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의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에서 공직을 맡을 동

등한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UN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동등한 공무담임권에는 세 가지 차원이 공존하는데, 첫째는 공적인 사안에 참여할 권리(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둘째로는 투표할 권리(voting rights), 셋째는 동등한 공무담임권(right of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라고 해설한다. 세 가지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제21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언급된 대의민주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조항은 ‘국민의 의사’를 강조한다. 선거 때만 국민과 정부가 연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정부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정한 선거’의 요건은 모두 여섯 가지이다. 먼저 정기적으로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며, 성년이 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보통선거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평등선거여야 하며, 비밀선거와 자유의사를 기초로 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앞서 배운 사법적·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나중에 배울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조항이다. 개인의 권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일반 권리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전체 인권을 중간에서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라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결국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임을 「세계인권선언」 제21조를 통해 알 수 있다.



공유하기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견을 써 보세요.

< 예시 >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언어와 인쇄물에 의한 의사표시의 자유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쟁점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에 관하여 해설과 비판을 제공해 여론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언론이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여론 조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참다운 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포함한다. 즉, 언론은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여과 없이 비판적으로 전달하여,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어 언론의 자유 보장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제 풀기

1. 「세계인권선언」 제18조가 강조하는 권리는?

- 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 ② 사법적인 권리
- ③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
- ④ 생존을 위한 권리

○ 정답 : ①

○ 해설 : 제18조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9조가 강조하고 있는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은?

- ① 집회·결사의 자유
- ② 언론과 출판의 자유
- ③ 신체의 자유
- ④ 투표의 자유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3.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정부의 권위를 형성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 ① 무죄 추정의 원칙
-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
- ③ 미란다 원칙
- ④ 국민주권의 원칙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정부의 권위를 형성한다는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원칙과 참정권을 인권으로서 천명했다.



정리하기

1.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사상의 자유는 '생각의 자유'를 뜻하며,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를 뜻하고, 종교의 자유는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의미함
- 과거 한국 사회에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됐던 사건들이 빈번했는데, 제18조는 이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 온 한국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
-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 '종교의 선택과 변경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종교적 사상 발표의 자유', '예배집회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종교를 이유로 하는 법적 차별 대우는 부정함
- 국제적 공동체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모든 사람의 "거룩한 자유"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제19조 :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임
- 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 검열이나 폭압적 보도 통제로 탄압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3. 제20조 :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유임.
- 결사체의 성격이 자발적인 결사체일 때만 인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강제로 가입하게 하거나 없는 사실을 꾀어 가입하게 한 모임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 ·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임

4. 제21조 : 참정권, 공무담임권

- 제21조는 ‘민주’라는 직접적인 단어의 표현 없이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21조 제1항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공존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제3항에서는 ‘진정한 선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선거를 시행하고,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성년이 된 누구나 허용받는 보통선거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평등선거여야 하며, 비밀선거와 자유의사를 기초로 한 선택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함

제10강



제22조, 제23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노동할 권리

1. 제22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 제23조 : 노동할 권리

제10강

제22조, 제23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노동할 권리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기던 '효종갱'이다. 배추속대·콩나물·송이·표고·쇠갈비·해삼·전복에 토장을 풀어 온종일 푹 끓인 해장국이다. '효종'이란 성문을 연다는 새벽을 의미하고 '갱'은 말 그대로 국을 의미하니 '새벽에 먹는 국'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효종갱은 경기도 광주에서 밤새 끓이다가 새벽녘에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파루(罷漏)의 종이 울려 퍼지면 남한산성에서 사대문 안의 대갓집으로 배달되던 최초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다. 효종갱은 양반들이 따뜻하게 몸보신할 수 있도록 몸에 좋은 귀한 재료들을 넣어 하루 종일 푹 고아낸 후 새벽부터 사대문안 양반택 밥상까지 보내져야 했다. 이것을 만드는 노동자의 공과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특히 배달노동자가 아주 고되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지역부터 서울까지 24km 거리를 항아리를 이거나 지거나 해서 4시간 이내에 배달해야 했다고 한다. 닫혀있던 성문이 열리는 즉시 국이 식기 전에 배달해야 했다. 어두운 밤과 새벽에 걸쳐 먼 길을 걸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사대문 안 양반들이 몸에 좋은 영양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들의 고된 노동이 숨겨져 있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오늘날 '빨리, 빨리'를 외치는 손님들의 주문에 맞추어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택배노동자의 삶과 별다를 바가 없는 조선시대 배달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제22조에서 제27조는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로, 채택 당시 자본주의 진영에서 반대가 있었다.

○ 정답 : ○

○ 해설 : 이 조항들은 국가가 그 국민들을 위해 노동할 권리, 휴식과 여과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 경제적·사회적 권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당이 집권했던 영국이나 1946년에 사회주의·공산주의·중도파들이 제4공화국을 세웠던 프랑스는 이 권리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나오는 노동 관련 규정의 상당수는 선언이 채택되기 이전에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나오는 노동 관련 규정의 상당수는 이 선언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사회입법 형태로 보장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19년에 창설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설립될 때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 제22조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권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제2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제23조 노동할 권리

1 제22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조부터 제20조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규정하는 항목이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의 조항이다. 제22조부터는 그와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서 인권을 지킬 수 있게 할지를 다루는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 제27조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조항이다. 복지권과 복지정책에 관련된 권리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노동할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당시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 권리를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자체를 반대한 일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 일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당이 집권했던 영국이나 1946년에 사회주의·공산주의·중도파들이 제4공화국을 세웠던 프랑스는 권리에 대해 우호적이다.

여러 나라는 복지 총론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문제였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시장의 활성화를 망치는 내용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다.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역할이 없으면 교육이나 복지, 건강 관련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런 논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조항을 옹호한 사람은 칠레 대표단을 이끈 에르난 산타 크루즈(Hernán Santa Cruz, 1906~1999)다. 그는 남아메리카 노동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법률가였다.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별지원책과 가난한 나라의 처지를 잘 대변했다. 그의 노력으로 의식주, 사회보장, 의료, 적절한 생활수준, 노동, 휴식, 교육, 문화 등이 「세계인권선언」에서 다루는 인권 목록에 포함될 수 있었다.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이 18세기형 자연권의 영향 아래 있는 인권선언, 즉 계몽주의 시대의 인권선언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인권헌장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의 대립 끝에 완성된 권리는 제22조와 제23조이다. 제22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이어지는 제23조에서는 노동할 권리를 다룬다.

그럼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22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자유·안전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부터 제11조의 내용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제22조도 제3조와 마찬가지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을 이끄는 조항이다. 선언 작성 당시만 해도 상당히 낮설게 여겨지던 경제적·사회적 권리 부분을 국제적으로 선포했던 조항이었다.

이 규정은 당시 전 세계 각국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권리였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권리를 소개했다는 의미이다. 제22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용어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다. 제22조는 제27조까지의 모두 조항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언급한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라는 말과 함께 20세기 중엽 복지국가의 정책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최초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언급한 인물인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는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Beveridge report)』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논했다. 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만들어진 문서이다. 영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1941년에 이른바 ‘베버리지 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책을 건의하는 일을 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 바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쓴 보고서의 내용은 비록 단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모았지만, 영국의 복지정책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각 국가에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정책의 기반에도 영향을 주었다.

베버리지는 먼저 사회를 재건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거악(Giant Evils)’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결핍(Want)·질병(Disease)·무지(Ignorance)·불결한 환경(Squalor)·나태(Idleness)를 지적했다. 이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가 말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대폭 확장한 개념이었다. 다섯 가지 거악과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서 복지국가가 필요지만 모두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서 제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베버리지는 “결핍과 싸우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하고,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무지와 싸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불결한 환경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태와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직장을 잃었을 때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응법을 말했다. 『베버리지 보고』 내용의 특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을 근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베버리지의 기본 사업계획 내용은 통일된 포괄적 사회보장 계획, 원호대상자에 대한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무료봉사와 자녀의 양육비 보조를 위한 가족수당 지급,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의 확보를 포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나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까지 사회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실천적 복지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그때까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사회보장 제도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파급되어 오늘날 사회보장의 이념이 됐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이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주장했다. 최근에는 ‘국가적 노력’이 한 국가의 정부만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보완하는 노력을 지칭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형 생산유통 방식을 토대로 하는 경제

적·사회적 권리 역시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 조항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를 도울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가난한 나라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제적 협력'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확대하면 국가 간에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내에서도 일정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듯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제22조에 나오는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라는 구절은 문안을 만들 당시부터 계속 문제였다. 이 말은 각 나라가 조직된 방식과 각 나라가 보유한 자원의 형편에 맞추어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집트나 인도 같은 나라는 자국의 형편이 어려운데 경제적 권리를 무한정 보장해줄 수 있느냐며 작성 당시부터 염려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불확정성 비판이다. 다른 하나는 자원이 부족해 이 권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가용성 비판이다. 이 비판에 대해 가장 잘 대응한 사람은 샌드라 프레드먼(Sandra Fredman)의 이론이다.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마치 어떤 '규정'을 준수 또는 위반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규정 이라기보다 원칙의 문제이다. 원칙의 힘은 법적 강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과 자명한 구속력에서 나온다. 즉,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규정을 준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일관된 방향으로 추구하느냐 않느냐로 판별할 수 있다는 문제이다.

자원이 있느냐 하는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답은 국가가 충족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에 따르는 '구성 요건'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유효성과 참여성, 책무성, 평등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학자 샌드라 프레드먼의 『인권의 대전환: 인권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에 따르면, 그는 공화당이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줄였을 때는 자살과 살인사건 등 사회적 폭력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반대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시기에는 자살과 살인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봤을 때 제22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7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 무식하고 몽매한 태도를 많이 보인다. 2011년에 무상급식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한 주민투표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투표 정족수가 미달해 결국 단계적 급식을 주장했던 당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이 투표는 애초부터 인권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다소 무리가 따른 일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줄을 세워 일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제22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런 복지서비스의 제공에는 그냥 제공하는 것과 복지를 인권으로 보고 제공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A가 복지를 제공받았을 때, 그것이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받는 일과 자신의 권리로 청구해 받는 일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은 사람이 스스로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자력화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를 국가의 선심성 혜택으로 보는 것과 국민들 스스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제22조를 ‘새로운’ 권리라 여기는 것도 ‘권리에 기초한 복지 개념’을 국제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2 제23조 : 노동할 권리

‘노동,’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유 없이 얼굴을 찌푸려지거나, 시끄럽다, 경제가 망한다 등등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프랑스의 배우이자 감독 줄리 델피(Julie Delpy, 1969~)가 주연한 ‘영화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2 Days In Paris)’에는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한다.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이 엄마에게 ‘데모 때문에’ 차가 막히고 난리 났다는 짜증 섞인 대답을 한다. 그러자 엄마는 “불쌍한 간호사들이 파업도 못 하니? 여기는 미국이 아냐” 라고 대답한다. 파업하는 노동자에 대한 비난은 ‘미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그 대사 안에 담겨 있다.

영화의 짧은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나라 전체가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의 권리를 매우 존중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이라는 정규 교과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파업을 필수로 교육하는 나라이다. 시민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초등학교 과정부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있다. 일, 노동, 권리를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다룬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제

대로 된 노동환경을 가질 권리, 노동할 권리, 노동조합이다. 어릴 때부터 노동자의 참된 권리에 대해 배우고, '노동'에 대한 성숙한 사고를 가진 사회가 형성된 프랑스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으며 일 할 수 있다.

프랑스가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비난당한 미국 역시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의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처럼 편협하지 않다. 2008년 초 미국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Golden Globe Awards)의 사례를 보자. 1944년부터 영화 및 TV프로그램 관련하여 시상해 온 유서 깊은 시상식에 제65회를 맞이한 2008년 시상식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미국의 작가노조의 파업에 배우들이 동조하여 모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방송사 작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벌였는데 배우들이 그 파업에 동조하면서 한 명도 출연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장면이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프랑스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상식으로 통하는 노동과 노동조합 등을 한국처럼 혐오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등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정서가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아 본 적 없다. 노동운동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언론과 기업 등이 일방적으로 주입해온 사회이기 때문이다.

제23조에 나오는 노동 관련 규정의 상당수는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사회입법 형태로 보장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19년에 창설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주요활동은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일의 지원이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국제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안정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관해 연구한다. 또한 연구 결과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감을 발행하기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한다.

헌법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자주적인 단결권(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②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③ 단체행동권(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을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경우 노동할 권리 원칙, 동일 임금의 원칙, 정당한 보수 원칙, 결사의 자유 원칙을 규정한다. 이 중 노동할 권리와 동일 임금의 원칙은 당시 획기적인 내용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사람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이 조항은 다른 모든 조항처럼 주어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노동권의 성격상, 개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보다, 국가가 사회가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면 더 강력하게 의자가 천명되었을 것이라 보는 학자도 있다.

제23조에는 두 개의 큰 역사적 흐름 존재한다. 먼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혹은 노동할 권리, right to work)은 파시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집단 학살을 당했던 기억과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상징한다. 그러면서도 1948년 시점에서의 해석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해야 한다는 자유시장적 노동의 의미를 반영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강제 노동이 아닌 ‘자유의사로 노동을 선택할 권리’라는 뜻이다.

두 번째 흐름은 국가가 ‘생산적인 완전고용’ 및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노동할 권리는 고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와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 또한 제23조에서 ‘모든 사람(Everyone)’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에 호주에서는 한 정치인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잡종견(mongrel)’이라 비난한 뒤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문제성 발언에는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을 호주로 불러와 우리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이 주된 요지라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드러나는 인터뷰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권과 위배되는 맥락이기도 하다.

선언 제23조가 보장하는 ‘노동할 권리’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Jean Joseph Louis Blanc)이다. 그는 1840년 발표한 『노동의 조직(L'Organisation du travail)』이라는 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변덕과 임금 착

취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시장 경쟁체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최소한의 일자리를 확보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발생했을 때, 파리 시가 루이 블랑의 비전에 영감을 얻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사업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가 주장한 노동할 권리는 이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맥락으로 노동할 권리의 기원은 완전고용의 정신에 더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에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유연성 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이다.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도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는다. 간병인,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남아 있다.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노동자였던 한 20대 여성이 정규직을 볼모로 성희롱을 당했지만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19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비교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98호 협약, 공공 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 조건의 결정 절차에 관한 제151호 협약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이 현상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동 환경이 '수준이 낮고 노동 적대적인 상태'라고 비판한다. 다른 모든 조항도 그러하겠지만 노동할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 정신이 없을 경우, 그 어떤 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조항이다.

☞ 보충학습 : 루이 블랑과 『노동의 조직(L'Organisation du travail)』

루이 블랑(Jean Joseph Louis Blanc)은 1811년 10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1882년 12월 6일 프랑스 칸에서 사망한 사회주의자이다. 특히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사업장' 이론으로 유명하며 1837년에는 루이 필립 정권에 반대하는 선거개혁위원회에 가입했다. 1839년에는 일간지 『진보평론 Revue du Progrès』를 발간했다. 1839년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의 조직(L'Organisation du travail)』이 연재된 것도 이 일간지였다. 여기에 제시된 사회주의 원칙은 이후 블랑의 정치·사회 활동적 지표이다.

『노동의 조직』은 일간지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출간됐다. 1840년의 초판 이후 1841년의 제2판, 1845년의 제4판, 1847년의 제5판, 1850년의 제9판에서 가필·수정했다. 제2판에서 초판에 대한 다양한 반론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제4판에서 문예, 제9판에서 농업, 신용에 관한 부분을 새롭게 첨가했다.

루이 블랑은 노동자의 삶이 시장 경쟁체제에 내맡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가 안정된 최소한의 일자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국가의 힘과 노동자의 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아 '사회사업장'의 설치를 제안했다.

루이 블랑의 활동 배경은 1848년 혁명의 중심에 있던 프랑스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란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 '모든 사람'속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철저한 구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1848년 2월, 노동자들의 봉기로 루이 필립의 입헌군주제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쟁취했다. 이때 생겨난 임시정부의 각료 대다수는 부르주아지의 대표였고 노동자 대표는 단 두 명뿐이었다. 그 중 한 명이 루이 블랑이었죠. 이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루이 블랑이 주장한 사회사업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그의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심지어 6월에 폐쇄를 결정했다. 사회사업장 폐쇄 소식을 들은 노동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봉기에 나서 노동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총공격을 감행했고, 노동자 수천 명이 죽고 만여명 이상이 재판 없이 유형에 처해졌다.

1848년 6월의 노동자 폭동이 실패하자 루이 블랑은 영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이 붕괴된 1870년까지 프랑스로 돌아올 수 없었다. 망명기간 동안 루이 블랑은 강의와 강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다수의 저작들을 발표했다. 22년 동안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는 곧바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프랑스 노동자를 위해 일하기도 했다. 그는 1881년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도 근로일수의

축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루이 블랑의 『노동의 조직』은,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노동자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의 실현에는 노동권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시위를 통해, 피를 흘리며 증명했다. 오늘날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이란 인권으로 전환한 데에는 그에 앞장선 루이 블랑, 프랑스 시민,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쟁취해 낸 노동권이 있었다.



공유하기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조사해 보고, 문제점이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 예시 >

한국의 화물운수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병원 간병인 등은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보험은 반드시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마저도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탈퇴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법 규정상 사업자와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탈퇴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나 사업주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사용자 100% 부담과 적용 제외 법 규정이 삭제되기 원한다.

예를 들어, 간병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것은, 산재보험을 인정해 주면, 간병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줘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당 168시간(24시간*7일)의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간병 노동자들이 질병에 감염되거나 부상을 당하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치료를 돕는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퀵서비스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로 도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보장받지 못한다.



문제 풀기

1. 다음 설명에 가장 알맞은 인물은?

- 남아메리카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던 법률가
-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별지원책을 주창했고, 가난한 나라의 처지를 대변
- 의식주, 사회보장, 의료, 적절한 생활수준, 노동, 휴식, 교육, 문화 등이 「세계인권선언」에서 다루는 인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함

- ① 존 험프리 ② 루이 블랑 ③ 한나 아렌트 ④ 에르난 산타 크루즈

○ 정답 : ④

○ 해설 : 에르난 산타 쿠르즈는 남아메리카 노동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법률가로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별지원책을 주창했고, 가난한 나라의 처지를 대변했다. 의식주, 사회보장, 의료, 적절한 생활수준, 노동, 휴식, 교육, 문화 등이 「세계인권선언」에서 다루는 인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덕분에 「세계인권선언」이 18세기형 자연권의 영향 아래 있는 인권선언, 즉 계몽주의 시대의 인권선언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인권헌장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인권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조항이다.
- ② 복지권과 복지정책에 관련된 권리들로 제정 당시 자본주의 진형에서 반대했다.
- ③ 가장 강력하게 제22조를 옹호한 것은 칠레 대표단을 이끈 에르난 산타 크루즈(Hernán Santa Cruz, 1906~1999)였다.
- ④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라고 언급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정답 : ②

○ 해설 :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 경제적·사회적 권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당이 집권했던 영국이나 1946년에 사회주의·공산주의·중도파들이 제4공화국을 세웠던 프랑스는 이 권리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3. 다음 () 안에 알맞은 인물은?

()은/는 1811년 10월 29일에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이다. 1837년에는 루이-필리프 정권에 반대하는 선거개혁위원회에 가입했고, 1839년 일간지 『진보평론 Revue du Progrès』를 발간했다. 이후 1840년에 『노동의 조직(L'Organisation du travail)』을 출간하여 ‘사회사업장’의 설치를 제안했다.

- ① 존 험프리 ② 루이 블랑 ③ 한나 아렌트 ④ 에르난 산타 크루즈

- 정답 : ②
- 해설 : 루이 블랑은 1811년 10월 29일에 태어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이다. 특히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사업장' 이론으로 유명하며, 1837년에는 루이 필립 정권에 반대하는 선거개혁위원회에 가입했고, 1839년 일간지 『진보평론 Revue du Progrès』를 발간했다.



정리하기

1. 제22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제22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인권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조항임
- 복지권과 복지정책에 관련된 권리들로 제정 당시 가장 강력하게 제22조를 옹호한 것은 칠레 대표단을 이끈 에르난 산타 크루즈(Hernán Santa Cruz, 1906~1999)임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 언급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최초로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언급한 인물인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논했으며, 이후 전 세계 각 국가들에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정책의 기반을 만드는데 영향을 줌

2. 제23조 : 노동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해야 한다는 자유시장적 노동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음. 이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강제 노동이 아닌 ‘자유의사로 노동을 선택할 권리’라는 뜻임
- ‘노동할 권리’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Jean Joseph Louis Blanc)임. 그는 1840년 발표한 『노동의 조직(L'Organisation du travail)』이라는 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번덕과 임금 착취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시장 경쟁체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된 최소한의 일자리를 확보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가 ‘생산적인 완전고용’ 및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접근임
- 노동할 권리는 고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와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임
-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Everyone)’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거주하는,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제11강



제24조~제27조

: 휴식·여가·교육·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1. 제24조 : 휴식과 여가의 권리
2. 제25조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3.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4. 제27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11강

제24조~제27조 : 휴식·여가·교육·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2014년부터 국내에 처음 적용된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게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아무리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24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 노동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휴식·여가·교육·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규정한다. 사람에게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세계인권선언」은 보여주고 있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그 사람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으로서 인정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하에 활용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4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무리 일할 권리가 소중하다 해도, 사람에게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작업장이 된다.

■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이 언급하는 휴식, 여가, 교육,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제24조 : 휴식과 여가의 권리
- 제25조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27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1 제24조 : 휴식과 여가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에 대해 언급한다. 이는 제 23조의 노동할 권리와도 연관 있다. 아무리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동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굳이 노동할 권리와 휴식 및 여가의 권리를 분리해놓았다. 그만큼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노동할 권리만큼 중요한 권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던 것이다.

노동시간은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나눈다. 필요노동시간은 다음 세대의 육성도 포함하여 일하는 능력(노동력·노동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이다. 잉여노동시간은 필요노동시간을 넘어 장래의 재해에 대비하는 축적이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축적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또한 노동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에 노동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노동은 신성하고 진지한 활동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 시간, 곧 휴식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꼭 필요하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예전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규정은 노동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꿈같은 일이었다. 심지어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춰져 있다는 서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 초까지는 노동하는 날(노동일)과 노동하지 않는 날(휴일)로만 나뉘어 있어서 하루 동안의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무척 애매했다. 고용인이 ‘끝’ 이라고 말할 때까지 노동을 계속했다.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이 초래하는 피로·질병·과로사 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그렇다면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뤄졌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저항하

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노동하는 시간적 기준을 노동일로부터 노동시간으로 전환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1일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한 긴 여정을 살펴보겠다.

1815년 영국에서는 ‘1일 10시간 노동운동(Ten Hours Movement)’이 일어났다. 1831년과 1833년에 영국은 공장법을 제정하고 21세 미만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했다. 18세 이하의 경우 평일에는 12시간, 토요일에는 9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지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1840년에 뉴질랜드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파업이 일어났다. 1842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1843년부터 영국에서 평일 10시간 노동을 시행했다. 1815년부터 시작되어 약 30여 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투쟁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1844년 영국 공장법 개정으로 성인은 최대 12시간, 아동은 6.5시간 노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경우 1868년 미(美) 하원이 연방 공무원의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한 노동법을 통과시키면서 1일 8시간 노동을 점차 확산시켰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점차 1일 노동시간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노동환경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여론으로 인해 1890년 노동시간에 관한 국제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렸다. 여기서 아동노동 금지, 아동과 여성의 광산 및 야간작업 금지를 규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916년 1일 8시간 노동법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1917년에 일어난 10월 혁명 이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8시간 노동을 규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는 노동시간의 표준이 됐다.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는 1일 8시간의 노동을 확실히 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와 궤도를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2014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 연속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2번째로 긴 국가에 선정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정도 길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의 1380시간 보다는 거의 800시간 정도 길다. 지난해 공휴일이 116일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근로자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통계치가 존재하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국가이다. 2008년 멕시코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넘겨준 후 6년 연속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도 ‘일중독’이나 ‘일벌레’라는 단어가 일종의 ‘칭찬’으로 받아들여

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에서 ‘실 권리’를 운운하는 것이 때로는 ‘꿈같은 소리’나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 노동과 휴식을 짝꿍처럼 한 쌍의 동일한 가치로 볼 줄 알아야 주말근무, 야근, 비정규직,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을 중요한 노동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화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무리 일할 권리가 소중하다 해도, 사람에게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작업장이 되고 만다. 휴식과 여가를 사치로 여기는 순간 사람은 돈벌이 기계로 전락한다. 휴식과 여가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노동사회의 안전장치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다음 곧이어 제24조에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언급하는 일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강조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주 등 사람다운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를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제25조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과 안녕’에서 ‘건강’은 사람의 생물학적인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안녕은 생물학적 존립의 기반 위에서 사람적으로 누려야 할 적절한 생활수준을 일컫는다. 영어 ‘well-being’은 ‘안녕’으로 번역한다. 한국에서 ‘well-being’은 ‘잘 먹고 잘 살며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상태’로 이해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의미하는 ‘well-being’은 사람이 적절한 수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상

태, 즉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할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원작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다. 동화책은 물론 뮤지컬로도 유명하며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프랑스어로 ‘misérable’은 명사로는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그것의 복수표현으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는 장발장을 비롯해 여러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주인공 가운데 한명인 팡틴은 비록 미혼모(비혼모)였지만 성공한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한다. 어린 코제트의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혼모라는 편견에 시달려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이 곤두박질친다. 단박에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misérable)이 되었다. 공장에서 해고당한 팡틴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거기에 어린 딸 코제트의 양육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했다. 생존을 위해 어린 딸 코제트를 위해 그녀는 집에 있는 세간들을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이를 뽑아 팔기도 했고 급기야 몸을 파는 성매매에까지 나섰다. 그러다 어느 한 ‘시민’(당시 투표권이 있는 자산 계급을 시민이라 칭했음)의 장난에 걸려 경찰관 자베르에게 체포당한다. 자베르는 시민이 먼저 횡포를 부렸는데도 시민의 얼굴에 작은 생체기를 낸 팡틴에게 오히려 죄를 묻고 경찰의 특권을 이용해 즉결 처분으로 그녀를 6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려 했다. 이 사실을 안 장발장은 팡틴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사를 고용해 치료도 해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팡틴은 가난 때문에 얻은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딸 코제트도 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코제트의 이름을 부르다 서러운 인생을 마감한다.

19세기 초 프랑스 사회는 미혼모를 차별했다. 만약 차별이 없는 사회였다면, 팡틴이 단지 미혼모라는 편견 때문에 공장에서 내쫓기지 않았을 것이다. 미혼모라고 해도 그 사회적 비난 때문에 함부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어린 딸 코제트를 악덕 여인숙 업자 테나르디에 부부가 아니라 지금의 공공 어린이집 처럼 믿고 맡길 만한 곳에 맡겼을 것이다. 참정권을 보장했다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결처분으로 6개월이나 감옥에 가야 했을 때 그녀를 도와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또한 무상의료기관이 있었다면, 병들어 쇠약해진 몸을 맡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도 인권이 있었다면 팡틴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팡틴에게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건, 단지 불편하거나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제 생명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 「세계인권선언」 제25조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즉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왜 그것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조건인지를 잘 알 수 있다.

3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1항에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제2항에서는 교육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규정한다.

제26조는 「세계인권선언」 전체를 통틀어 상당히 특이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첫 번째로는 「세계인권선언」이 어떤 특정 영역의 철학과 정책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했으며, 두 번째로는 이 조항이 나치의 과거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와 국제사회에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과거사 청산, 나머지 하나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제시이다. 과거사 청산은 전쟁법(Law of War)과 전범재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라는 과제는 여전히 숙제였다. UN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은 하나의 과제를 풀기 위해 고민했다. 고민 끝에 태어난 조항이 바로 제26조이다. 제26조는 나치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파시즘에 대한 직접 비판의 정신으로 작성했다.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취지 자체는 분명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세계전쟁을 되풀이하지 말고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취지를 구체적인 조항 속에서 언급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제26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라는 문구는 다른 어떤 조항과 비교하더라도 나치를 향한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다.

나치의 교육정책은 전체주의성, 강제성, 획일성, 증오심의 고조로 악명이 높았다. 모든 교육의 목표를 선전과 선동에 두었다. 나치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독재자 지도 원리의 절대적 복종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교육방식은 당연히 자유로운 비판정신 함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치는 세뇌와 집체적 동원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일정하고 고정된 방향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당시 정치와 교육은 일심동체로 움직였다. 전국 교사의 97퍼센트가 나치교원협회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나치가 교육정책을 철저히 장악했다. 나치는 생물학을 포함한 과학과목 전반에서 인종주의적 주장과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마치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다루도록 지시했다.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을 가르쳐야 할 교육계는 오히려 인종차별을 조장함은 물론 과학의 탈을 쓰고 증오와 불관용을 가르쳤다.

이러한 나치정신은 히틀러가 청소년에게 나치스의 신조를 가르치기 위해 1933년에 만

든 조직인 “히틀러 유겐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 소년은 열 번째 생일을 맞으면 관청에 등록을 하고 인종의 순수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자격을 인정받으면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여 18세까지 활동했다. 소년뿐만 아니라 소녀도 히틀러 유겐트의 자매 조직이었던 독일소녀동맹에 가입하여 교육을 받았다.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방불케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충성스럽게 살고 죽음을 거부하고 싸우며 웃으면서 죽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히틀러 유겐트의 가입 선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짐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우리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피의 깃발 앞에서 나는 조국의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슬로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원인은 나치의 세뇌교육 때문이었다.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한 소년은 엄격한 스파르타식 생활을 통해 나치즘을 주입받았다. 이는 숨어 있는 유대인이나 사회주의자 반전주의자들을 찾아내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나치가 하사하는 상을 바라고 유대인을 숨겨 준 친부모를 고발한 소년까지 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 유겐트 대원은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기도 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총알받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이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치와 히틀러에게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제26조에는 교육의 의미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제안이 담겨져 있다. 성격 별로 기초교육은 문자해독, 산수, 사회 등을 가르쳐야 하고, 직업교육에서는 사회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응용과목을 가르치도록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 단계별로 보면 초등·중등·고등 교육으로 나뉘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주장한다. 또한 교육에서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정책 규제에 관해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이 사회적으로 봉사해야 할 더 큰 목표를 시민적 덕성과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제26조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선택할 우선권을 규정한다. 나치 시대에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파시즘 교육을 받지 않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강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바로 제26조 제3항이다.

파시즘의 광기가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순진한 청소년에게 동심을 파괴하고 파시즘을 주입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었다. 절대적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놓겠다고 다짐하게 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과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세뇌에 가까운 교육이 때로는 이렇게 전쟁과 파괴의 논리가 되어 인간성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교육이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4 제27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술과 문화가 사치가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임을 가르쳐주는 조항이다. 문화생활을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UN헌장」 제1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국제연합의 목적중 하나이다.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UN헌장」 제1조 제3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Article 1

3.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우리는 「UN헌장」의 조항을 통해, 문화를 누릴 권리를 국제사회의 의무로까지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모두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다음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담는다. 첫째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화 활동에 개인이 참여할 개인적 권리이다. 둘째는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다. 정체성은 단순한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소수민족·소수언어집단·소수종교집단 등, 집단적 정체성 자체를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한국도 개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와 민족 전체가 이러한 문화권을 유린당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자행했던 ‘민족말살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완벽한 식민 지배를 위해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저항을 잠재웠다. 조선어를 포함한 한민족의 문화가 담긴 요소를 말살했다.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 목적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을 폈다. 이에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우리는 합심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의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제창하게 했다. 1938년에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모두 폐지했다. 일본어를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해서 학교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서는 일본어만 쓰고 말하도록 강요했다. 억지로 창씨개명을 시키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했다. 일본에 협력하는 학자들을 동원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강조했다. 이는

본래 병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했던 이론이었다. 전시에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잠재우는 데 이용했다. 일본인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주를 각 가정에 걸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외에도, 일장기 게양·황궁 요배·신사 참배·정오 묵도 등을 강요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강요와 강제는 조선이라는 공동체가 지닌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해 인권을 유린한 처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문화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장치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관해 언급했다. 이 조항 역시 개인이 가지는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누리는 문화적 권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탈당했던 조선왕실의궤과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의 외규장각 도서에 있는 의궤 등 다수의 고문서들을 약탈하고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해외 약탈도서 반환운동의 결실로 최근 반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빼앗겼던 문화재를 공동체 차원에서 반환받은 일은 분명히 집단 권리로서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권유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들의 창작물까지 보호받을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선언」이 이처럼 문화권에 관해 폭넓게 규정한 것은 인권이 단순히 법적 권리로만 환원될 수 없는 더욱 높은 차원임을 알려준다.



공유하기

지적재산권을 왜 보장해야 할까요? 의견을 써 보세요.

< 예시 >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르는 요즘 세상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원료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낸다.

이렇게 새롭게 생산된 지식과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한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 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 또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로만 머물면 안 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거나 유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 풀기

1. 다음 설명에 가장 알맞은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4조가 강조하는 권리는 () 이다.

- ① 노동권 ② 휴식권 ③ 사법권 ④ 생존권 ⑤ 자유권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4조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2. 「세계인권선언」 제25조가 강조하고 있는 권리로서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 ① 언론의 자유 ② 사회복지 ③ 안전불감증 ④ 부정부패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전래동화속의 흥길동은 서자(庶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중 제 몇 조에 위배되는가?

- ① 제23조 ② 제24조 ③ 제25조 ④ 제26조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정리하기

1. 제24조 : 휴식과 여가의 권리

-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짐

2. 제25조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음

3.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함.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함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함.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함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짐

4. 제27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짐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제12강



제28조~제30조 : 체제 · 의무 · 제한의 메시지

1. 제28조 :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2. 제29조 : 의무와 제한
3. 제30조 : 해석상의 악용 금지

제12강

제28조~제30조 : 체제·의무·제한의 메시지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 ‘미녀의 탄생’은 뚱뚱한 체격의 주인공이 전신성형을 통해 살을 뺀 후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뚱뚱한 주인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하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오히려 주인공에게 ‘거울도 안 보고 사냐며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 드라마보다 더 가혹하다. 살 때문에 입사면접에서 낙방하는 건 흔한 사례이다. 실제로 살이 찐단 이유 하나로 회사 면접관에게 ‘자기 관리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어 그 면접관은 ‘살부터 빼고 오라’ ‘살을 빼기 전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어디도 취직이 안 될 것’이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드라마 속 남편이나 불륜을 저지는 여성 그리고 면접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권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 또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는 주장도 안 된다. 그것은 내 권리며 자유가 아닌 ‘권리의 남용’이며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도 이렇게 타인의 존엄성과 인권 짓밟는 권리남용에 대해 제29조 2항을 통해 경고한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자 중 하나인 스테판 에셀(Stephane Hessel 1917~2013)은 저서『분노하라(Indignez-vous!)』를 통해 ‘자유’와 권리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한다.

“닭장 속의 여우가 제멋대로 누리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12강

제 28 조 ~ 제 30 조
세 계 인 권 선 언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인권이란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 정답 : ×

○ 해설 : '-권'을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인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천부인권론이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인권은 신성불가침이고 절대적인 믿음 이 정설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남을 해치면서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2. 국가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 정답 : ×

○ 해설 : 생명권, 노예 상황에 놓이지 않을 권리,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보호 원칙 등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또한 전시 민간인 보호 원칙 등도 위반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설령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법률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 제28조의 내용에 따라 모든 사람과 단체, 국가가 인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9조를 통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권리의 제한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30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권리로 선언을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내용

-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 의무와 제한
- 해석상의 악용금지

전문을 제외한 30개 조항 중 마지막 3개인 제28조부터 제30조만 남았다. 이 부분은 특정한 권리의 지정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전체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체제와 의무 제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작성자는 선언을 작성할 때 인권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것을 선언하면서도 그 자체가 권리의 오남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선언 제28조에서 제30조가 그런 제한 장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에 '권'자를 붙여서 그것이 천부적인 권리인 양 말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는 대부분 그것과 함께 규정된 특정 조건을 고려하여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인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일종의 딜레마인 셈이다. 권리를 무한정으로 남용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강화하여 인권을 억눌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선언을 작성할 때도 이런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전문부터 제2조에 걸쳐 말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인권의 토대인 '존엄성과 평등, 자유, 형제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28조에서 제30조를 만들었다. 선언 제3조부터 제27조에 나온 권리들을 체제와 의무 제한이라는 덕목을 통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장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틀어 개인과 시민사회 국가가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모든 사람과 단체 국가가 인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말이다.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미 「세계인권선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조항들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12강

제 28 조 ~ 제 30 조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다음에 나오는 제29조와 제30조의 안내문 역할을 한다. 제 22조가 제27조까지를 이끌었던 맥락과 비슷하다. 제28조는 전문에서 말하는 ‘법의 지배’와 ‘국제 친선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킨 조항이다. 이 조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인 권이 구현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이나 조건, 또는 어떤 틀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앞선 제3조에서 제27조 사이에 규정된 여러 개별 권리를 하나의 전체 틀 안에서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제28조에서 말하는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조건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제28조에는 없다. 이어서 나오는 제29조와 제30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선언에서 말하는 ‘법에 의한 통치’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만 유추할 수 있다. 만일 선언의 작성자들이 ‘법에 의한 통치’만으로 인권과 자유가 온전히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면, 전문 3번째 단락인 ‘사람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처럼 ‘법에 의한 통치’란 표현을 재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질서(order)’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서’란 혼란의 반대말이나 어떤 규칙성을 갖춘 구조 심지어 통제를 위한 억압 등으로 이해하는 일은 너무 일차원적이다. 그렇다면 ‘질서’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 법과 관련하여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법률

용어사전에서는 '질서' 즉 'order'를 '법의 지배와 정치적 권위가 확립된 평화로운 상태'라 정의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order'는 단순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 잘 조직된 민주적 체제'라는 의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 말하는 '질서(order)'는 '체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법의 지배를 전제로 하여 이성적으로 조직된 체제 말이다. 물론 이 질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구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이다. 앞에서 '질서'를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을 적용해 보면 사회적 질서와 국제적 질서는 '사회체제'와 '국제체제'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 '사회체제'의 경우 '국내체제'를 뜻한다.

제28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의 이상주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조항이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잔혹함을 보여준 전쟁을 겪고 난 후,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승리가 아니라 사람 존중의 바탕 위에서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포부를 보여준다. 또한 제28조는 냉전이 시작되던 무렵의 각국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도 함께 보여준다.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질서, 즉 '체제'라고 규정하지만, 그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냉전의 영향으로 양 진영의 어느 한 쪽도 상대방 체제가 제28조에 반영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창출하는 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선언 작성 당시는 분명하게 체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미국의 인권학자 잭 도넬리(Jack Donnelly)는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 말하는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언 제3조부터 제27조 사이에 나오는 모든 권리가 가장 잘 반영된 체제를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연구를 통해 선언이 열거한 권리들이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선언이 선포되고 반세기 이상 흐른 지금 도넬리 주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제28조를 둘러싼 경험적·이론적 논의가 지향하는 국내체제의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국내체제뿐만 아니라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찾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체제의 경우 국내체제만큼 뚜렷하게 눈에 띄는 현실 사례를 아직 찾기 어렵다. 하

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가중심체제가 완전한 세계정부체제가 아닌 그 중간의 국제체제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일각에서 냉전의 영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제28조가 인권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인권의 목록은 시대와 장소 행위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에서 제27조에 나오는 구체적인 인권 목록보다 오히려 제28조의 규정은 훨씬 개방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 보장의 의무는 국가가 져야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여,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여러 주체,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구성원, 기업, 미디어, 원조기관 등도 인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로 올수록 국가 이외에 기업이나 개인 등의 인권 존중 의무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 의한 폐해에 대해 전 세계의 시민들이 반세계화운동을 펼칠 때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거론했다. 자본의 횡포, 기업의 자의적인 공장 이전, 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빈부격차 심화는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국제체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신생독립국에서는 제28조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형식논리로 보았을 때 일단 어느 한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고 나면 민족자결권의 요구를 충족했다. 그러나 법적·정치적으로 독립했다고 해서 독립국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의 행복번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를 받던 국가는 신생독립 과정에서는 독립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도층이나 민중 모두 독립 이후 상황에 대해 높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독립 후 국가를 운영해보니 경제·사회적 발전이 법적·정치적 독립보다 오히려 복잡하고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게다가 신생독립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미 불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국제질서와 식민 지배에서 남은 상처들, 신식민주의적인 경제 의존 등, 문제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생독립국은 1974년에 UN에서 ‘신국제경제질서(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주창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 원조 확대 관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후 전 세계는 제28조에 규정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서서히 형성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8조의 의미를 한 가지만 더 짚어 본다면, 선언이 인권의 증진과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는 정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12강

제 28조 ~ 제 30조
세계인권선언

체제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설령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 체제를 요구하고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선언 제3조에서 제 27조에 명시된 권리는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 아래서는 경시되거나 오히려 탄압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를 성찰해 볼 때 우리는 인권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고 쟁취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28조는 선거 때 투표는 물론 평소에도 권력을 감시하는 등 민주시민의 의무를 제시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2 제29조 : 의무와 제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의무(duties)’와 ‘제한(such limitations)’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사람의 권리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의무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칭한다. 모든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발생시킨다. 권리는 본질상 무제한적일 수 없다.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주장한다면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의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선언 제29조는 ‘권리’ 개념의 기본 구도를 논리적으로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27조까지 조항에 나오는 권리를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제시하지는 않고, 제29조에 일괄하여 표현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12강

제 28 조
제 30 조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위와 같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단락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단락은 자신들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9조를 만들 당시 작성자는 사람이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권리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개념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국내·국제체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눴다. 개인은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권리 행사에 일정부분 제한을 받으며, 사회는 민주사회여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는 타인과 국가에 대한 행위에 있다. 의무 때문에 권리는 일부 제한된다. 권리의 제한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는 인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권리와 함께 제한을 말할 때, 권리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개인 권리와 공동체 이익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정도의 제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어느 쪽 권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9.11 테러이후 논란이 되었던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권 문제를 들 수 있다. 권리 간 충돌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민감한 문제이다.

권리 간 충돌 시 우선 순위를 고려하려면, 먼저 권리의 충돌에도 여러 유형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권리가 좋은 예이다. 동일한 권리의 행사방식과 한계 설정을 두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일베’들이 타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표현은 어떤 제한을 해야 할지 고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의 ‘권’자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무데나 ‘-권’을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인권은 아니다.

그렇다면 권리 간의 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대다수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원칙이다.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이다. 천부인권론이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인 권은 신성불가침이고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정설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남을 해치면서 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도 안에 행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권리들 간에 서열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책적으로 어떤 권리를 먼저 시행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인권의 가치는 똑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때 어떤 권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질 낮은 농담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권리 따위는 없다.

네 번째로 권리 간 충돌 시 각 권리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사안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그 사회의 법적 문화적 규범도 권리 간 충돌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처럼 권리 간 충돌 문제는 일률적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칙·상식·균형감각을 발휘하여 가능한 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원칙이며 어떤 상식인지는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 인권의 원래 취지가 사람의 본질적 이익이므로 민주적·다수결 원칙으로 인권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만약 다수와 소수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때 되도록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먼저 챙긴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이 점에서 법률가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권리 간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난다. 인권의 목록이 늘어나고 신념과 이념에 근거한 인권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권리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때 허용 가능한 권리 제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제한도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하고 제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권리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익의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한계와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 번째,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공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도로만 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권리 제한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돼야 하고 엄격하게 실시돼야 한다. 권리의 제한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해야 하며, 인권의 본래 취지를 언제나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인권 중에서도 어떤 인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도 제한할 수도, 위반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30조를 살펴보자.

3 제30조 : 해석상의 악용금지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제29조에 뒤따라 나오면서 제29조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한다. 선언의 그 어떤 규정, 즉 조항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권리로 악용하는 해석은 절대로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제30조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정치세력의 미디어 독점’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 또는 유력한 정파가 어느 한 나라의 언론·미디어를 독점했다고 가정해 보자. 무엇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 나와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 세력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언론·미디어에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세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반대 세력의 방송 출연을 금지와 더불어 왜곡과 선전을 일삼고 있다면,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제21조에 나오는 정치적 권리에 어긋나는 행위도 모자라 한 나라의 민주정치가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이들에게 있지만 미디어의 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파괴(destroy)’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파괴하면 앞의 예와 같이 언론·미디어를 독점한 정치세력이나 극우파, 외국인 혐오를 선동하는 극단주의자 등의 세력의 권리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앞서 제29조와 관련한 이야기처럼, 아무리 그 의도와 목적이 올바르다 해도, 일단 한 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권리를 제한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경우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서슴없이 한다. 이는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 세력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탄압과 과잉 대응을 주문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데로 그 국가는 반민주적 국가임이 드러난다. 그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처럼 제30조는 간략한 문장으로 이뤄졌지만 민주사회에 대해 본질적이고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연방정부를 불신하면서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 같은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조직이 있다. 산악지대에 들어가 숨어 지내면서 국가를 전복할 기회를 노린다. 이들의 활동은 FBI가 상시적으로 감시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이런 권리의 제한은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권을 제한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잠재적 테러범을 감시하기 위한 인터넷 감정이 순식간에 보통의 평범한 일반 시민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로 변질된다. 한국에서도 모바일 메신저를 국가 기관이 사찰하는 ‘다음카카오톡사건’이 있었다. 공안당국으로서는 이런 활동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입증하고 조직의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

회라고 여길 수 있다.

전쟁이나 테러 공격 등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딜레마는 우리를 더욱 괴롭힌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특히 휴전국인 한국은 그럴 가능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다. 일반 시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공포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는 항상 사회 전체에 대한 실제 위협의 크기와 개인 자유 침해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한다. 실제 위협이 있는지, 그 위협은 명백한지, 실제인지 따져야 한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활동가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국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위험은 없는지, 필요 이상으로 인권이 제한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 제약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먼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명백하고 심각하고 긴급한 때만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설령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들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생명권·노예 상황에 놓이지 않을 권리·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인신 보호 원칙 등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권리다. 또한 전시 민간인 보호 원칙 등도 위반할 수 없는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설령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의 정도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한다. 2001년 뉴욕에서 벌어진 9.11 테러 이후 「세계인권선언」 제30조가 크게 주목받았다. 그때 미국은 격앙된 사회 분위기에서 국가안보 대 인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횡행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테러범과 같은 편’이라는 식의 논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게다가 조지 부시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피의자에게 고문을 했던 일이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운 채 그 위에 물을 붓는 ‘워터보딩(Water-boarding)’ 심문 기법이 고문이나 아니냐를 두고 여처구니없는 법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시민권연맹(ACLU)이 입수해 공개한 CIA 심문 기법 관련 극비 보

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테러용의자를 납치하여 고문해 자백을 얻어내는 특별취조 관행이 부시 정권 시절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이는 전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9.11 테러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및 서양의 국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적·정치적 권리만큼은 민주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랑할 수 있는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 자신만만해 하던 인권의 보호 수준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예에서도 인권의 후퇴가 우려되는 아무리 작은 조짐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인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근본을 이루는 사람의 존엄성이 어찌다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테러범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 또는 ‘테러를 방지하고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테러범 같은 자들에게 고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순식간에 피상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테러를 방지하며 시민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무를 핑계로 테러범을 고문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시민의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기로 한 정치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또한 고문은 절대 ‘범죄를 방지’하거나 ‘악행을 한 범인을 잡는’ 도구가 될 수 없다. 고문을 통한 자백은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문을 하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고문하는 사람이 원하면 허구의 범죄도 만들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느끼고, 그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결국 무너져 버린다.

나쁜 짓을 저지른 테러범의 인권을 고려해주자는 말은 그를 무조건 용서해주자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 절차와 인권 원칙을 따르자는 말이다.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으며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테러범과 같은 편’이라고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보다 성숙한 사고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보충학습 :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 2005)와 통제사회

‘브이 포 벤데타’는 2005년 미국에서 개봉하고 이듬해인 2006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제임스 맥티그(James McTeigue)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화제작 ‘메트릭스’를 쓴 워쇼스키 형제 앤디 워쇼스키(Andy Wachowski)와 라나 워쇼스키(Lana Wachowski)가 각본을 맡은 걸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2040년 영국의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정부에 의해 완벽히 통제된 사회를 그리고 있다. 영화 속 영국에서는 정부 지도자와 피부색, 성적 지향,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은 ‘정신집중 캠프’로 끌려갔고, 거리 곳곳에 감시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모든 이들이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유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비’라는 소녀가 위협에 처하자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다. 그는 옛날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다 사형당한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그는 ‘V’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의문의 사나이였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 <헨리 5세>의 대사들을 인용하고 현실세계의 아픔을 노래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읊는 브이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아 폭력과 압제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구할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미 정부에 의해 장악된 언론은 입바른 소리만 할 뿐이었는데, 그 언론사 건물에 몰래 접근하여 통제된 삶의 부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호소한다. 그러는 동안, 이비는 브이의 숨겨진 과거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신에 관한 진실을 깨달아간다. 그리고 결국 브이의 혁명에 동참하게 한다.

미래의 가상현실을 다루는 ‘브이 포 벤데타’는 무거운 주제와 달리 즐거운 분위기와 음악 그리고 재미있는 가면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떤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언론이 장악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 통제된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권이,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브이와 지지자는 그는 자신들의 힘으로 왜곡된 세계 통제된 질서를 깨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통제사회와 인권, 권리의 제한의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공유하기

흉악범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써 보세요.

< 예시 >

흉악범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흉악범은 타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하는가?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흉악범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이 말처럼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를 옹호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까지 용서해주는 셈이 되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인권 존중은 죄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고 인권은 절대 온정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그들의 처벌을 면제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처벌하자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흉악범에게도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와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적용해야 한다. 흉악범을 체포한 뒤에 아직 법정에 서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살인자’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흉악범을 용서하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원칙에 따라 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벌은 복수가 아닌 교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흉악범의 편으로 몰아가는 논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문제 풀기

1.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질서(order)'는 단순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 잘 조직된 민주적 체제'라는 의미이다.
- ② 전문에서 말하는 '법의 지배'와 '국제 친선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킨 조항이다.
- ③ 국내 국제 차원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승리가 아니라 사람 존중의 바탕 위에서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원리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 ④ 각국 내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조항이다.

○ 정답 : ④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인권을 둘러싼 정치를 강조한다.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 체제를 요구하고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28조는 선서 때 투표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권력을 감시하는 등 민주시민의 의무를 제시하는 조항이 될 것이다.

2. 다음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의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공식번역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을/를 가진다.

- ① 권리 ② 의무 ③ 자유 ④ 소유

○ 정답 : ②

○ 해설 : 제29조를 작성할 당시 작성자는 사람이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싶어했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권리라는 것도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개념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국내·국제체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눈다. 개인은 의무를 지키고 권리 행사에 일정부분 제한을 받으며 사회는 민주사회여야 한다. ‘의무’ 는 타인과 국가에 대한 행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의무 때문에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권리의 제한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것 자체가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와 함께 제한을 말할 때는 권리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개인 권리와 공동체 이익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정도의 제한을 의미한다.

3. '권리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② 「세계인권선언」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제한도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하고 제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③ 인권은 천부적이기 때문에 절대 제한할 수 없다.
- ④ 국가는 공익의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정답 : ③

○ 해설 :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권리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제한할 것인지는 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선언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제한도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하고 제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권리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공익의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한계와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 번째로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정도로만 해야 한다. 권리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권리의 제한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해야 하며, 인권의 본래 취지를 언제나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하기

1. 제28조 :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 말하는 '질서(order)'는 단순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 잘 조직된 민주적 체제'라는 의미임
- 전문에서 말하는 '법의 지배'와 '국제 친선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킨 조항임
- 제28조는 국내 국제 차원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승리가 아니라, 사람 존중의 바탕 위에서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원리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음
- 인권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고 지켜내야 함. 이런 점에서 볼 때, 제28조는 민주시민의 의무를 제시하는 조항임

2. 제29조 : 의무와 제한

-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체제는 개인은 의무를 지키고, 권리 행사에 일정부분 제한을 받으며, 사회는 민주사회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함
- '의무'는 타인과 국가에 대한 행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의무 때문에 권리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권리의 제한은 권리 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개인 권리와 공동체 이익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정도의 제한을 의미함
- 권리의 제한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그쳐야 하며, 인권의 본래 취지를 언제나 존중해야 함

3. 제30조 : 해석상의 악용금지

-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선언의 그 어떤 규정 조항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권리로 악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즉, 제30조는 선언의 어떤 규정도 그 권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함

- 국가는 권리의 제한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함
- 우리는 국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위험은 없는지 필요 이상으로 인권이 제한 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비판해야 함

12강

제 28 조
제 30 조
세계인권선언

제13강

「세계인권선언」의 영향



1.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2.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회의와 테헤란 선언
3.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장전
4.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대한민국 헌법

제13강

「세계인권선언」의 영향

나비효과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다. 말하자면, 오늘 서울에서 공기를 살랑이게 한 나비의 날개 짓이, 다음 날은 부산에서, 또 다음 달에는 도쿄에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으로 전 세계에는 “인권”의 바람이 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각종 법 정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민주화·인권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인권선언」이 인권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학습해보자.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은 각종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인권장전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테헤란 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2.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1948년 12월에 채택되었으나 2년여 간의 준비회의 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원칙은 국제사회의 이슈로 여러 차례 소개되었고 이러한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의 사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의 사례 : 국제인권회의와 테헤란 선언
-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의 사례 : 국제인권장전
-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의 사례 : 대한민국 헌법

1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부터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이 발효될 때까지 「세계인권선언」은 유일하게 국제인권장전의 실질적인 내용이자 인권의 경전(經典)이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이를 모태로 하여 수많은 국제인권법이 채택됐다. 또한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활용하고 인용했다. 각국의 교육기관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을 가르치고 연구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은 UN기구들이 내린 수많은 중대한 결정들의 근거와 정당성의 증거가 되었다. 이 조항은 UN 안팎의 수많은 국제인권기구들의 설립을 촉진했으며 수많은 국가간 협약들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수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헌법과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기준이다. 대표적인 국제협약들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채택된 것은 1965년에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을 때,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는 권리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 문제는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부 대표들이 모여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인 UN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의 논의로 이어졌다.

그 당시 국제정세를 살펴보자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권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1965년 12월 UN총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약칭: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했고, 이것이 바로 UN에서 첫 번째로 탄생한 인권규약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민족적 계통을 이유로 한 구별을 금지한다.’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내렸다. 여섯 개의 상세조항들에서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의무를 나열했다.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 금지를 비롯하여 이 협약은 인종주의 선전 등 사회에 뿌리내린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협약은 인종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을 보장하며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법원 혹은 기타 국가기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음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문헌이다. 앞서 공부했듯이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사람 평등과 차별금지가 인권의 근본전제이며 모든 차별을 금지되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가 강조하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이후 UN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언급하고 있는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담아낸 다양한 국제규약들이 탄생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들 국제규약들의 마중물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인권레짐에 크게 기여했다.

2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회의와 테헤란 선언

「세계인권선언」 채택 20주년이 되는 1968년을 “국제인권의 해”로 지정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1968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국제인권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가 개최되었다. 84개국의 정부대표, UN의 여러 기관 국제·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옵서버 자격으로 NGO 일부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는 최종문서로서 전문(前文)과 19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테헤란 선언과 여러 가지 인권 쟁점에 관한 29개의 결의를, 투표에 의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의사의 표시가 없다면,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방식인 콘센서스(consensus)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제인권회의는 「테헤란 선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인류 공통의 견해를 선언하며, 지구촌 모든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천명한다.”는 점에 합의하며, 선언의 전문(前文)과 구체적 조항에 「세계인권선언」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먼저 <테헤란 선언>의 전문(前文)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후 20년을 돌아보고 향후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to review the progress made in the twenty years since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o formulate a programme for the future…)”

라고 국제인권회의가 열린 배경을 언급했다.

국제인권회의의 참석국은 「테헤란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제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원칙들에 대한 신념을 확인했으며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정부들에게 “이 원칙들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품위 있는 삶,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1. 국제사회의 구성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엄숙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세계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입장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식민국과 그들의 국민에 대한 독립허용에 관한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UN과 전문기구들 및 지역별 기구들의 후원 하에 채택된 기타 인권관련 협약과 선언들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과 의무들을 규정한다.
4.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래로 인권의 향유와 보호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본 회의 기간 동안 많은 주요한 국제문헌이 채택되었지만, 그 권리와 자유의 실행에 있어 여전히 진전시켜야 할 것이 많다.

이와 같이 채택 이후 25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세계인권선언」은 유일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국가들의 국제인권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민들과 모든 국가들의 인권보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공통의 기준이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천명하는 역사적 문서로 인식되며 명실상부한 국제인권기준의 존중과 준수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3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장전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문헌은 1966년 UN 제2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A규약 또는 사회권규약으로 약칭 한국의 경우 1990년 7월 10일 발효)」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으로 약칭 한국의 경우 1990년 7월 10일 발효)으로 구분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될 시기에 UN에서는 이 두 개의 주요 인권협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에게 법적 구속력 부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두 협약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을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즉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인권을 포괄하는 단일 문서를 예상했으나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 후 UN총회는 UN인권위원회에게 「세계인권선언」이 언급한 권리들을 두 개의 규약으로 나누어 성안할 것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두 규약에 가능한 비슷한 조항들을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두 규약은 최종적으로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6년 발효됐다.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이 두 개의 규약은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른다.

「국제인권장전」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세계인권선언」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와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로 구분하여 협약화했다.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하여 UN기구들이 채택한 수많은 결의안과 결정들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과 2개의 국제규약 중 하나의 규약이나 2개 규약 모두 실질적인 조치들을 위한 근거로 인용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전문(前文) 및 31개조로 구성되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전문(前文) 및 5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948년 이래 UN기구들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국제인권기구나 제도는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을 인용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문(前文)에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하여 이 규약들의 정체성이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나왔음을 알렸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UN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UN헌장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뿐 두 규약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몇몇 조항들의 경우 동일한 혹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 두 규약의 전문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인권의 이상이 성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한다. 두 규약의 제1부는 자결권과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명시한다. 이어서 제2부는, 차별금지조항,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협약 상 권리의 향유와 그러한 향유의 제한에 관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제3부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을 발전시킬 실제적 조항들로 구성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차별금지에 대한 제2조 제1항과 제3조 이외에도 제26조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의 경우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러한 침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의 구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다. 또 제25조는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공적인 업무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모두 「세계인권선언」이 그 보다 앞선 20년 전 언급했던 내용들을 구체화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교육권의 보장과 관련해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다른 차원에서의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교육권의 보장을 체계화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UN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할 권리’는 이 규약의 제6조 제1항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이 규약 제12조 제1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탄생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인권선언」은 1979년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1984년에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최근에 들어 2006년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각종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문헌의 탄생의 모태이다. 또 이러한 문헌들의 탄생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며 국제사회가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회원국들의 법적, 윤리적 의무를 인정한 국제인권규약들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세계인권선언의 광범위한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국제인권규약들의 존재 사실 자체와 이 규약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을 위한 이행 기준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더욱이, 「세계인권선언」은 정부가 이 원칙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느냐 또는 국제인권규약들을 승인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인권규약은 다국간 협약이라는 속성 때문에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규약을 인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UN 외부에서 체결된 국제인권규약들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를 들면, 1950년 로마에서 열린 유럽회의에 의해 채택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전문

유사한 생각과 정치적 전통, 이상, 자유,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라는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의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권리들을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1963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채택된 「아프리카통일기구 헌장」 제2조는 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 1989년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조인된 「미주인권협약」은 전문(前文)에서 이 협약이 「미주국가기구 헌장」,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시행한다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선언을 통해 세계인권회의는 인권기구 및 제도들의 체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환영했다. 모든 국가에게 인권규약의 승인을 촉구했다. 또, 모든 회원국에게 가능한 조항에 대한 유보선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1편 26항).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며, 인류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진정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 수 있다.

4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대한민국 헌법

앞서 이야기 한 국제규약들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는 판결의 근거로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장전의 원칙들을 때때로 인용했다.

국가 또는 지방 법원들도 국제인권장전의 원칙들을 판결의 근거로서 종종 인용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헌법과 법률에 이러한 원칙들을 수호하기 위한 조처들을 규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국내법과 지방정부 조례들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의 조항들을 모델로 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들이 국가계적 및 국제적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인권보호 노력의 지침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다. 먼저 「헌법」의 제정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우리나라는 약 3년간 각종 이념대립에 휩싸였다.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미·소 양국은 모두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 신탁통치와 정부수립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며 우리나라 정세에 크게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심하게 대립했고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한국 문제를 1947년 10월에 UN에 상정했다.

이에, UN은 총회를 열어 미국이 제안한 “9개국으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

하고, 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련은 UN의 안대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급기야 UN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에 UN은 1948년 2월에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했다.

UN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는 총선거 실시를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졌다. 당시 남한의 분위기는 UN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지만,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단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특히, 김구는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에 크게 반발하여 김규식과 함께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도 동의하여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남한에서는 UN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렇게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헌법기초에 착수 6월 3일 유진오(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통과, 17일에 서명·공포·발효됐다. 제헌헌법은 구(舊)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틀을 모방하여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내용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명시했으며,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각각 분리하여 명시하는 등 다양한 인권을 보장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녹아 있는 것이다.

헌법상 인권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조문으로는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제정 이래로 지금까지 인권은 여전히 헌법정신과 철학의 주춧돌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가 앞서 배워왔던 「세계인권선언」의 조문과 많이 비슷하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일은 1948년 7월 17일이고, 「세계인권선언」 채택일은 1948년 12월 10일이라는 사실이다. 날짜로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인권선언」보다 5개월이나 빨리 제정되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인권선언」제정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작성과정에서도 언급했듯 「세계인권선언」 초안위원회가 설립되어 초안과 최종안이 작성되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도 언급되었고, 세계 각국은 이를 이슈화 하여 뉴스로 보도하기에 바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원칙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0조부터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의 서문을 여는 조항이다. 또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커다란 성의 앞문과 뒷문을 모두 열어두는 것과도 같은 표현이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인권’이라는 말을 정의하거나 제한하지 않아, 새로운 권리들의 탄생과 진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처럼 1948년 채택 이래로 「세계인권선언」은 UN의 모든 선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선언이다. 동시에 모든 인권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 및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국제규약들에 도덕적 효력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었다. 각국 헌법들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촉진하는 영감의 근원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공유하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영향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 예시 >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이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동의를 받아 인정한 선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인권 및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국제규약들에 도덕적 효력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각국 헌법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이 선언은 세계적으로 약 3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협약과 국제선언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세계화와 제도화를 이루어낸 명실상부한 인류의 발명이자 역사적 산실이다.



문제 풀기

1. 다음 국제문헌 중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 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관한 국제협약
- ② UN헌장
- ③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테헤란 선언」 등 많은 국제협약과 선언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UN헌장」은 「세계인권선언」보다 3년 빠른 1945년 6월 26일에 채택되어 「세계인권선언」이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2.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후로 가장 먼저 채택된 국제협약은?

- 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②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정답 : ①
- 해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관한 국제협약 : 1965년 채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966년 채택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1979년 채택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89년 채택

3. 다음 문헌 중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는 구문이 없는 문헌은?

- 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③ 대한민국 헌법
- ④ 테헤란 선언

- 정답 : ③
- 해설 :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문(全文)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는 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하기

1.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 필요함을 국제사회가 인식함
 -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65년 12월 UN 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UN에서 첫 번째로 탄생한 인권협약이 됨
 - 이 협약은 인종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들을 보장하며,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2.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회의와 테헤란 선언
 - 「세계인권선언」 채택 20주년이 되는 1968년은 “국제인권의 해”로 지정되었고 1968년 이란 테헤란에서 국제인권회의를 개최함
 - 회의의 결과로 <테헤란 선언>을 발표. 이 선언에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인류 공통의 견해를 선언하며 지구촌 모든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천명한다.”는 점에 합의하며, 선언의 전문과 구체적인 조항에 「세계인권선언」을 여러 차례 언급함
3.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직후 UN총회는 UN 인권위에게 「세계인권선언」이 언급한 권리의 규약으로 나누어 성안할 것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두 규약에 가능한 비슷한 조항들을 규정할 것을 요청함

- 이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초안 작성을 시작함
- 1966년 제21회 UN총회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 1976년 발효함

4.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례 : 대한민국 헌법

- 해방이후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신탁통치와 정부수립 문제를 주장하며, 한반도 정세에 크게 개입함
-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심하게 대립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1947년 UN에 상정함
- UN은 총회를 열어 UN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소련을 비롯한 반대 주장이 거세지자 UN은 다시 1948년 2월에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함
- 이에 관한 찬반논쟁이 분분하자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남한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총 선거,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제헌국회를 구성함
- 1948년 6월 3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 기초위원 30명이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고, 7월 12일 국회통과 17일에 서명·공포. 그날부터 발효함
- 제헌헌법은 구(舊)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틀을 모방하여, 삼권 분립, 단원제 국회, 대통령의 국회 선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명시하여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하는 인권의 원칙을 담음

제14강

「세계인권선언」의 한계



1.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성 문제
2. 「세계인권선언」 속 ‘차별’의 한계

제14강

「세계인권선언」의 한계

2014년 8월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백인 경찰의 총격에 10대 흑인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10월에 시위대 3000여 명이 거리 행진을 하며 인종 차별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치 ‘퍼거슨 사태’가 재연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우리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고무총탄을 발포했지만 정의의 위한 우리의 행진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첫 시위는 클레이턴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카운티 검찰청 앞에서 보브 맥컬러스 검사에게 퍼거슨 사태의 시발점이 된 월슨 경관의 기소를 촉구하는 행진으로 시작됐는데, 세인트루이스시 당국은 비상 경계령을 발동했지만 시위는 폭력 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시위가 격화하자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주방위군이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무자비하게 강제 진압한 역사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은 반세기 전 이들의 진압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여론을 의식하여 주지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임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주방위군까지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사태는 1964년에 인종차별을 금지한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된 지 딱 50년을 맞은 해에 벌어졌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흑인의 인권운동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행태가 얼마나 강고하게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민권법은 1950~60년대 흑인들의 치열한 민권운동의 결과로 1964년 7월 발효됐는데, 학교·영화관·식당·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인종 분리를 금지하고 경찰력 집행과 투표권 행사 고용 등에서도 차별을 금지한 내용의 법이다.

그러나 2014년을 살고 있는 퍼거슨시 주민은 여전히 차별을 이야기한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한다. 흑인 소년 브라운이 무단횡단을 하다 숨진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양쪽에는 연립주택 단지가 형성돼 있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던 곳이었다. 브라운은 이 연립주택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는 중에 간이도로를 건다가 백인 경찰의 단속에 걸려 결국 사망했다. 시민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흑인에 대한 경찰 단속의 ‘일상화’도 이번 사건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경찰 단속의 일상화는 민권법 폐지 전 ‘흑인 분리’ 시스템을 다시 실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흑인들이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흑인들의 추가 유입을 막고 이사를 가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1931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는 『메마른 구월(Dry September)』을 발표하며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가 그려낸 20세기 초반 미국 남부 사회는 ‘평등’이라는 미국적 이상과 달리 백인의 우월성을 강조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병폐가 팽배했다.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각국의 대표는 식민지 인권 문제를 위해 힘썼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언의 조항들을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충돌이 이어졌다. 비자치 지역과 식민지에서도 자국 정부에 대한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식민지 종주국은 서구의 민주주의의 철차는 그런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적합하지 않으며, 자신은 그런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맞서며 식민지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2.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

○ 정답 : ○

○ 해설 : 너무도 당연한 ‘차별 금지’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 한 쪽은 이런 조항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른 한쪽은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 대립했다.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쪽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권 국가였다. 이에 반대한 쪽은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다. 소련은 미국의 흑인차별 남아공의 소수민인 인도인 차별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언급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이 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각 국의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하길 바랐다. 이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수인데 그런 국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준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 작성 시 ‘보편성’이라는 원칙이 훼손된 사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 작성 당시 남녀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성 문제
- 「세계인권선언」 속 ‘차별’의 한계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UN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의 비공식적인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해오면서 선언을 모태로 하여 수많은 국제인권법 문헌이 채택됐다. 그리고 각국의 법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활용하거나 인용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에서 선언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도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은 문서 중 하나이다.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인권규범의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문헌으로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규범적 영향력을 가지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전 세계인에게 존중받는 문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세계인권선언」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적 한계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나온 문헌이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의 눈으로 보면 미흡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적지 않다. 그리고 자연법 전통의 토대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인권 그 자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작성했지만, 자연법 전통의 ‘서구판’ 문헌이라는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사상이라는 것이 그것의 기원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적실성과 호소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으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서구 전통에 뿌리를 둔 문헌이 보편성을 설교하는 모습은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세계’인권선언이라 번역하고 있지만 이 선언의 원래 이름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즉 ‘보편(universal)’인권선언이다. 선언을 작성할 때 타이틀에는 당당하게 ‘보편’을 넣었지만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선언을 만들기 전에도 만드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논쟁이기도 한다.

보편성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점도 있다. 식민지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권 문제이다. 「세계인권선언」에 탄생 배경에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이 전쟁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도 저질러졌다. 독일의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유대인은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 갇혀 있다가 대규모로 학살당했다. 이렇게 대규모 전쟁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뒤에 국제사회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

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뤄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그래서인지 선언은 나치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두 번째 단락에는 나치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라고 비판한 다소 감정적인 문구도 들어 있다. 이 부분은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작성자 중 하나인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의 카생 초안의 전문 제1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29명의 친인척을 잃은 카생이기 때문에 전쟁에 의한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처음부터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선언을 작성하면서 인류가 저지른 잔인한 인권침해에는 강하게 비난의 목소릴 내며 기초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간 위원들과 국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해버렸다.

선언 초안을 만들고 다듬고 채택할 당시 UN의 회원국 수는 58개국이었으며, UN인권위에 속한 국가는 18개국이었다. 선언기초위원회는 처음에 3개국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8개국이었다. 1945년에 51개의 회원국으로 출발한 U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흐른 1947년 말부터, UN 내 식민지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8년 58개국의 회원국으로 증가했고, 그중에서 아메리카의 21개국이 전체의 36%를, 유럽 16개 국가가 27%, 14개의 아시아가 국가가 24%를 차지해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4개국뿐인 아프리카는 겨우 6%를 차지했을 뿐이고, 3개국의 남태평양 제도는 5%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지역의 대다수의 영토는 여전히 식민 통치하에 놓여 있었다. 이 수치는 아메리카와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이 불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들이 선언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에도 불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이 58개국을 종교 혹은 체제 별로 분리하자면, 37개국이 기독교, 11개국이 이슬람, 6개국이 사회주의, 4개국이 불교를 배경으로 했다. 역시 기독교 쪽에 많은 수가 몰려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종교·경제·정치 체제 속에서 수용될 만한 답을 찾는 일은 막연하지는 않지만 모든 체제를 포괄할 정도로 유연하게 해내야 했다.

아래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당시 강대국의 식민지 보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의 타협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특히, 인권의 민족자결 원칙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소련은 「세계인권선언」의 문안을 통해서도 이런 현실을 확실하게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신탁통치령과 비자치령에서도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는 당연히 그런 주장에 반대했다. 제국주의 정책의 원조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들 ‘강대국’의 합의에 따라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미흡한 표현처럼 보이겠지만, 당시만 해도 식민지를 가지고 지배하던 국가들에 눈에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선포 단락에 이런 구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눈엣가시와 같았다. 전 세계의 인권 증진에는 찬성하면서도 식민지를 둔 자신들의

모순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는 ‘인권이 보편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주장은 역사적 실재와 모순된다.’고 비판한다. ‘1945년 UN이 창설한 회의는 서구에 의해 지배됐고 「세계인권선언」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식민통치하에 있을 때 채택’되었으니 선언의 내용은 ‘제한된 적용성’만을 가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식민지에 살고 있던 시기이자 식민체제에 지각변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때에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여가 지난 시점까지 식민지의 종주국은 식민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연히 독립 시킨다던지 하는 행동도 없었다.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진영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에 반하는 식민지 민족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언의 조항들을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충돌이 이어졌다. 비자치 지역과 식민지에서도 자국 정부에 대한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식민지 종주국은 서구의 민주주의 절차는 그런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더불어 자신은 그런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맞서며 식민지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선언 제2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Everyone)’은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모든 사람’에 식민지 사람들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충돌이 일어났다. 그 끝에 채택된 표현은 ‘식민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2조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으로 서술했다.

‘식민지’라는 분명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긴 문장으로 에둘러 표현한 데는 식민지 종주국의 반발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사실상 ‘식민지’는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면 식민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차별금지’가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이란 건 많은 조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영토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수교 중단으로 식민지 관련 조항을 둘러싼 공산권의 연대는 깨졌으며, 서로의 안을 지적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선언 내에 ‘식민지’라는 표현을 축소하려는 식민지 종주국의 꿈수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의 인권 침해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후 선언을 만들 당시 국제 분위기는 인권을 소리 높여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특히 나치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물론 나치에 의한 학살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학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범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나라의 사람은 다들 두 손에 상대국 사람들의 피를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의 패전국 외에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인권침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치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은 강도는 매우 거셌다.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나치즘의 재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전후 전 세계의 재건을 위한 이념으로 등장했다.

전 세계 사람은 인권을 인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 중 하나로 새로 만드는 UN이 국제사회에 강한 힘을 행사하길 바랐다. 인권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과 결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렇듯 국제권리장전을 「UN헌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헌장과 같이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장치가 있었다면 나치즘이 이렇게 커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인권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인권을 소홀하게 여기는 정부들에 대해 국가와 국가를 초월한 개념인 ‘인권’이란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국제적으로 ‘장치’를 만드는 것에 뜨거운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작성하는 초반 과정은 ‘협약’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선언’으로 만드느냐 하는 논쟁으로 더딘 진전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표자는 국제권리장전이 ‘협약’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UN 회원국 중 약소국은 단순한 권고나 결의안이 아닌 국력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을 똑같이 구속하는 협약을 원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이행장치 없는 선언이나 원칙들을 담은 성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렇게 두 나라 모두 협약으로 만드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반대 이유는 서로 달랐다. 미국의 경우, 권리를 갖는 것과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선언을 먼저 선포하고 협약은 나중에 하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고작 몇 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초위원회가 국제권리장전의 이행문제까지 고려할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결국 논쟁의 끝은 협약이 아닌 선언의 작성으로 정리됐다. 선언을 만들기 시작하자 원래 계획대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닌 추상적인 원칙만을 나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었다. 애초에 국제 ‘협약’이 아닌 ‘선언’이라는 형태 자체가 이행장치로써 기능을 생략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거기에 자국에 걸끄러운 문제는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기 싸움’까지 더해졌다. 전 세계의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 채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8개의 기권표가 나왔다.

이 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불참한 온두라스와 예멘 두 나라를 제외하고, 샤요 궁 총회 석상에서 투표를 했다. 이 중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었다. 총 48개국 찬성 8개국 기권으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미국과 대립했던 소련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체코, 유고슬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8개국이었다. 8개국이 기권 표를 던진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도 분명한 이유였지만, 새롭게 선포되는 선언이 충분히 인권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2월 10일 인권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장치를 포기한 '선언'의 채택은 결과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의 장점이었다. 이후 2백여 개가 되는 국제인권선언, 국제협약, 선택의정서, 헌장의 탄생을 자극했다. 많은 나라의 헌법에 인용되었다. 이는 이행의 부담을 덜쳐놓고 만들었기에 불러온 결과였다. 하지만 국제인권협약들이 개개인 보다 국가의 편에서 국가들 중에서도 '강대국'의 입장에서 만든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인 점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았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각종 국제 문헌들을 효과적인 인권의 이행장치로 만드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의 한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아 있다.

2

「세계인권선언」속 '차별'의 한계

「세계인권선언」은 분명한 시대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경제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 교육권, 사회 보장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반영할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성이나 가족생활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보수적 사회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선언의 초안을 작성할 무렵에는 조금이라도 강력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거 짓된 희망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지 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실제로도 현대로 오면서 국제협약에서 변화된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 선언에서 지금까지도 남은 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이다.

선언을 만들 당시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UN헌장」의 남녀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여성 지위에 관한 소위원회(여성소위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구성했다. 여성인권에 관한 권고와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여성소위와 인권위원회 간에 기구의 중복이 문제였다.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소위는 다른 위원회의 속도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를 용인했다. 따라서 여성소위는 인권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직접 보고했다.

그런데, 정작 선언을 만드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의장인 엘리너 루즈벨트(Anna Eleanor Roosevelt 1884~1962)가 여성의 권리를 토의할 때 두 기구 간에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의 지위 문제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논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소련 측

은 ‘인권위원회는 인권 영역 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고 하며, 여성의 지위 문제를 삭제하는데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는 여성소위와 접촉을 유지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 결국, 두 위원회는 따로 흘러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사회이사회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해서 여성의 권리문제가 고려될 때는, 여성소위를 불러서 투표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인권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랐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문구 중 대부분은 ‘모든 사람(all men)’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성소위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all men)’이란 말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프랑스의 권리선언은 엄숙하게 자유를 규정했지만 여성의 권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여성을 포함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세상 역시 그 흐름대로 흘러왔다. 따라서 선언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차별 없이 여성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소위는 선언의 기초작업을 진행할 때까지 “‘모든 사람(all men)’의 사람(men)은 남성을 지칭해왔으므로, ‘역사적인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반영하는 시각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분명하게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문구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호주 대표 윌리엄 로이 호슨(Roy H. Williams)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남성인류(mankind)와 여성인류(womankind)가 아닌 인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하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다. 엘리너 루즈벨트의 경우는 관습적으로 인류(mankind)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 없이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고 흐지부지하게 넘어 가려고 했다.

이에, 여성소위는 남성의 뜻이 다분한 ‘all men’이 아닌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human beings’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 제시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인도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의원이자 UN 인권업무에도 최선을 다한 한산 메타 인도 대표가 “모든 사람(all men)은 평등한 것인가? ‘men’은 남성만을 뜻하지 모든 사람이란 말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human being’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나 이미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미를 갖게 된 단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등 반대 의견들이 생겨났다. 이후 ‘인류가족의 모든 구성원’이나 ‘모든 남성과 여성’ 등의 문구들을 가지고 기나긴 논의를 거친 끝에 ‘모든 사람(all human beings)’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all human beings)’이라 기록하게 된 뒤 제2조부터의 모든 조항에서는 ‘모든 사람(everyone)’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차별적 요소 하나를 제거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즉 ‘All human beings’는 처음에는 ‘men’으

로 기록되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의견과 남녀차별에 맞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은 선언 제정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세계인권선언」에는 남녀 차별적 단어가 남아 있다. 먼저 선언 제1조를 함께 살펴보자.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제1조의 시작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ll human beings’라는 중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형제애의 정신으로(in a spirit of brotherhood)’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형제애(brotherhood) 부분이 선언 채택 당시 해결하지 못한 여성을 차별하는 용어로 남아 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형제애(brotherhood)에 대해서도 역시 논쟁이 있었다. 이 단어와 함께 ‘자매애(sisterhood)’란 단어를 나란히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형제애(brotherhood)만 사용하게 되었다.

이어 선언 제23조의 제3항과 제25조의 제1항이다.

제23조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사람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3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세계인권선언」의 원문을 살펴보면 제23조와 제25조에 ‘자신과 가족(himself and his family)’이란 표현이 나온다. ‘himself and his family’라는 표현은 노동하는 사람을 남성으로 보고, 남성 가장을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전제하는 표현이다. 이런 조항에 대해 여성주의 복지학자는 복지정책의 기본이 이런 가부장적 가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긴 했지만, 오늘날 변화된 가족 구성과 역할 부담과는 먼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한다.

당시 주요 국가들의 헌법도 물론 「세계인권선언」 작성을 위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초고에서도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남성노동자와 그가 부양해야 할 ‘그의(his)’ 가족으로 표현되었다. 1948년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각국 대표는 이들이 사용한 표현 그대로를 반영했고 여성소위 역시 방관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는 결혼과는 무관하게 평등한 시민권을 누릴 권리 부분이 누락되었다. 선언을 작성할 당시도 ‘민법상 결혼은 선택의 자유, 아내의 존엄성, 일부일처, 결

혼 해소에 대한 동등한 권리, 동등한 양육권,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권리, 계약을 맺을 권리, 재산을 가질 권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소위의 제안이 있었다. 유급출산휴가와 교육에 대한 여성 평등 등의 사회적 권고도 있었다. 하지만, 선언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제16조는 이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는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그런데, 결혼과 관련하여 주된 논점은 남녀차별과 여성의 권리보다 '타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었다.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타종교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종교적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종교의 문제는 매우 예민하여 해소될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생겨났다. 그럼에도,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라는 문장을 통하여 혼인의 해소 시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 이유는 종교와 국가는 분리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이다.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들에서 관련 입법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불리함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의 성립이나 이혼 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혼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 차별금지의 원칙에서의 접근이 선언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었다.

또한 선언의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는 조항을 통해 종교(religion)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타 종교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역시 이혼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묵인됐다. 타종교 사람과의 결혼 금지, 이혼 금지를 종교적 신념으로 가진 이슬람교 혹은 기독교는 표면적으로라도 선언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권문제가 종교적 근거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이라는 긴 목록에 걸쳐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법 앞에 평등(All are equal before the law)’을 규정한 제7조를 통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권리를 확인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선언의 제정 당시에는 의견충동이 있었다. 한쪽은 이런 조항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른 한쪽은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대립했다.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쪽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권 국가들이었다. 이에 반대한 쪽은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국가였다. 소련은 미국의 흑인 차별, 남아공의 소수민인 인도인 차별,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언급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이 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각 국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하길 바랐다. 이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수인데 그런 국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준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 반론에 대해 소련은 차별행위를 금지하려는 조항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흑인

에게 집단 폭력(lynch)을 가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논쟁이 거듭되고 있을 무렵, 미국에서 흑인의 시민권 지위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가 설립되어 흑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의견이었다.

미국 대표이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차별문제에 대한 강조를 회피하려 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인 차별만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소련은 자의적인 차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차별이 문제라고 맞섰다. 자의적인 차별만을 비난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차별을 봐주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의 대표들도 차별에는 악의적인 구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란 표현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소련의 의견을 지지했다. 결국,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차별에 대한 언급을 줄이려는 또 다른 제안은 선언 제2조와 제7조의 ‘법 앞에 평등’을 합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명료한 차별금지 조항이 따로 있어야 하고, 따라서 두개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흑인차별에 덧붙여 영국이 식민지들에서 자행하는 엄청난 차별을 예로 들었다. 미국과 영국이 자국 정치 무대에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영국 의회의 640명 의원 중에 겨우 24명의 여성의원인이 있으며, 미국 하원에서는 더 적은 9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럽과 아메리카의 30여 개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세계인권선언」이 여성의 권리와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거나 그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조항들로 만들어 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런 소련의 비판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소련은 이동의 자유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망명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는 대응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선언 작성에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세계인권선언」에 다행히도 식민지나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조항들이 완전 삭제되지 않고 강화된 데에는 소련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선언 제29조와 관련된 한계를 살펴보겠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제29조는 권리에 대한 의무와 제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그런 무제한적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는 본질상 무제한적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3항까지 이뤄진 제29조를 통해 선언에 나오는 권리들을 남용하는 것을 제30조를 통해 악의적인 해석을 경계한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전체를 살펴볼 때 제3조에서 제27조까지의 여러 권리들을 열거하면서 일일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짚지어 열거해 두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선포된 직후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바로 사람의 권리(human rights)만 있고 사람의 의무(human duties)는 생략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제29조의 마지막 제3항을 보면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라고 하면서 권리와 자유를 UN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못 박고 있다. 이 역시 「세계인권선언」을 만든 기구의 상부기관이 UN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원칙을 선언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한편으로는 이 조항은 UN의 우위를 강조한다기보다, 세계 공동체의 평화를 이상으로 삼는 UN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포부를 밝혔다고 이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권리와 자유를 ‘UN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제한하는 것은 이 선언의 한계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인권선언」에는 미처 담지 못한 조항들 혹은 고의로 빼먹은 조항들이 많다. 또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인권선언」이 선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인 부분에서 오는 한계들이 아쉽고 누락된 권리들을 찾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유하기

한국의 방송프로그램 속 인종차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말해보자.

A large, empty, light gray rounded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opinions on the issu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n broadcast programs.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 내용과 용어들이 다른 인종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노출하는 경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조를 통해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워 방송에서 한 국가의 서커스팀이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사람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화화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타국의 왕자에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 정형화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착화하고 한국의 특정 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다. 이외에도 차별적인 용어 사용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는 요즘 이런 차별적 시선이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시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관행 개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인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들에게 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알렸다고 한다. 또한, 향후 이러한 표현이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향후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위 모니터링 결과와 같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2. 12.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0호) 제31조를 보면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은 이 규정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 풀기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와/과 (㉡) 대륙은 아직 식민지 국가인 상태가 대다수였으므로 적은 수의 대표만이 참가했다. 이는 선언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 ① ㉠ 아프리카 ㉡ 아메리카 ② ㉠ 유럽 ㉡ 아프리카
 ③ ㉠ 아시아 ㉡ 아프리카 ④ ㉠ 아시아 ㉡ 미국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초안을 만들고 다듬고 채택할 당시 UN의 회원국 수는 58개국이었고 UN인권위에 속한 국가는 18개국 선언기초위원회는 처음에 3개국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8개국이 됐다. 1945년에 51개의 회원국으로 출발한 UN은 이듬해인 1948년 58개국의 회원국으로 증가했고, 그중에서 아메리카의 21개국이 전체의 36%를, 유럽 16개 국가가 27%, 14개의 아시아가 국가가 24%를 차지해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4개국뿐인 아프리카는 겨우 6%를 차지했을 뿐이고, 3개국의 남태평양 제도는 5%에 불과했다. 이 지역의 대다수의 영토는 여전히 식민지였다. 이 수치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이 너무도 불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들이 선언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에도 불리한 조건이었다.

2. 다음 ()에 알맞은 국가는?

()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신탁통치령과 비자치령에서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는 당연히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 ① 미국 ② 일본 ③ 영국 ④ 소련

○ 정답 : ④

○ 해설 : 인권의 민족자결 원칙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소련은 「세계인권선언」의 문언을 통해서도 이런 현실을 확실하게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소련은 신탁통치령과 비자치령에서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는 당연히 그런 주장에 반대했다. 특히 제국주의 정책의 원조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들 '강대국'의 합의에 의해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3. 「세계인권선언」 과 보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인권선언」은 선포된 이래 각국의 법원에서 활용하거나 인용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에서 선언을 가르치거나 연구한다.
 ② 「세계인권선언」은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규범적 영향력을 가지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전 세계인에게 존중받는 문헌으로 한계가 지적되지 않는다
 ③ 대규모 전쟁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뒤에 국제사회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④ <대한민국 헌법> 역시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 정답 : ③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인권규범의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문헌으로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규범적 영향력을 가지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전 세계인에게 존중받는 문헌이기도하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적 한계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나온 문헌이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의 눈으로 보면 미흡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적지 않다. 그리고 자연법 전통의 토대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인권 그 자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작성했지만 자연법 전통의 '서구' 문헌이라는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정리하기

1.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성 문제

- 「세계인권선언」초안을 만들고 다듬고 채택할 당시 UN의 회원국 수는 58개국이었
고, 그중에서 아메리카의 21개국이 전체의 36%를, 유럽 16개 국가가 27%, 14개
의 아시아가 국가가 24%를 차지함. 그러나, 4개국뿐인 아프리카는 겨우 6%를 차
지했을 뿐이고 3개국의 남태평양 제도는 5%에 불과함
- 나치의 인권침해에는 강하게 비난의 목소릴 내며 기초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간 「세
계인권선언」위원들과 국가는 자신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함
- 이에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진영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언의 조항들을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충돌함
- 선언을 작성하는 초반 과정은 ‘협약’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선언’으로 만드느냐 하
는 논쟁으로 더딘 진전을 보임. 그 결과 전 세계의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 채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

2. 「세계인권선언」속 ‘차별’의 한계

- 「세계인권선언」은 시대의 산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경제적 가치관을 반
영함
- 선언 속에 노동조합의 권리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반영할 때는 너
무 ‘급진’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여성이나
가족생활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보수적 사회의 성향을 반영함
- 많은 논의 끝에 시정과정을 거쳤지만 「세계인권선언」에는 남녀 차별적 단어가 남아
있음 : 제1조의 형제애(brotherhood) 제23조와 제25조의 ‘자신과 가족(himself
and his family)’이란 표현 등.
-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제27조까지의 여러 권리들을 열거했지만 그에 상응하
는 의무를 짚지어 열거하지 않아, 사람의 권리(human rights)만 있고 사람의 의무
(human duties)는 생략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세계인권선언」에는 미처 담지 못한 조항들 혹은 고의로 빼먹은 조항들이 있다. 또

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주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음. 그렇다고 선언으로서의 가치가 빛을 잃는 것은 아님. 이와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고 누락된 권리들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임

제15강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1.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빛
2.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그림자
3.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그리고…

제15강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손꼽히는 것은 ‘한글’이다.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만들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처음으로 조선의 민중들에게 보급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조선 땅에는 중국의 한자만이 통용되었고, 양반계층이 아니면 제대로 배움의 기회조차 없는 일반 백성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다.

이를 가엾게 여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로 모든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읽고 쓸 수 있었다. 500여 년이 흐른 오늘 ‘한글’은 한국과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손꼽히며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도 1948년 채택 이래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었음은 물론, ‘보편적 인권’의 증진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과 의의는 그 어떠한 국제적 문헌과 그 성과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오늘’을 학습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해보자.



사전지식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유래가 없던 국제적 문헌으로 인류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문서의 탄생으로 인류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문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문헌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

적 자유들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초국가적인 도덕적 질서의 원리로서 사실적인 보편타당성을 확보했다.

2.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됐다.

○ 정답 : ×

○ 해설 :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권문제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해결됐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항상 반인도적인 행위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나치가 자행했던 것과 같은 학살과 여러 형태의 전쟁은 그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UN이 들어서고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여 채택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나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곤 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빛과 그림자가 모두 존재한다.

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 전 세계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빛
-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그림자
-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그리고...

1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빛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문서의 탄생으로 인류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문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문헌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이다.

17세기의 자연권 전통 이래, 서구 사회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사상적 전통을 가졌다.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 같은 나라를 포함하여 지금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자신들의 관점에서도 지지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의 기본적인 규범적 원리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와 여전히 이념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초국가적인 도덕적 질서의 원리로서 사실적인 보편타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UN의 모든 선언들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촉진하는 영감의 근원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 및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국제규약들에게 법적 효력을 제공하는 기초이다. 이러한 많은 성과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세계에 알린 점이다.

인권은 인류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면서 만든 경험적 개념이다. 억눌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한숨과 염원이 조금씩 모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인권의 영역이 날로 중요해졌다. 오늘날 인권은 대단히 인기 있는 정치적 개념이다. 인권이 좌우이념과 사상을 떠나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중첩되는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 인권의 뿌리를 200여 년 전의 “자유, 평등, 우애”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최초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던 근대의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 1789~1794)에서 찾고 있다. 근대의 프랑스 혁명이 시민들의 법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치중했다면 「세계인권선언」 이후 등장한 현대의 인권은 보편적·경제적 권리의 보장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핵심으로, 사람의 존엄과 평등적 인권의 보장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인권현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프랑스 혁명과 제1·2차 세계

대전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외쳐왔던 인권혁명의 메아리를 간직했으며, 현대적 인권의 서문을 연 기념비적인 문헌이다.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염원하는 언약인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당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목표와 희망을 담은 도덕적인 문서일 뿐이었다. UN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두고 “모든 사회와 개인이 ‘점진적인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통의 성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948년 채택 이후 ‘도덕적 문서’에 불과했던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사회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규범력을 가지는 기준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인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UN에 가입한 많은 신생독립국, 특히 당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자국의 헌법을 제정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지역 기구들 역시 「세계인권선언」을 여러 협약이나 결의문에 반영했다. 또, 「세계인권선언」은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적 전문기구들이 의결하고 공포한 각종 인권규범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개인에 대한 인권존중의 관행이 늘어났다. 국제사회에서 정치 현장이나 법정 등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선언은 구속력 없는 결의문의 지위를 넘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강력한 법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만들었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 것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인권규범의 정교화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이후 UN을 주축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제정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이 결실로 각종 협약들의 제정과 그 이행에 관련한 절차들을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국제기구, 각 국가의 정부, 시민사회 공통의 대화기준이다. 인권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내외 정치현장에서 인권 원칙은 그 영향력을 십분 발휘하며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구축에 기여했다. 인권에 힘이 생겼다.

이러한 영향력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구축에 기여한 좋은 예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설립이다. 국가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는 UN의 조사결과 아태지역에 19개, 아프리카지역에 27개, 미주지역 25개, 유럽지역 39개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국가인권기구는

현재 69개이다. 국가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인권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 및 권고
- ▷ 법안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
- ▷ 국내법 및 관행이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
-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
- ▷ 국가 대륙(region) 및 UN협약감시 기구 등 국제 인권기구와의 협력
- ▷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나라는 한때 독재정권과 민중탄압으로 인해 인권의 불모지로 불렸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해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졌다. 또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표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독립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법」을 모체로 태어났다는 점은 다시 <국제인권법>의 모체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았음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녹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확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만 머물지 않았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포함한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區)단위의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와 서울시 성북구의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역시 국제관습법으로 통용되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정신을 명시한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여러 시·도에서 제정·공표하여 학생들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들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채택된 이래로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아직도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인 이유이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은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의미를 담은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두 글자로 발명되었다. 인권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담은 염원은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항상 반인도적인 행위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독일의 나치가 자행했던 것과 같은 학살과 여러 형태의 전쟁은, UN이 들어서고, 「세계인권선언」이 탄생·채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고 나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대표적인 예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Killing Fields) 학살사건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27년이 지난 1975년, 캄보디아의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라는 무장단체는 당시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는 이유로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과거 친미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과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 모두를 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 어린이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만 명을 살해했다.

킬링필드 학살로부터 다시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분쟁지역인 가자지구에 철옹성 같은 분리장벽을 사이에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교전을 벌이고 있다. 엄청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신형 무기로 무장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향해 무차별적인 침공을 퍼부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2014년 7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앞서 전기가 끊기면서 가자지구 일대가 암흑천지가 됐으며 밤하늘엔 조명탄이 날아올랐다. 이어 탱크와 70t이 넘는 초대형 방탄 불도저(D-9)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외신은 앞다투어 전했다.

전쟁만으로도 끔찍한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교전 중에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어린 생명의 희생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군인이 서로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의 힘이 약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보복성 납치 및 살해하는 사건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이스라엘 청소년의 납치·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군에게 동예루살렘 쪽에서 납치되어 사살된 팔레스타인의 16세 청소년 무함마드 아부 크 다이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의 호흡기에서 화재 분진이 검출되어 이 소년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팔레스타인은 물론 전 세계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2014년 10월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순찰차를 향해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정신장애가 있는 11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을 체포했다. 소년의 눈과 손을 묶고 마치 짐짝처럼 차량 안으로 내던지는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참혹한 전쟁과 나치의 잔혹한 학살을 경험한 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존엄과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세계인권선언」이 수십 년 전 제정되고 채택되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가 만천하에 공포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이러한 염원이 무색해질 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공공연히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이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여전히 생겨나는데 「세계인권선언」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이 모여 수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쳐 나온 「세계인권선언」이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이 「세계인권선언」에 드리워진 그림자이고 한계점이다.

3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그리고...

이처럼 온 인류가 긴 시간동안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더욱이 인권에 대한 새로운 현안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내용만으로는 「세계인권선언」을 완전무결한 성서(聖書)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인권규범을 제시했다. 인권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잔혹한 전쟁과 학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형제애와 인류애를 외칠 수 있게 한 점은 「세계인권선언」만이 가지는 대체불가한 상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정신이 갖는 권위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인권 수호를 위한 외침과 여러 활동이 최근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스웨덴 외교관 출신으로 UN인권위원회에서 UN인권프로그램의 대표로 활동했던 토마스 하머버그(Thomas Hammarberg)는 활동 당시 캄보디아 국경해안의 외딴 마을인 코공에 가서, 몇 주 동안 불법구금으로 억류당하면서 캄보디아 군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던 두 명의 캄보디아 여성을, UN의 이름으로 구출했다. UN 설립 초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개입은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공격으로 간주됐다. 최근 UN과 「세계인권선언」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인 비판여론에 힘입어, 인권문제에 대한 UN의 개입 행위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일었다. 토마스 하머버그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는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합의와 UN의 권위로 여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 구출 이후 토마스 하머버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압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나서서 말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인권규범의 기본이다.”

토마스 하머버그의 말은 「세계인권선언」이 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그의 말처럼 억압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위해 나서서 말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만큼 남도 소중하며, 또 우리 모두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목소리를 누군가는 내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모두의 권리가 소중하다는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 모든 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우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아동의 학대로부터 보호와 같이 모두가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고, 자유권을 가지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하는 원칙과 신념은 우리들 각자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었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래 국제사회가 이뤄온 인권의 증진은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과 희망이 세계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



공유하기

국제인권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의견을 써 보세요.

국제법의 최대 약점은 집행력이 거의 없거나 약하다는 점이다. 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강제로 이행하게 할 방법이 없다. 위반 행위를 직접 응징할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국제인권법이 의미와 가치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런 강제력의 확보는 미래에도 계속되는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인권 규약이나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비난과 추궁으로 간접 강제를 할 수 있으며, 인류 공통의 가치로서 인권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다.

현재 국제인권문제는 UN이 중심이 되어 다루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인권 관련 문제를 일반 의제로 다루기도 하고 인권 관련 선언과 협약을 만들기도 한다. 인권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곳은 경제사회이사회(ECOSOC)다. UN헌장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 안에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그 보조 기구로서 소위원회(Sub-Commission), 그리고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혹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가 구성된다. UN의 사무국도 인권 기능을 보조한다.

어떤 형태로든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주제나 사건은 매년 7-8월에 걸쳐 4주간 제네바에서 여는 UN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먼저 다룬 후,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마지막 연 총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보통의 절차이다. 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다. 공개 토론 형식과 비공개 조사절차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제별로 실무자 그룹이나 특별 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다. UN에는 6개의 인권 협약에 근거해 각각 인권 기구를 구성한다. 그중 자유권규약위원회(ICCCR Committee)는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국가 보고 제도(National Reporting)다. 각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원들이 심사한다.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정보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민간단체(NGO)의 반박 보고서 등은 좋은 자료가 된다.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1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엔 위원회가 정하는 대로 5년마다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다.

둘째는 일반 의견(General Comment)이란 것으로 자유권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말한다. 이 의견은 자유권 규약 해석에 하나의 기준으로 축적된다.

셋째는 개인 통보 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다. 인권 침해로 당한 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통보서는 제네바에 있는 UN 사무국 소속의 인권 센터(UN Center for Human Rights)로 보내면 된다.



문제 풀기

1. 현대 인권의 뿌리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은?

- ① 존엄, 인권, 우애
- ② 자유, 평등, 우애
- ③ 평등, 권리, 우애
- ④ 자유, 평등, 권한

○ 정답 : ②

○ 해설 : 프랑스 혁명(1789~1794)은 자유, 평등, 우애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최초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다.

2. 다음 중 「세계인권선언」과 그 정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 ①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 ② 독재정권의 수립
- ③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④ UN 신생가입국들의 헌법 제정

○ 정답 : ②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정신은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되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각종 국제인권규약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으며, UN에 가입한 많은 신생독립국들의 헌법 제정에 참고 및 인용 자료가 됐다.

3. 다음 중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수행하는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권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 및 권고
- ② 법안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
- ③ 국제법 개정
- ④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정답 : ③

○ 해설 : 국가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는 전세계적으로 약 1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에 따라 그 기능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권고, 법안 및 정책의 인권 기준 부합 보장, 국내법 및 관행의 국제인권 기준과 조화 보장, 인권교육, 인권의식 증진, 국제인권기구와 협력 등을 수행한다.



정리하기

1.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빛

-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문서의 탄생으로 인류사회에 많은 변화가 올
-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초국가적인 도덕적 질서의 원리로서 사실적인 보편타당성을 확보함
- 「세계인권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 것과 국제인권규범을 정교화한 것임
-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 시민사회 공통의 대화기준이 되었으며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건설에 기여함
-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인권규범의 기여로 국가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지방자치정부의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과 조례에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녹아있음.
- 「세계인권선언」은 채택 이래로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

2. 「세계인권선언」의 오늘과 그림자

-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후 인권에 대한 많은 의식 변화가 있었으나 「세계인권선언」이 항상 반인도적인 행위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님
-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27년이 지난 1975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킬링필드 사건은 크메르루즈라는 무장단체가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는 구실을 빌미로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화폐와 사유재산 및 종교를 폐지했으며, 과거 친미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군인 등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개조한다는 명분아래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200여만 명을 학살한 사건임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경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살해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음
-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인권선언」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음

3. 「세계인권선언」과 오늘 그리고...

-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인권규범이 제시되고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었으며 형제애와 인류애를 외칠 수 있게 된 점은 「세계인권선언」 만이가지는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임
- 또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세계인권선언」과 그 정신이 갖는 권위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인권수호를 위한 외침과 여러 활동이 최근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
- 토마스 하머버그는 “억압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나서서 말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인권규범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은 「세계인권선언」이 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하는 원칙과 신념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음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세계인권선언〉

| 인 쇄 | 2018년 11월

| 발 행 | 2018년 11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51 | F A X | (02) 2125-09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57-9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TEL.02-2125-9851 FAX.02-2125-0917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57-9 93360